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뉴질랜드



일자리
찾아로
세계

해외업전복
취직
완정
뉴랜드
질드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 완 외 전 취 정 업 복

뉴질랜드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뉴질랜드 취업 한눈에 보기



01 구직초기단계

뉴질랜드 국가정보 탐색

1. 국가 일반 및 경제·노동현황 p.12
2. 정착 및 생활정보 p.154
3. 고용관련제도 p.34

뉴질랜드 취업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

1. 적성 및 역량 등과 관련한 자기분석 p.92
2. 뉴질랜드 취업의 성공·실패사례를 참고한 나의 강점 및 약점 p.120

02 본격적인 구직준비단계

뉴질랜드 취업정보 탐색

1.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Kotra 와 같은 공공기관 활용 p.100
2. 뉴질랜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활용 p.112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공공기관,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취업알선업체를 이용하여 구직준비 p.104

취업유망분야 및 취업절차 파악

1. 뉴질랜드의 취업유망분야 및 필요 역량 p.72
2. 뉴질랜드 취업 절차 p.85

03 구직 및 면접 진행단계

채용공고 확인

월드잡 홈페이지, 개별 기업 홈페이지, 현지 구인구직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등 활용
p.100

입사 지원

1. CV 및 Cover Letter 작성 및 채용 공고 사이트에 등록 p.87
2. 취업절차 핵심포인트 확인 p.86

면접 진행

회사가 요구하는 job description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보유 스킬을 알려야 하며, 회사에 대한 조사와 예상 질문을 철저히 준비
p.82

취업제의 및 비자 발급

근로계약서와 job offer letter,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이민 성에 워크비자 신청
p.142

04 성공적인 뉴질랜드 정착 및 생활

뉴질랜드 정착 및 생활정보

1. 집 구하기 p.154
2. 여행 및 통장개설 p.159
3. 각종 유필리티 개설 p.160
4. 비즈니스 및 생활 에티켓 p.164



뉴질랜드 취업 SUMMARY

왜 뉴질랜드인가?

- ①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차별이 적고 부패가 적은 나라로서 살기 좋은 나라 중 수위에 꼽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서 해외 이민자 유입에도 호의적인 편이므로,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뉴질랜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뉴질랜드의 근로문화는 정시출근과 정시퇴근이 보편화되어 있어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합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소위 스펙보다는 능력을 우선 시하고 조직문화가 유연하여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많은 점이 장점입니다.

뉴질랜드 취업 유망분야

- ① 뉴질랜드는 자국민 우선 채용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워크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인 한국인의 취업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많은 분야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인력 부족 직군이나 현지인과의 경쟁이 적은 분야를 공략한다면 취업 기회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② 한국인의 취업 가능성성이 높은 분야는 호스피탈리티, IT, 경영 관련 사무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관광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관련 일자리가 많은 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호스피탈리티 분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망할 것입니다. IT 분야는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분야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우수한 해외 인력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경영 관련 사무직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 기회 또한 많습니다. 다만 현지인과 경쟁이 예상되므로 영어능력과 경력 등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뉴질랜드 채용 트렌드 및 핵심역량

- ① 뉴질랜드에 취업 시 구직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바로 영어능력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열정과 스킬 측면에서 현지인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취업제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영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영어능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분야라 하더라도 영어능력이 좋을수록 승진이나 아직 시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② 뉴질랜드의 경우 철저한 능력제이기 때문에 자격증보다는 업무 경력과 어떠한 스킬을 갖고 있는지가 취업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 시 구인공고에 기재된 job description에 부합하여 자신이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턴쉽 등을 통해 희망직종과 관련된 경력관리를 잘 준비하면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성이 높아집니다.
- ③ 뉴질랜드는 직원 고용 시 한국의 공채와 같은 형태보다는 상시채용의 방식으로 1~2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거나, 취업 알선 전문회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지인을 통한 추천이나 대학 추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천인(referee)을 잘 확보함과 동시에 LinkedIn을 비롯한 자신의 SNS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채용관리자의 60% 가량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인터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지원자의 SNS도 확인하기 때문에 온라인의 자기자신을 서류상의 자기자신과 잘 매칭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수요소입니다.



❶ 자기분석 체크리스트

항목

YES NO

1. 해외취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는가?

2. 해외취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충분한가?

3. 뉴질랜드의 고용시장 및 기술부족직군을 이해하고 있는가?

4. 채용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역량을 확인하였는가?

5. 뉴질랜드에서 취업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었는가?

6.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7. 자격증보다는 보유 스킬과 경험을 중시하는 현지 채용문화를 알고 있는가?

8. 현지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언어, 생활 등의 어려움에 혼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9. 뉴질랜드 취업을 위한 다양한 취업경로/채널(월드잡플러스, 현지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알고 있는가?

10. 뉴질랜드 비자의 종류와 발급절차, 준비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있는가?

11. 채용 및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건강상태 등 결격사유는 없는가?

12.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13. 소셜네트워크 상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CONTENTS

PART 01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01 국가정보	012
02 노동시장 동향	026
03 고용관련 제도	034
04 임금제도	044
05 사회보장제도	050
06 개인소득세	052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060
02 직종별 채용 트랜드 및 취업역량	072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082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092
05 주요 로컬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094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100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104
03 스스로 취업하기	112
04 해외취업 업무지원 기관 현황	116

PART 04



해외취업 사례

01 성공사례 남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도전하라	120
02 성공사례 호텔리어로 살아남기 in New Zealand	126
03 성공사례 뉴질랜드 학업 과정을 이용하라	129
04 성공사례 지상천국 뉴질랜드에서 날아라	131

**PART
05**

취업비자

01 개요 및 최근 주요 개정 내용	136
02 주요 워크비자 신청 및 취득방법	142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01 정착	154
02 생활	158
03 생활 에티켓	164



**PART
07**

해외 취업 Q&A

170



PART

01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01
국가정보

-
02
노동시장 동향

-
03
고용관련 제도

-
04
임금제도

-
05
사회보장제도

-
06
개인소득세



01 국가정보

01. 일반사항

국가 일반사항

국명	뉴질랜드(New Zealand) 마오리어로는 아오테아로아(Aotearoa, 길고 흰 구름의 땅)
위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시차	GMT+12 (한국보다 3시간 빠름) 및 서머타임(9월~4월) 시행
면적	27만 534㎢ (남한의 2.7배)(북섬 11만 6,000㎢, 남섬 15만 1,000㎢)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수도	웰링턴(Wellington),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구	492.6만 명 (2018년 말 기준)
주요도시	오클랜드(170만 명), 웰링턴(52만 명,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9만 명), 해밀턴(16.9만 명), 타우朗가(13.5만 명)
민족	유럽인(70%), 마오리(14%), 아시안(11%), 남태평양도서국(7%), 기타(3%)
언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종교	기독교(약 51%) 및 여러 종교 산재
건국일(독립일)	1840년 2월 6일(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 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3년마다 총선 실시)
국가원수	상징적 원수 : 영국 Queen Elizabeth II 행정 수반 : Jacinda Ardern 총리 (노동당 당수, 2017년 10월 취임)

자료: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 통계청(www.stats.govt.nz)





02. 한국-뉴질랜드 관계

한국-뉴질랜드 관계

체결협정	대사급 수교(1962년)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67년 7월) 어업협정(1978년 3월) 이중과세방지협정(1981년 11월) 항공협정(1993년 8월) 사증면제협정(1994년 8월) 과학기술의정서(1997년 9월) 취업관광사증협정(1999년 5월) 형사사법공조협정(2000년 3월) 범죄인인도조약(2001년 5월) 경찰협력약정(2006년 6월) 군수협력협정(2007년 11월) 관세상호인정협정(2011년 6월) 자유무역협정(2015년 3월) 워킹홀리데이 MOU(2015년 3월)
	對한국 수출 - 15억 5,200만 달러(2015년) - 14억 8,900만 달러(2016년) - 14억 9,200만 달러(2017년)
	對한국 수입 - 19억 3,300만 달러(2015년) - 21억 9,300만 달러(2016년) - 19억 9,600만 달러(2017년)
	對한국 수출 원목, 낙농, 육류, 알루미늄, 채소류
	對한국 수입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중장비, 철강, 기계류, 전기전자, 플라스틱
	한국의 뉴질랜드 투자 요식업 및 도소매 위주 - 신고기준 누적 605건, 5억 3,300만 달러(2018년 1분기 기준)
	뉴질랜드의 한국 투자 서비스 및 제조업 위주 - 신고기준 누적 407건, 8,800만 달러(2018년 1분기 기준)
교민	2013년 인구센서스 결과, 한국 출생 이민자 수는 2만 5,000명이며 뉴질랜드 출생자 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 명으로 집계됨.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대비 약 0.7%에 해당하며 아시아계 이민자 중 중국(17만 명), 인도(14만 명), 필리핀(4만 명)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임

자료: KOTRA 국가정보,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03.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각 연도말 기준)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질GDP	백만 달러	211,662	219,530	227,389	235,702	243,136
1인당 실질GDP	달러	47,649	48,731	49,548	50,255	50,986
실질GDP성장률	%	2.3	3.7	3.6	3.7	3.2
소비자물가상승률	%	0.8	0.1	1.3	1.6	1.9
실업률	%	5.5	4.9	5.2	4.5	4.3
US\$1 당 환율	배	0.78	0.68	0.69	0.69	0.62
대외부채	백만 달러	141,393	137466	145,493	150,573	151,145
수출실적	백만 달러	41,962	34,428	33,605	37,352	36,422
수입실적	백만 달러	41,000	35,786	35,534	38,743	38,341
경상수지	백만 달러	(2,927)	(2,526)	(2,037)	(2,847)	(3,492)
투자유치액(FDI)	백만 달러	106,739	108,461	111,184	116,844	121,472
해외투자액(ODI)	백만 달러	33,528	36,061	34,173	33,898	35,538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www.stats.govt.nz)

04. 경제동향

❶ 개요

뉴질랜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인구는 약 492만 명이고 GDP는 약 NZD2,430억 규모의 도서국가이다.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낙농품, 육류, 목재, 과실 등 1차산업 제품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낙농품을 포함한 식품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천연자원(natural capital per capita)이 120개국 중 8위를 차지하는 등 석탄, 천연가스, 원유, 금, 은, 수정, 사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그 외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어서 차량, 기계, 전자제품 등 소비재 및 자본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제조업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배경 중 하나는 작은 내수시장 규모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1인당 GDP는 2018년 말 기준 약 NZD5만1,400로 높은 반면 자국의 제조업 기반은 약하기 때문에 고급 소비재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크다. 뉴질랜드는 작은

내수시장 및 주요 시장과 동떨어진 지리적 고립성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간 통상협정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경제, 정치, 안보,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자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의 강점으로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 은행의 비즈니스 수월성평가에서 1위(2017년),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 3위(2017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1위(2016년) 등 각종 유관기관들로부터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산업별로는 2018년 말 현재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9.7%), 건설업(6.0%), 1차산업(6.6%) 등의 순이다.

☰ 뉴질랜드의 산업별 GDP 비중

산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차산업	7.2%	6.8%	6.8%	6.6%
농업, 임업, 어업	5.7%	5.5%	5.4%	5.4%
광업	1.5%	1.2%	1.3%	1.2%
2차산업	18.8%	18.9%	18.7%	18.4%
제조업	10.0%	9.9%	9.8%	9.7%
전기, 가스, 수도, 하수처리업	3.0%	2.9%	2.8%	2.7%
건설업	5.8%	6.2%	6.1%	6.0%
서비스업	66.3%	66.4%	66.6%	67.0%
도매업	5.1%	5.0%	5.0%	5.1%
소매 및 숙박업	6.8%	7.0%	7.2%	7.2%
운수 및 창고업	4.5%	4.5%	4.5%	4.6%
정보통신업	3.7%	3.5%	3.4%	3.5%
금융 및 보험업	5.8%	5.8%	6.0%	6.0%
부동산업	13.2%	13.3%	13.0%	13.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9%	10.2%	10.3%	10.5%
공공 및 사회보장 행정	4.3%	4.2%	4.2%	4.3%
교육서비스업	4.1%	4.0%	3.9%	3.9%
보건 및 사회복지	5.8%	5.9%	6.0%	6.0%
예술, 여가 및 관련서비스업	3.1%	3.1%	3.1%	3.1%

자료: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❶ 경제성장률

뉴질랜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인 유제품의 가격 상승에 기반한 교역조건 향상과 2011년 캔터베리 지진 이후 복구를 위한 건설경기 호황 등에 따라 3% 중후반 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건설경기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2차산업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았고,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이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방문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업이 특수를 누리고 있고 건설업 또한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교역조건 악화되고 있고 이민법 강화로 이민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개인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경제성장 또한 정체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규모 내수시장이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뉴질랜드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어 2019년과 2020년 경제성장률은 2%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2014~2019년 뉴질랜드 실질GDP 성장을 추이(단위: %, 전년동기대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f
전체 산업	2.6	3.7	3.6	3.7	3.2	2.7
1차산업	-1.4	5.4	1.0	-1.3	2.1	1.5
2차산업	1.8	4.2	4.0	3.5	2.0	1.8
서비스업	3.2	3.3	3.5	3.9	3.6	3.1

주) 2019년은 추정치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경기 활성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은 숙련노동자의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건설, 관리, ICT, 엔지니어 등 직종에서 기술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빠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에 대응하지 못해 주택과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고,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부족 문제와 금융안정성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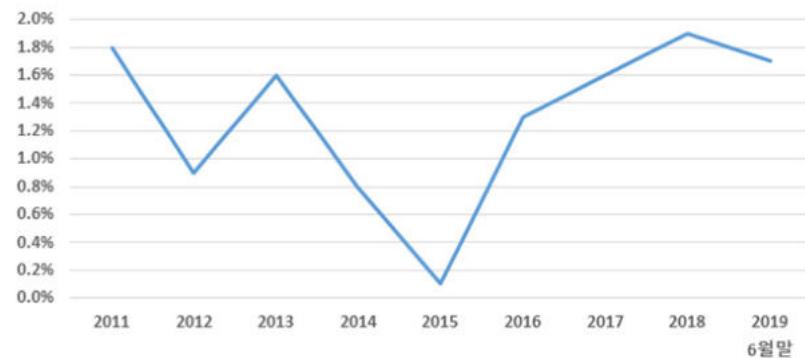
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2000년~2018년 동안 OECD 국가의 주택가격은 평균 1.3배 상승한데 비해 뉴질랜드의 경우 2.7배가 넘게 상승하였으며, 이와 함께 가계부채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조정 시 뉴질랜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OECD는 2019년 6월에 발표된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New Zealand 2019)를 통해 뉴질랜드의 민간소비 및 투자는 다소 저조한 반면 교역조건 및 관광수요는 양호하여 향후에도 잠재성장을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❶ 물가상승률

뉴질랜드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1% 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CPI가 2015년 4분기에 사상 최저치인 0.1%(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한 뒤 점차 상승해 2016년 이후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범위인 1% ~ 3% 수준 내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 및 주거 관련 비용과 담배 및 주류 비용의 상승이 뉴질랜드 CPI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2018년 4분기에는 CPI가 1.9%까지 상승하였으나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예상치인 2.5%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및 낮은 실업률로 가계 소비가 증가세에 있어 2019년에는 예측치인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10년 간 뉴질랜드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❶ 환율

뉴질랜드 달러(NZD)는 2013년 하반기 이후 미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일부 조정 구간이 있었으나 미국달러화 대비 0.7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19년에 들어서면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데다 미국/중국 간 무역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뉴질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질랜드 달러화가 큰 폭으로 하락해 2019년 9월 말 현재 미국달러화 대비 환율이 0.634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원화 대비 환율도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인 750원 대를 기록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뉴질랜드 달러화(NZD) 환율 추이

	미국달러화 대비 환율(NZD / USD)	원화 대비 환율(NZD / KRW)
2010년	0.7504	860.53
2011년	0.7697	883.23
2012년	0.8318	895.54
2013년	0.8228	869.11
2014년	0.7764	857.57
2015년	0.6737	790.15
2016년	0.7048	833.05
2017년	0.6953	755.17
2018년	0.6829	766.77
2019년	0.6342	758.81

주) 2019년은 9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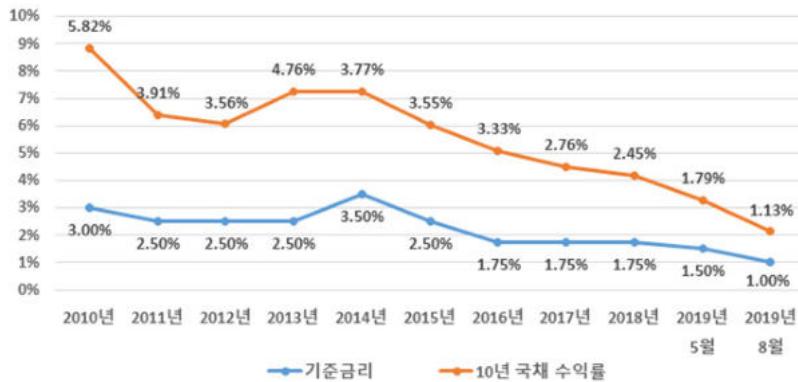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❷ 금리 및 금융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질랜드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어 2011년 ~ 2015년 동안 기준금리가 2.5%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 들어서면서 뉴질랜드 통화의 강세가 이어지자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한 후 최근까지 동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뉴질랜드 경제성장이 2018년 이후로 정체되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제성장도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도 2019년 들어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19년 5월에 기준금

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0.25%p 내렸으며, 2019년 8월에는 예상을 웃도는 수준인 0.50%p 더 인하하여 1.0%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저금리와 정부지출 확대가 경제성장과 고용을 부양하고 물가상승률을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뉴질랜드 기준금리 및 국채수익률(10년물) 추이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05. 산업동향

❶ 낙농업 및 식품제조업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뉴질랜드에서 낙농업품은 수출 품목 중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낙농업품의 수출액은 143억 달러로 2위인 육류 수출액의 두 배에 달한다. 또한 조제식료품의 수출 규모도 5위에 해당하는 18.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낙농업품과 조제식료품 두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넘어선다.

▣ 최근 뉴질랜드 10대 주요 수출 품목(단위: 백만 NZD)

품목	2016	2017	2018	2019 상반기
전체수출액	48,487	53,625	57,494	31,003
1. Milk powder, butter, and cheese	11,192	13,969	14,325	7,931
2. Meat and edible offal	5,913	6,616	7,430	4,601
3. Logs,wood, and woodarticles	4,124	4,642	5,238	2,715
4. Fruit	2,731	2,663	3,231	2,073
5. Preparations of milk, cereals, flour, and starch	1,608	1,503	1,864	1,153
6. Mechanical machinery and equipment	1,621	1,642	1,839	883
7. Wine	1,617	1,688	1,735	878
8. Fish, crustaceans, and molluscs	1,215	1,609	1,639	950
9.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1,201	1,259	1,264	699
10. Aluminium and aluminium articles	969	1,118	1,250	61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 낙농업 : 뉴질랜드는 국토의 54%가 목초지로 낙농 선진국이며, 전체 수출에서 낙농 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를 차지할 정도이다. 주요 낙농 제품으로는 분유, 치즈, 버터, 식품 원료 등이 있는데, 뉴질랜드 낙농산업은 대규모 가공 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 비중은 전 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영향력도 막강하다.

- 식품제조업 : 뉴질랜드는 청정국가 이미지와 높은 식품안전규격으로 뉴질랜드산 식품의 해외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다. 특히, 우유나 육류, 과일, 야채, 수산물 등이 풍부해 원재료 수급이 유리하고, 지리적으로 병충해나 질병과도 격리돼 있어 안전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최대 기업인 폰테라가 뉴질랜드 전역에 분유, 치즈와 같은 유가공제품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 하인즈가 뉴질랜드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인즈의 경우에는 호주에서 운영 중이던 가공식품 제조라인을 뉴질랜드 헤이스팅스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자동차나 전자 제조업의 탈 뉴질랜드 현상과는 반대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기업의 뉴질랜드 식품 제조업 투자도 활발한 편인데, 1990년~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 식품기업이 뉴질랜드 식품, 음료업체를 인수합병해 진출했고, 최근에는 중국 유제품 기업이 뉴질랜드에 분유 제조공장을 건설해 진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오뚜기가 1997년에 오클랜드 남부에 소고기 가공품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소스제품을 생산해 현지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 임업

뉴질랜드 조림산업은 2017년 54억 뉴질랜드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약 2만 4천여 명이 뉴질랜드 각 지역에서 조림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토의 약 30%(810만ha)가 광활한 산림 지역으로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 중 640만 ha는 천연림, 170만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7년 기준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의 원목 수출국이며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및 국제 목재 가격 회복으로 동 부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원목은 Radiata Pine(건축 외장재), Douglas Fir(건축 내장재), Macrocarpa(가구, 건축내장재) 등이며, 침엽수 생산은 2003년에 비해 58%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반면 생산비용 증가로 목재패널, 펄프 및 종이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에 뉴질랜드 1차 산업부(Ministry of Prime Industry)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림산업을 활

성화하는 정책(1 Billion Trees)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주요 목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토질 향상, 국가 수입의 다양화, 환경 문제 해소, 기후 변화 예방, 수질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 상업조림지에 연간 5천만 그루씩을 심고 관리할 예정이며, 정부기관과 NGO 단체, 마오리개발부와의 협업으로 공공 택지에 연간 5천만 그루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림산업 지원 펀드, 탄소 배출 억제 펀드, 탄소 거래권 및 Hill County 탄소 절감 펀드 등 총 15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여 직·간접적으로 조림산업 지원하게 된다. 10억 그루 조림 정책에는 바이오 에너지 육성사업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2040년까지 바이오 에너지의 전력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❶ 건설/인프라

최근 뉴질랜드 경제는 건설업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랜 침체를 겪었던 뉴질랜드 건설업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복구 수요에 이어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맞고 있다. 2007년 1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던 연간 건축허가 금액이 2011년에는 89억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2012년을 전환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오클랜드시의 2016년 건설허가금액이 사상 최대인 60억 달러를 기록하며 뉴질랜드 건설경기를 이끌고 있는데,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 복구 규모가 400억 달러인데 비해 오클랜드 건설 수요는 2020년까지 이보다 5배 많은 2,0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오클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인 Auckland Plan에 따르면, 2013년 150만 명인 오클랜드 인구는 30년 후에는 2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새로 늘어날 12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건설 역시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시는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클랜드 공항철도 건설 프로젝트’나 ‘20Connect 프로젝트’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 건설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 4월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 2028년 동안 총 280억 달러를 투자하여 철도 및 버스전용차선 건설, 지방도로 건설, 대중교통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주택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력을 향상하기 위해 서민층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오는 2028년까지 10만호 건설하는 키위빌드(Kiwibuild)도 진행되고 있다. 당초 키위빌드는 오클랜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2년에 처음으로 야당인 노동당에 의해 제안

되었다가, 2018년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예산이 배정되어 2019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키위빌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건설업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 관광업

청정국가의 이미지를 가진 뉴질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중의 하나가 관광이며,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환경,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가진 나라로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관광업은 낙농업 다음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뉴질랜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88만 명을 기록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호텔 가동률은 최근 10년 이래 최고치인 80%(한국 60%)를 기록할 정도로 뉴질랜드 관광업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관광수요 증가, 미국의 베이비부머 은퇴자 관광수요 증가, 뉴질랜드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 뉴질랜드 관광업은 당분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누적 관광객 수는 약 18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계절적으로 뉴질랜드 관광 수요가 하반기에 더 크기 때문에 2019년에도 전년에 비해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10년간 뉴질랜드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추이(단위: 천 명)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6월말)
관광객 수	2,533.9	2,558.4	2,867.4	3,537.6	3,883.3	1,792.1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 IT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나 금융업 대신에 농업과 관광산업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낙후한 정보통신 인프라 장벽에 부딪혀 산업발전 속도가 비교적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에 뉴질랜드 정

부는 ICT, 하이테크 산업 등 창조경제 혁신기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산하에 Callaghan Innovation(CI)을 설립하였다. CI의 주요 업무는 경제개발 관련 기관, 기업 인큐베이터, 대학, 정부부설 연구기관, 벤처투자가 및 각 산업별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ICT, 하이테크, R&D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7/2018회계연도에 CI의 예산은 정부지원금(2억 달러)을 포함하여 2억9천만 달러에 달하며 CI가 직접적으로 성장을 지원한 기업의 수는 2,711개에 달하고 있다.

최근의 뉴질랜드 IT 분야는 초고속인터넷 광통신망 구축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출자기관인 Crown Fibre Holdings에서 동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시공과 망 관리는



Chorus, Enable, Northpower, Ultra-Fast Fibre 4개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IT 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개발, 헬스나 회계, 온라인 경매와 같은 특정 분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뉴질랜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빨라진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뉴질랜드 게임산업은 매년 확장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221% 증가한 8,020만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뉴질랜드 게임 제작사들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기업과의 협업을 다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에 강한 한국 제작사와의 협업을 희망하는 업체도 다수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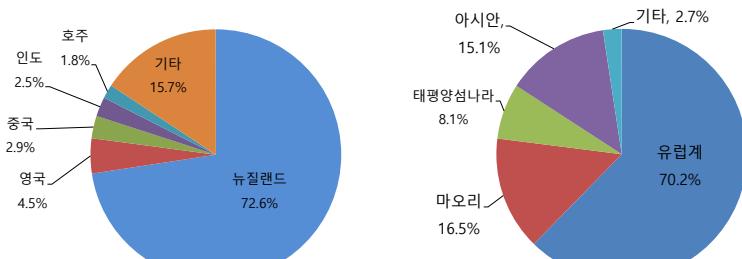
02 노동시장 동향

01. 인구구조

뉴질랜드는 10세기경 폴리네시아 문화를 계승한 마오리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됐으며, 유럽인으로는 1642년 네덜란드인 Abel Tasman이 최초로 발견했다. 1769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탐험하며 많은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1840년 마오리족 대표와 영국 대리인 사이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체결됨으로써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1907년 9월 26일 뉴질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31년에 영연방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2018년말 기준 뉴질랜드의 인구는 490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며 2020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 조사된 인구센서스(2018 Census population and dwelling counts)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에스니시티(ethnicity) 측면에서 뉴질랜드 인구 구성은 유럽계의 비중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토착민인 마오리가 16.5%, 아시안이 15%(중국계 4.9%, 인도계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의 인구센서스와 비교할 때 지난 5년 간 유럽계의 비중은 4%p 감소한 반면, 마오리와 아시안의 비중은 각각 1.6%p 와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출생지역별로는 뉴질랜드 72.6%, 영국 4.5%, 중국 2.9%, 인도 2.5%, 호주 1.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에 비해 뉴질랜드와 영국 출생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 출생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 지난 5년 간 중국과 인도 출신의 이민자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뉴질랜드 인구 구성 및 출생지 분포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2018 Census population and dwelling counts”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가임기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선 횟수가 13회에 불과하며, 1명 대에 머무르던 출산율이 2006년부터 2명을 넘어서면서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 다시 낮아져 2018년의 출산율은 1.7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뉴질랜드 인구 추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진다면 현재 수준의 이민자 유입을 가정하더라도 2068년 뉴질랜드 인구는 53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시나리오로 최근의 평균적인 출산율을 가정하더라도 2068년 예상 인구는 650만 명 정도이고, 이 때 만일 이민자 유입이 없다는 가정을 할 경우에는 2068년 인구는 520만 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뉴질랜드 인구 추계(2016년-2068년) (단위: 천 명)

시나리오	1. 낮은 출산율 가정		2. 평균 출산율 가정			3. 높은 출산율 가정	
	연도	추정치	출산율	추정치	출산율	이민자 미반영	추정치
2016년	4,666	1.80	4,693	1.90	4,693	4,755	1.99
2018년	4,807	1.76	4,865	1.89	4,751	4,944	2.02
2028년	5,070	1.54	5,390	1.86	5,014	5,721	2.17
2038년	5,233	1.42	5,770	1.85	5,179	6,318	2.28
2048년	5,322	1.34	6,061	1.85	5,250	6,842	2.36
2058년	5,320	1.26	6,300	1.85	5,246	7,327	2.44
2068년	5,302	1.19	6,516	1.85	5,211	7,875	2.51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2016–2068'

02. 노동시장 동향

❶ 실업률 추이

뉴질랜드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실업률은 2009년 말 6.5% 수준에서 2018년 말에는 4.3% 수준으로 낮아져 최근 10년 이내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률은 보통 경제지표의 후임 지표로 2018년 초기의 이민자 유입, 관광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증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

며 하락세는 점차 둔화되어 2019년에는 비슷하거나 약간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최근 10년 간 뉴질랜드 실업률 추이(단위: %)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❶ 성별 취업률 및 실업률 현황

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뉴질랜드는 실질적으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뉴질랜드의 취업률은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말을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경제활동인구(Working-age population)는 392.7만 명 중 노동시장참여자(Labour force)는 70.9%에 해당하는 278.4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률과 실업률은 각각 67.8%, 4.3%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별 및 연령별로 뉴질랜드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에 차이가 없으나, 취업률은 남성이 72.9%인 반면 여성은 63%로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직장 문화적 특징이기 보다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구직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

☰ 2018년 말 기준 뉴질랜드 취업률 및 실업률 현황_성별(단위: 천 명)

구분		경제활동인구	노동시장참여율	취업률	실업률
전체		3,927	70.9%	67.8%	4.3%
성별	남성	1,920	76.2%	72.9%	4.4%
	여성	2,007	65.8%	63.0%	4.2%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❶ 연령별 취업률 및 실업률 현황

연령별로는 30대 ~ 50대 인구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율, 취업률, 실업률 모두 큰 차이 없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뉴질랜드 노동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청년층에 해당하는 15 ~ 24세 연령대의 현황인데,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취업률과 실업률이 저조한 편이어서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는 뉴질랜드도 전세계적인 청년층 취업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말 기준 뉴질랜드 취업률 및 실업률 현황_연령별(단위: 천 명)

구분	경제활동인구	노동시장참여율	취업률	실업률
연령별	15-24세	670.6	66.0%	57.5%
	25-34세	721.3	85.6%	3.0%
	35-44세	590.0	87.4%	2.2%
	45-54세	634.0	87.9%	2.5%
	55-64세	586.6	78.6%	76.7%
	65세 이상	718.7	23.8%	23.4%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❶ 에스니시티(ethnicity)별 취업률 및 실업률 현황

에스니시티별로는 유럽계와 아시안이 마오리 및 태평양 섬 인근 지역민에 비해 취업률과 실업률 모두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교육수준과 관련이 높은데 유럽계와 아시안의 경우 18세를 기준으로 NCEA level 2(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학력자 비율이 90% 내외인 반면 마오리 및 태평양 섬 인근 지역민의 경우 동 비율이 80% 미만이다. 또한 NCEA level 1(고등학교 1학년 수준) 미만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도 마오리 19.1%, 태평양 섬 인근 지역민 13.7%를 기록해 학업 포기율도 유럽계나 아시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마오리와 태평양 섬 인근 지역민의 실업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18년 말 기준 뉴질랜드 취업률 및 실업률 현황_에스니시티별(단위: 천 명)

구분	노동시장참여율	취업률	실업률	노동자수준(교육수준)	
				NCEA level2 이상	NCEA level1 미만
유럽계	71.1%	68.5%	3.6%	88.4%	7.8%
마오리	69.3%	63.6%	8.2%	75.6%	19.1%
태평양	65.9%	60.3%	8.5%	78.7%	13.7%
아시안	71.7%	68.6%	4.3%	90.9%	4.2%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❷ 직업별 분포

뉴질랜드 취업인구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전문가가 64.3만 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관리자에 해당하는 매니저(56.4만 명), 기술자 및 기능원(30.2만 명), 사무직 종사자(29.6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종사자 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매니저와 전문가의 종사자 수가 각각 55.8%, 38.0%씩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장치 조작 및 운전원도 14%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동 기간에 오히려 7.4% 감소하였으며, 사무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매니저와 전문가, 사무직, 기능직 등 높은 숙련과 교육수준을 요하는 직업군에서 뉴질랜드의 노동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군에 대한 노동공급은 노동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부문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을 겪음에 따라 자국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인 IT(정보통신기술), Agriculture and forestry(농림), construction(건축), engineering(공학) 등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뉴질랜드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2018년 말 기준, 단위: 천 명)

	2018년 말	2008년 말	증감율
매니저	564.1	362.1	55.8%
전문가	643.3	466.1	38.0%
기술자 및 관련 기능원	302.7	281.4	7.6%
공무원	236.1	207.4	13.8%
사무	296.2	301.8	-1.9%
판매	208.3	199.9	4.2%
장치 조작 및 운전원	144.1	126.3	14.1%
단순노무직	238.8	258	-7.4%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03. 노동정책 동향

뉴질랜드는 2017년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국민당이 물러나고 진보성향의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노동정책이 고용과 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공정임금협약(Fair Pay Agreements)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pay equity) 도입 등 일련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임금제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가 해당 산업부문 또는 직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최소 고용조건에 대한 협상을 가능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임금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개별기업 차원에서 고용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생산성 증가가 제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또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는 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데, 뉴질랜드는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정도로 여성의 권리에 관해서는 선구적이어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성별 임금 격차가 낮은 편이지만 동 제도의 도입으

로 성별 임금 격차를 더욱 축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의 노동정책에서 아주 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적은 불균형 상태에 있는 뉴질랜드는 부족한 인력을 주로 이민자를 통해 충원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이민프로그램은 '생산적 다양성'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서 기술이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의 인구와 노동력에 매우 중요하며, 때때로 부족한 기술과 경험을 뉴질랜드로 이전하고 뉴질랜드의 직장 내에서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 임금, 경쟁력, 생산성, 사회 및 경제적 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1991년부터 포인트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이민프로그램은 영주프로그램(기술/사업 이민, 연간 비자 발급 수에 제한이 없는 가족이민, 연간 비자 발급 수에 제한을 두는 가족이민, 국제적/



인도적 이민)과 단기이주프로그램(필수기술 노동자, 워킹홀리데이, 노동학생비자, 학생, 방문객)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분야에 상관없이 노동력을 받아들이던 기존의 일반노동 정책(General Work policy)을 바꾸어,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노동력으로 채우지 못하는 직종을 사전에 확인하여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필수기술 정책(Essential Skills policy)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단순기술 이민자들의 체류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인 지역 계절고용(Regional Seasonal Employer)을 크게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단기노동자는 감소하였으나, 비노동시장 범주의 이주자(예, 워킹홀리데이 노동자 및 학생 등)가 증가하고 있다.





03 고용 관련 제도

01. 개요

뉴질랜드의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이며, 이 외의 관련 법규로는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983),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2), 임금보호법 (Wages Protection Act 1983), 휴가법(Holidays Act 2003), 육아휴직 및 고용보호법(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 등이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고용관계법에서 그간 논란이 되거나 미비하다고 여겨져 왔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고용관계개정법(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2018)이라는 법 제정의 형태로 2019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법령들은 고용의 최저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고용관계 주요 법령 및 내용

-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은 뉴질랜드의 노동 및 고용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고용계약서의 서면작성 원칙과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계약서나 현재 유효한 고용조건을 담은 문서를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최소요건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고용관계법에서는 고용기간 중 부당해고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휴가법(Holidays Act 2003) : 병가, 위로휴가, 연간 4주의 정기 휴가와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및고용보호법(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은 최대 52주 간의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8주 간의 유급휴기를 포함하는데 급여는 정부가 보조함. 이 기간 중 고용주는 보통 해당 직책을 공석으로 두거나 임시 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음
-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 : 성,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은퇴연령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983) :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음
-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2) :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같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임금보호법(Wages Protection Act 1983) : 임금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는 임금의 공제를 금하고 있음

한편, 고용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정부기관이 감독을 담당한다. 근로 감독기관인



The Labour Inspectorate는 뉴질랜드 사업체들이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며, 고용 관계 기관인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는 고용과 관련된 사례들(급여 미지급, 고용계약서 조항 위반,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여 감독한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E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노동법원인 Employment Court에서 처리한다.

02. 고용 계약

➊ 고용의 형태

뉴질랜드 고용관계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 동안 일을 하느냐, 임금을 어떻게 지급 받느냐에 따라 고용의 형태는 상이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하든 혹은 어떤 고용 형태로 일을 하든지 간에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고용의 일반적인 형태

- 폰타임 고용(full-time employment) : 보통 주당 35~40시간을 일하는 고용을 의미함
- 파트타임 고용(part-time employment) : 보통 폰타임보다 적은 시간인 주당 10~20시간을 일하는 고용을 의미함. 폰타임 고용이든, 파트타임 고용이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동일함
- 기간 계약직(fixed-term employment) : 사전에 정해진 날짜에 고용이 종료되는 고용을 의미함. 확정 기간 고용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렇게 해야 할 진실된 이유가 있어야 함. 예를 들면 집 페인트 작업, 건물의 건축과 같은 일회성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되거나, 출산 휴가 또는 학습 휴가를 떠난 정규 직원의 일을 대신 하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 과일 수확과 같은 연중 특정 시기에만 필요하여 고용되는 경우와 같이 기간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함. 기간 계약직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근무가 언제, 어떻게 종료될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사실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함

➌ 근로자의 기본 권리 및 의무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법적 최소 권리와 권한이 적용되며, 이 권리 는 고용계약서 상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비자, 워크 비자, 또는 워킹 휴리데이 비자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

로자는 800-20-90-20으로 전화하여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 라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갖는 최소 권리

- 반드시 서면 고용계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6세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최저임금이나 그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중간 휴식(예: 두 차례의 유급 휴식시간과 한 차례의 무급 식사시간)을 취할 권리가 있다.
- 법정 공휴일 11일을 유급으로 쉴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정 공휴일이 통상적인 근무일일 경우에 해당된다.
-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최장 12개월 육아휴가/육아휴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만일 근무일이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어 일을 하게 되면 정상 급여 요율의 1.5 배를 지급받음과 더불어 다른 날 하루를 쉴 권리가 있다.
- 법에 정해진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급여 공제를 하지 못한다.
- 고용관계가 6개월 지속된 후에는 유급 병가 5일 및 직계 가족 사망에 대한 사별휴가 3일을 쓸 권리가 있다.
- 고용주가 채용을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 고용관계가 12개월 지속된 후에는 매년 4주 유급 연차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 고용주가 자신에게 여권을 맡겨두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 피고용인과 고용주는 신의로 대함으로써 상호 공정해야 하며, 이것은 서로에게 솔직하고 정직하며 호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자신이 일한 시간과 쓸 수 있는 휴가(병가 등 포함) 일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파면이나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 나이,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불법적 차별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적절한 감독 하에 적합한 장비를 갖춰 안전하게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❶ 고용계약서

뉴질랜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할 때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주어야 하며, 고용계약서의 조건을 수락하고 서명하기 전에 그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내용을 함께 읽고 상의할 수 있다. 계약서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물어 본 후,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에 관해 고용주와 협의하여 계약 조건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서명해야 한다. 이 때 사후적으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원래 동의한 계약서 조건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명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부 웹사이트(<https://eab.business.govt.nz>)에 있는 고용 계약서 작성기(Employment Agreement Builder)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업체와 근로자에게 맞는 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고용인과 종업원의 이름(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 수행할 업무에 대한 설명
- 업무를 수행할 장소
- 약정된 근로시간 또는 직원이 근무할 시간
- 임률 또는 급여(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및 임금 지급 방법(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고용계약서에 포함되거나 다른 곳에서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함)
- 90일 이내에 개인 불만사항을 제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포함하여 고용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 공휴일 근무에 대해 (적어도) 1.5배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 고용주의 사업 매각 또는 이전이나 종업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적용해야 하는 고용 보호 조항
- 평가 기간이나 수습 기간 등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타 사항
- 고용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사직, 해고, 정리해고 등)에 대한 내용
- 기간 계약직(fixed-term)의 경우 고용의 특성
- 계약 내용 확인 후 고용주와 종업원의 서명 필수

03. 최저임금제도

현재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 1983(Minimum Wage Act 1983)’, 2013년부터 신규 근로자의 최저임금 자격조건을 변경한 ‘최저임금(신규 근로자) 개정법(Minimum Wage(Starting-out Wage) Amendment Act)’, ‘고용관계법 2000(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 고용부장관은 매년 12월 최저임금보고서 검토(Minimum Wage Review)를 통해 최저임금 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이를 내각에 통보하고 내각이 승인하면 총독은 의회령(Order in Council)을 통해 매년 4월 변경된 최저임금을 발효한다. 최저임금은 풀타임직, 파트타임직, 기간 계약직, 임시직, 재택근무직, 전액 또는 일부 커미션직 및 성과급직을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6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신입 또는 수습사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성인 최저 임금 또는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1894년에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세계에서

최저임금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을 17.7달러로 인상하였으며, 2020년 18.9달러, 2021년 20달러로 단계적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뉴질랜드 최저임금 :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단위: NZD)

최저임금 유형	시간당	1일(8시간)	1주(40시간)
성인	17.70	141.60	708.00
신입사원(Starting-out worker)	14.16	113.28	566.40
수습사원(Trainee)	14.16	113.28	566.40

자료 : 뉴질랜드 고용부

04. 근로시간 및 수습기간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1B조)에서 규정한 정규 근무는 주당 40시간 근무이며,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 외 근무(overtime)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외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에게는 시간외 근무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뉴질랜드 고용주는 최장 90일까지 수습 기간을 정해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기간 내에 어느 때라도 경고나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수습 기간은 자의적인 것이므로 고용주가 수습 기간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협의에 의한 서면 고용 조항이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습 기간에도 노동자의 최소 권리 및 권한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며, 고용주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 기간 만료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지만, 고용주에 의한 차별 대우, 괴롭힘, 부당한 행동 등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5월부터 발효된 고용관계개정법에 의하면 90일 간의 수습기간은 19인 이하의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 대신 시험채용기간(probationary periods)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의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합당한 기술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채용기간은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하여, 합당치 않을 경우 고용관계를 끝낼 수 있는 공정한 과정으로 마련되어 있다.

05. 연차휴가, 공휴일, 병가 등

❶ 연차휴가(Annual Leave)

뉴질랜드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매년 4주 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이 때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20일이 주어지고 주 3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12일의 연차휴가를 갖게 된다. 기간제나 파트 타임과 같이 불규칙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휴가일수를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이 고용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의 공휴일

- 새해 첫날(New Year's Day) : 매년 1월 1일*
- 새해 첫 날의 다음 날(Day after New Year's Day) : 매년 1월 2일*
- 와이탕이 데이(Waitangi Day) : 매년 2월 6일
- 여왕 탄생일(Queen's Birthday) : 매년 6월 첫째 월요일
- 노동절(Labour Day) : 매년 10월 넷째 월요일
- 안작데이(ANZAC Day) : 4월 25일
- 성 금요일(Good Friday) : 매년 날짜가 바뀜(2020년은 4월 10일 금요일)
- 부활 주일 다음 월요일(Easter) - 매년 날짜가 바뀜(기톨릭 교회에 의해 확정)
- 성탄절(Christmas Day) : 12월 25일*
- 박싱 데이(Boxing Day) : 12월 26일*
- 각 지역 기념일 : 각 지역별로 기념일이 상이

(주 *) 대체 휴일이 적용되어 해당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또는 화요일)로 공휴일이 옮겨짐

❷ 공휴일

뉴질랜드에는 연 11일의 공휴일이 있고, 노동자는 공휴일에 쉴 권리가 있다. 통상적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 휴가일이 하루 주어지며, 대체 휴가일도 유급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추가 보상으로 평상시 임금의 1.5배를 받는다.

❸ 병가 및 장례휴가

병기는 아팠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는 연 5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6개월 근속 근무 전에 병가를 사

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무급 휴가를 사용하거나 연 휴 중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있다. 본인이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물론이고 본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족(배우자, 파트너, 자녀 혹은 노부모)이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본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례 휴가는 노동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본인의 배우자,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간의 유급 장례휴가를 쓸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고용주가 판단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❶ 연차휴가 수당

모든 근로자는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사항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권리는 나이,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비정규 직원 및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연차휴가의 보상금 산정 시에는 주당 통상임금(ordinary weekly pay)과 휴가 직전 12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임금(average weekly earnings) 중에서 큰 금액이 적용된다. 주당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주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및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식에 대한 지급금이 포함되며, 비정기적인 주급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일회성 지급금, 고용주가 임의로 주는 지급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주당 평균임금은 연간 총소득을 52주로 나눈 금액이다. 만약 연휴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1년 미만 동안 근무하다가 그만둘 경우 고용주는 근무한 동안 지급한 세금공제 전 임금 총액의 8%를 노동자에게 고용 만기 시에 휴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매번 임금 지급 시에 해당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06. 고용의 종료

❶ 사직(Resignation)

근로자는 어느 때든 합당한 사유와 합당한 고지 절차를 거쳐 사직할 수 있다. 사직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고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직장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고용주는 고지 기간 전체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가 고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휴가와 관련한 보상금은 퇴직 시 모두 지급해야 한다.

❶ 강요된 사직(Constructive dismissal)

자발적인 사직과 달리 강요된 사직은 고용주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작업환경을 못 견딜만한 상황으로 조성하여 사임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법에서 보장된 권리구제 장치들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❷ 해고(dismissal)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사유(have a good reason)가 있어야 하고, 선의로 행동(act in good faith)해야 하며 그 절차도 공정(follow a fair and reasonable process)해야 한다. 해고의 조건(중대 또는 반복적인 위법 행위, 저조한 성과, 역량 부족 등)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되므로 해고 시에는 가장 먼저 해고사유가 발생되었는지를 살피고 공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 경고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려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해고 전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기간을 가져야 한다.

❸ 정리해고(redundancy)

제품의 생산중단이나 특정 사업부문의 매각, 생산공정의 자동화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감원 및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초 고용계약서에 기본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고용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는 통상 최종적으로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해결해야 한다. 정당한 정리해고는 고용관계 종료의 합리적 사유가 되며, 이러한 해고에는 적법한 사업상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업무성과나 부적합행위, 부당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정리해고의 경우 법으로 보상을 정하고 있지 않지

만 고용계약서에 해고 시 보상하기로 정하였다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고용계약서에 해고보상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고용주는 해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07. 퇴직금제도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는 별도의 명시적인 퇴직금제도가 없다. 하지만 퇴직금에 준하여 고용 종료 시 지급되는 퇴직수당(Termination payment)이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보너스나 공로금과 같은 일시불퇴직수당(Lumpsum retirement payments)과 정리해고수당(Redundancy payments) 등이 있다.

08. 분쟁의 해결

직장에서의 분쟁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고용관계 문제(employment relationship problems)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며 근로자는 소송사유(부당해고 등)를 쟁점으로 하는 개인분쟁(personal grievance)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고용관계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 중 고용주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로 근로자의 저조한 업무능력 및 기술수준,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회사공금의 사취 또는 유용, 동료들과의 잣은 마찰 및 이로 인한 팀워크 저해, 용납되기 어려운 언행 등이다.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고압적인 지시 및 명령, 욕설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 임금 체불, 수당의 미지급, 과도한 작업시간, 작업장의 잣은 이동, 근무환경 개선 미흡, 부당해고 등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용계약서에는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중재(mediation) 또는 조정(arbitration) 등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 및 분쟁 발발 시 법적인 장치에 의존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화로 갈등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고용관계 당사자는 가장 먼저 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산하에 마련되어 있는 중재 및 조정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로, 해당 문제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법

적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조사관(Labour Inspector)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담할 수 있고, 조사관은 작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로, MBIE 산하의 중재(mediation)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선임한 독립적인 중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때 중재자는 양 쪽의 주장과 증거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정한 수준의 타협을 권고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로, 쌍방이 합의하여 선임한 조정관(arbitrator)을 통해 조정(arbitration) 결정을 구할 수도 있다. 조정판의 결정은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소송과 같은 다음 단계에서의 결정에도 반영될 여지가 많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어느 일방이 합의 또는 결정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MBIE 산하의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제소하여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중재와는 달리 고용관계청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인 고용법원(Employment Court)을 통한 해결을 구할 수 밖에 없다.





04 임금제도

01. 임금의 체계

뉴질랜드의 경우 매우 다양한 임금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작성하는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용계약서 작성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때 임금 수준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 방식도 사업장의 정책이나 고용계약서에 따라 다양하며, 월 단위(monthly)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매주(weekly) 지급, 2주 단위(fortnightly)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이하게 뉴질랜드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나 수표 등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임금에서 공제를 하려면 이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소득세 원천 징수, ACC 납입금, 학생대출 상환금, 자녀양육비 납입금과 같은 공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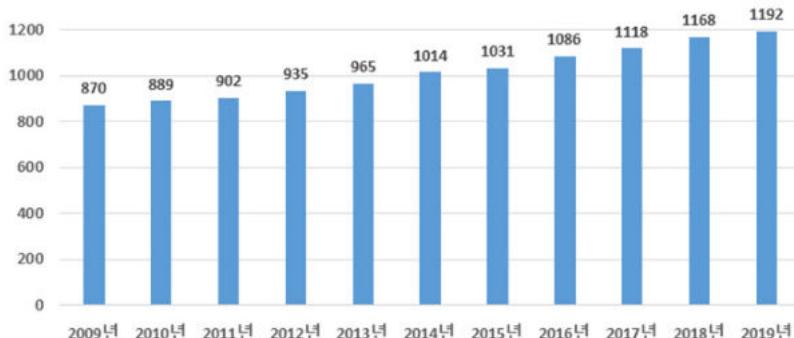
급여 이외의 각종 부가수당(allowance)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부가수당이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보유하는 특별한 자질이나 기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상 특별 책임(예: 감독자), 해당 업무의 난이도, 고용주를 대신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지출에 대한 보상 등이 부가수당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양성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2)에 의거하여 동일한 또는 상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남녀 근로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차등 임금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에 의거하여 성별이나 출신국가 및 민족, 인종, 종교 및 신념 등의 이유로 채용, 해고, 훈련, 승진에 있어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고용관계법 (Employment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는 위에 열거한 이유 또는 노조 활동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조건, 근로조건, 추가급여, 훈련기회, 승진 또는 인사이동, 해고, 퇴직에 있어 차별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사용자가 고용계약에 의해 합의된 임금, 수당 또는 기타 금전의 일부라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미지급액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국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관계국이 사용자에게 임금요율을 포함한 합의된 고용조건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02. 임금수준 현황

뉴질랜드 통계청에 의하면 근로자의 주당(weekly) 평균 임금 수준은 2009년 870달러에서 2019년 9월말 1,192달러로 높아져 지난 10년 간 연평균 3.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 평균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20달러까지 높아질 예정임에 따라 뉴질랜드 임금 수준도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2019년 뉴질랜드 근로자의 평균 주급 추이(단위: NZD)



자료: 커리어뉴질랜드(www.careers.govt.nz/)



직종별로는 뉴질랜드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고숙련을 요하는 직종일수록 평균 임금이 높다. 매니저의 평균 임금이 가장 높고 단순노무직이 가장 낮으며, 지난 10년간 관광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판매직의 임금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 평균 주급 수준(단위: NZD)

	2009년 평균	2019년 평균	증감율
매니저	1,195	1,621	35.6%
전문가	1,091	1,432	31.3%
기술자 및 관련 기능원	868	1,110	27.9%
공무원	572	788	37.8%
사무	749	1,018	35.9%
판매	529	794	50.1%
장치 조작 및 운전원	783	1,034	32.1%
단순노무직	572	750	31.1%
기타	793	1,164	46.8%

자료 : 커리어뉴질랜드(<https://www.careers.govt.nz/>)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Trade Me Jobs에 따르면 2018년 5월 ~ 11월 동안에 등록된 풀타임 근로자에 대한 직업별 연봉 수준(각종 보너스 및 초과근무 수당 등 제외)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해 직업카테고리별로 최저 연봉은 유사한 수준이나 최고 연봉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인다. 평균적으로는 IT의 임금 수준이 연간 100,000달러로 가장 높으며, 회계, 금융, 인사 관련 직업군의 임금이 높은 편이다. 물론 직업의 선택에 있어 임금 수준이 전부는 아니지만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2018년 뉴질랜드 직업카테고리별 연봉 수준(단위: NZD)

직업카테고리	평균 연봉	연봉 범위
Accounting	\$65,000	\$42,000 to \$125,000
Architecture	\$50,000	\$37,000 to \$85,000
Automotive	\$55,000	\$37,000 to \$85,000
Banking, finance and insurance	\$65,000	\$42,000 to \$125,000
Construction and roading	\$60,000	\$37,000 to \$145,000
Customer service	\$45,000	\$37,000 to \$65,000
Education	\$55,000	\$37,000 to \$85,000
Engineering	\$70,000	\$42,000 to \$125,000
Executive and general management	\$85,000	\$45,000 to \$207,000
Government and council	\$70,000	\$40,000 to \$145,000
Healthcare	\$55,000	\$40,000 to \$85,000
Hospitality and tourism	\$45,000	\$35,000 to \$63,000
HR and recruitment	\$65,000	\$45,000 to \$125,000
Information technology (IT)	\$100,000	\$45,000 to \$207,000
Legal	\$65,000	\$40,000 to \$115,000
Manufacturing and operations	\$47,000	\$35,000 to \$85,000
Marke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65,000	\$42,000 to \$125,000
Office and administration	\$50,000	\$37,000 to \$75,000
Property	\$75,000	\$42,000 to \$155,000
Retail	\$42,000	\$35,000 to \$65,000
Sales	\$60,000	\$37,000 to \$105,000
Science and technology	\$55,000	\$37,000 to \$105,000
Trades and services	\$55,000	\$37,000 to \$85,000
Transport and logistics	\$50,000	\$37,000 to \$80,000

자료: Trade Me Jobs(www.trademe.co.nz/jobs)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 주급은 1,341달리인데 비해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이의 33% 수준인 446달러에 불과해 계약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에스니시티(ethnicity)별로는 유럽계 평균 주급이 1,256달러로 가장 높고, MELAA(1,089달러), 아시안(1,054달러), 마오리(1,012달러)의 순이며, 태평양 섬 인근 출신의 경우 평균 주급이 1,000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아시안의 임금 증가율이 타 에스니시티에 비해 높은데, 이는 고속련 아시안의 이민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러한 임금 격차의 원인은 일자리의 질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유럽계의 경우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높음에 따라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를 갖는 비율이 높은 반면, 태평양 섬계의 경우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뉴질랜드교육청(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이 2017년에 뉴질랜드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10년 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별로 초과 임금이 NCEA Level 1~4의 경우 15% 정도인 반면, Level 5~7은 30%, 학사학위자는 67%, 석사학위자는 95%, 박사학위자는 1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에스니시티(ethnicity)별 평균 주급 수준(단위: NZD)

	2009년 평균	2019년 평균	증감율
유럽계	906	1,256	38.6%
마오리	742	1,012	36.4%
태평양 섬	724	981	35.5%
아시안	740	1,054	42.4%
MELAA	799	1,089	36.3%

주) MELAA는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Africa계를 의미함

자료 : 뉴질랜드 통계청





05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노령연금(Newzealand Superannuation),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 미망인 급여(Widows Benefit), 장애급여(Invalids Benefit),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독립청소년급여(Independent Youth Benefit), 병가보조금(Sickness Benefit), 별거 또는 미혼모급여(Domestic Purposes Benefit), 고아급여(Orphans and Unsupported Childs Benefits) 등 매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도가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취업자가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ACC에 의한 상해보험 정도에 불과하다.

❶ ACC 제도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는 상해나 사고 시 의료비(보상금)를 지원해주는 뉴질랜드 기관으로, 한국의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뉴질랜드에서 Temporary Visa(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를 소지한 외국인들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복지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상해 치료와 관련한 대부분의 비용을 ACC에서 보상하며, 구급차 이용료, 의사진료비, 물리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방사선 촬영비, 처방약값 등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한다. 또한 진찰, 치료, 재활을 받기 위한 통원 교통비(유류 수당이나 차량 개조비, 대중 교통 요금, 택비시 등)나 재활 지원 및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사고 시에도 ACC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감기를 비롯한 일반 질환은 ACC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워크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급여로 부과(pay as you go)되는 반면,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워크비자 소지자는 공공 기금을 받는 건강, 출산 및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❷ 의료시스템

한국의 경우 몸이 아플 때 주변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가정의(GP, General Practitioner)가 진료의 첫 번째 단계를 담



당한다. GP와 1차 진료를 하고 난 후 GP의 판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진찰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에게 2차 진료를 받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게 의뢰한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개개인이 GP에 등록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GP, Accident & Medical Centre 혹은 다른 사립 전문의를 만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혹은 2년 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인 경우 국립병원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전문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물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의료 보험을 이용하여 사립병원이나 전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치과 진료는 사설 치과병원에 의해 제공되며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에서 생활할 때 가장 한국이 그리운 상황은 아마도 아플 때일 것이다. 아주 심하게 아프지는 않고 일반적인 건강 진단을 받고 싶을 때에는 우선 가정의(GP)를 찾아간다. 하지만 가정의를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아프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까운 Accident & Medical Centre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하며, 이 때 응급전화번호인 111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 뉴질랜드의 응급차 서비스는 한국과 달리 병원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자선단체인 St. John(세인트 존스) 응급차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며, 비영주권자들은 이송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GP 등록 방법 및 혜택

GP 등록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양식에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및 인종과 같은 개인 신상정보를 적게 된다. GP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가정의에게 진료 시 저렴한 진료비
- 가정의가 발행하는 각 처방전은 단지 \$5만 부과됨
- 필요시 무료 통역서비스
- 자녀의 예방접종에 관한 조언과 자궁암 및 유방암 검사 등의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
- 금연 등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한 조언을 포함하여 당뇨, 고혈압 등의 관리를 돋기 위한 추가 서비스
- 의사 및 진료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 가정의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06 개인 소득세

01. 개인소득세 개요

뉴질랜드의 조세를 규율하는 법령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이다. 뉴질랜드는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결정 및 부과, 징수 등 대부분 조항에서 개인과 법인에 차이를 두지 않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법전 편제 상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뉴질랜드 소득세법에 의해 납세의무자(taxpayer)가 되며,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되는데 반해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보수와 임금, 수당을 비롯한 급여 등은 뉴질랜드에서 번 것이라면 뉴질랜드 원천으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이나 호의적 성격의 연금(ex gratia pension), 기타 뉴질랜드에서 체결된 계약에서 번 소득은 모두 뉴질랜드 원천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파트타임(주 20시간 이내)으로 일을 하더라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뉴질랜드에 상시 거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연속되는 12개월 동안의 기간에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 있었던 사람(183일의 첫날부터 거주자로 분류)을 의미한다.

02. 과세대상 근로소득

피고용인인 개인은 고용과 관련되어 얻은 모든 것(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는 납세의무자의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봉급, 임금, 보너스, 포상금, 추가임금, 고용주의 부담으로 한 비용, 고용상실에 대한 보상금, 이주비 등을 포함하며, 이 외에도 고용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숙박의 시장가치, 기타 금전적 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가장 대표적인 근로소득은 급여(salary)이며, 대부분의 한국인 취업자의 경우 급여가 가장 중요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일 것이다. 급여는 봉급, 임금, 수당을 비롯하여 고용



과 관계된 초과근무수당, 보너스, 포상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급여 외에 현물로 지급되는 여러 급부(Benefits in kind)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현물급부(Benefits in kind)

- 침식제공, 주택, 숙소 사용(board or lodging or the use of a house or quarters) : 거주 이전에 대한 비용이 아닌 모든 침식 제공이나 주택 및 숙소의 사용에 대한 시장가치는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하며, 금전으로 지급된 숙박수당과 비금전 숙박수당의 시장가격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됨.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인근의 유사 시설의 월세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보너스 및 추가급여(bonus and extra pay) : 보너스와 추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피고용인이 고용의무 범위 밖에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원하거나 고용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일 이상을 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추가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됨
- 전근수당(Payments to transferring employee) : 피고용인이 새로운 장소에 고용되어 주거지를 옮겨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손실이나 추가대출로 인해 증가된 이자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일시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됨
- 피고용인의 개인적 비용(employees' personal expenses) :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개인적 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금은 고용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됨
- 고용주가 지급한 세금(Taxes paid by employer) : 피고용인을 위해 고용주가 지급한 세금은 추가적인 보수이므로 피고용인 근로소득의 일부임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회사(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급여 이외의 비현금성 혜택인 fringe benefits을 제공하는 경우 FBT(Fringe Benefit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fringe benefits은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 차량의 개인적 사용, 저금리 대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피고용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에는 반영이 안 되는 반면 회사는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1985년에 FBT를 도입하였으며, FBT는 피고용인인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회사가 납부한다.

03. 소득세율 및 세액

④ Tax Code

뉴질랜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Tax Code를 알고 고용주에게 Tax Code Declaration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어떤 Tax Code 인가에 따라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Tax Code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직업인지 여부, second job의 존재 여부, 학자금 대출 여부, 소득 규모 등의 변수들에 의해 Tax Code가 결정된다. 자신이 어떤 Tax Code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 : <https://www.ird.govt.nz/how-to/taxrates-codes/codes/>)

⑤ 개인소득세율

개인소득세는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10.5% ~ 33%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19/2020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개인소득세율(2019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 적용)

과세소득	세율
\$14,000 이하	10.5%
\$14,000 초과 \$48,000 이하	17.5%
\$48,000 초과 \$70,000 이하	30%
\$70,000 초과	33%

자료 : 뉴질랜드 국세청(www.ird.govt.nz)

⑥ 세액공제(tax credit)

뉴질랜드는 복지제도가 세금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급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소득세에서는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제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피고용자가 발생시킨 비용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는 주로 세액공제(credits)를 의미한다. 세액공제는 기부금공제, 자녀공제, 실업공제 등이 있는데, 한국인 취업자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기부금공제 정도이다.

❶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우선 총소득(income)에서 비용(expense)을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산정한다.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여기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계산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을 곱하면 세금(Tax)이 산정되는데, 산정된 세금에서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한 Tax Credit(PAYE, RWT 등)을 차감하여 잔여소득세(Residual Income Tax)를 계산한다. 끝으로, 세금 예납제도에 의해 미리 납부한 예납세(Provisional Tax)가 있다면 잔여 소득세와 비교하여 세금환급이나 추가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산식	항목	내용
	Income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
(-)	Expenses	Income를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	Taxable Income	과세표준 산정
(x)	Tax rate	개인소득세율 적용
=	Tax	세금 산정
(-)	Tax Credit	공제분 차감(원천징수분, 세액공제 등)
=	Residual Income Tax	잔여소득세 산정
(-)	Provisional Tax	예납세 존재 시 차감
=	Refund of Tax to pay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 결정

03. 신고 및 납부

❷ 세액신고(Tax returns)

뉴질랜드의 경우 세금은 연단위로 과세되며, 과세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개인소득세의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일반적으로 급여 등을 받는 대부분의 피고용인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과세연도 말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피고용인(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액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에 'IR3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❶ 원천징수

PAYE(pay-as-you-earn)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인 IRD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PAYE(pay-as-you-earn) 시스템을 통해 과세 및 징수되며,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주기에 맞추어 매주, 격주, 혹은 매달 단위로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급여에서 동 세금이 공제된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IRD납세번호(Inland Revenue Department number)가 필요하므로 피고용인은 고용계약을 하게 되면 IRD납세번호를 신청하여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IRD납세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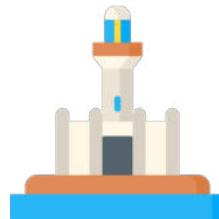


와 별개로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자신의 tax code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tax code는 원천징수 시 적용될 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는 tax code에 따라 급여 등에서 공제될 세액을 결정함. 고용주에게 tax code를 알려주지 않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4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피고용인은 급여 등을 받기 전에 고용주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 한편 이자나 배당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는 RWT(Resident withholding tax)로 불리며,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자는 RWT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RWT는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02

직종별 채용 트랜드와 취업역량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05

주요 로컬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가. 개요

뉴질랜드는 1840년 '와이탕이' 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영국 및 유럽인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현재 유럽계 백인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인도,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민족 국가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의 다른 영연방 국가와 함께 이민 정책에 우호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1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영연방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이민의 문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ICT·건축·공학 등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군에 대해서는 해외 인력에 취업비자를 발급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출신 국가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화이트컬러 직종에는 영국과 같은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국가의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 이민자들은 서비스 직종 및 3D 산업이라고 분류되는 블루컬러 직종에 대다수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로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유지되는 사회로서, 직업에 따른 차별 또한 거의 없어 블루컬러 직종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직업 만족도가 높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고용되어 일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워크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뉴질랜드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구직자는 뉴질랜드의 취업시장과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비자 부여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뉴질랜드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비자발급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취업시장은 뉴질랜드에서의 근무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지 근무 경험 없이 학위만으로 취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자국민 취업 우선정책(노동시장평가 요구)이라는 장벽도 존재하고 있어 현지인과의 경쟁이 심한 업종은 워크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노동시장평가(Labour Market Test)는 뉴질랜드 국민에게 노동시장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뉴질랜드 국민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시도(genuine attempt)해야 하며 적절한 국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이민성이 발표하는 부족직



군 리스트에 등재된 직업군에 취업하는 경우 노동시장평가 없이 바로 채용 가능하며, 한국-뉴질랜드 간 FTA 상의 일시고용입국비자를 활용하여 규정된 10개 직종(생체의학 엔지니어, 식품기술학자, 산림과학자, 한국어강사, 한국어튜어가이드, 다중매체 디자이너, 태권도 사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의사, 한의사)에 취업하는 경우 노동시장평가 없이 채용 가능하다. 따라서 뉴질랜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들의 경우 노동시장평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업군을 중심으로 도전한다면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02. 뉴질랜드 워크비자 승인 현황

뉴질랜드 기업고용혁신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nterprise)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 257,235명이 비자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94.2%인 242,409건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졌다. 지난 10년 간 뉴질랜드의 비자 승인률은 94% ~ 95%대를 유지해 왔으나 노동당 집권 첫해인 2017/2018 회계연도에 비자 승인률이 92%로 잠시 낮아졌다가 2018/2019 회계연도에는 비자 승인률이 다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7년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무분별한 이민자를 제한하고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양질의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워크비자 승인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자 신청 카테고리별로는 Essential Skills이 가장 많은 47,832건의 승인을 받았으며, Partner of a worker(25,068건), Post-study(Open형)(25,050건), Partnership(14,592건), Seasonal Employer(13,191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Essential Skills의 경우 비자 승인률이 88.9%로 전체 평균 승인률에 미달하고 있으며, Post-study(Open형)와 Seasonal Employer는 승인률이 99%에 달한다.

■ 뉴질랜드 주요 카테고리별 비자 승인 현황(각 회계연도 기준, 단위: 명)

구분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전체 카테고리	186,018 (94.4%)	209,601 (94.5%)	226,359 (93.2%)	230,262 (92.0%)	242,409 (94.2%)
Essential Skills	32,481 (87.7%)	36,390 (87.7%)	37,770 (85.5%)	43,869 (86.8%)	47,832 (88.9%)
Partner of a worker	15,084 (94.7%)	17,982 (95.4%)	21,021 (94.1%)	22,977 (92.5%)	25,068 (95.0%)
Post-study – Open	10,209 (98.7%)	16,998 (98.1%)	19,875 (98.1%)	16,629 (98.3%)	25,050 (99.0%)
Partnership	14,772 (94.3%)	15,672 (94.6%)	15,606 (92.0%)	16,161 (87.8%)	14,592 (93.8%)
Seasonal Employer	9,333 (99.4%)	9,831 (99.2%)	11,229 (98.9%)	11,814 (99.0%)	13,191 (99.1%)

주1) 괄호()안은 전체 신청 건 대비 승인 건의 비율(승인률)임.

주2) 뉴질랜드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여서 회계연도가 2개 연도로 표기됨. 즉 2018/2019 회계연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를 의미함.

자료 : 뉴질랜드 MBIE, 'Migration Data Explorer'

또한, 뉴질랜드 표준직업분류 기준인 ANZSCO('Australia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따른 2018/2019 회계연도 워크비자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뉴질랜드에서 어떤 직업군에 대해 워크비자가 많이 승인/발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승인률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지만 대체로 승인/발급 건 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직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뉴질랜드 취업 시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한 시장 환경과 성공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직업별로 쉐프가 가장 많았고, 농장근로자, 목수, 소매점 슈퍼바이저, 소매점 매니저, 카페 및 식당 매니저, 요리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뉴질랜드 주요 직업별 비자 승인 현황(각 회계연도 기준,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Chef	4371	4752	5028	5940	4782
Dairy Cattle Farm Worker	1323	1080	2292	3699	3750
Carpenter	1473	1905	2208	2826	3192
Retail Supervisor	1392	1791	2157	2868	2862
Retail Manager (General)	2061	2511	2745	3519	1908
Cafe or Restaurant Manager	1914	2193	2355	2664	1722
Cook	477	600	804	1221	1341
Aged or Disabled Carer	933	1080	1017	1341	1071
Truck Driver (General)	636	786	786	945	1068
Technicians and Trades Workers	297	627	702	1341	1011
Dairy Cattle Farmer	2313	2481	954	1113	924
Registered Nurse (Aged Care)	489	519	630	861	903
Scaffolder	294	483	555	813	870
Metal Fabricator	264	375	450	774	864
Telecommunications Technician	144	249	582	984	795
Software Engineer	693	735	813	852	744
Commercial Housekeeper	273	408	543	738	711
Deck Hand	1026	903	741	840	711
Motor Mechanic (General)	375	432	492	618	675
Electrician (General)	309	432	477	504	672

자료 : 뉴질랜드 MBIE, 'Migration Data Explorer'



국적별(Nationality)로는 2018/2019 회계연도에 인도가 45,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23,892건), 영국(23,508건), 필리핀(22,9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간 교류 차원에서 발급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하면 인도,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인력 수급이 여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6,528건으로 9위를 차지하고 있어 뉴질랜드 진출이 활발한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18/2019 회계연도 뉴질랜드 국적별 비자 승인 현황(단위: 명)

	Job Search	Relation -ship	Skilled Work	Work to Residence	Working Holiday	기타	총합계
인도	11103	10446	10062	1245	-	12582	45438
중국	6822	5502	4212	594	1107	5655	23892
영국	63	2616	4674	1356	12774	2025	23508
필리핀	1584	4698	11085	1983	90	3474	22914
독일	30	519	576	120	11892	969	14106
프랑스	45	483	834	141	9603	951	12057
미국	120	1398	2073	294	5085	1704	10674
남아프리카 공화국	39	3171	2526	1755	-	963	8454
대한민국	651	996	870	153	2895	963	6528
피지	192	1926	2298	489	-	1548	6453

자료 : 뉴질랜드 MBIE, 'Migration Data Explor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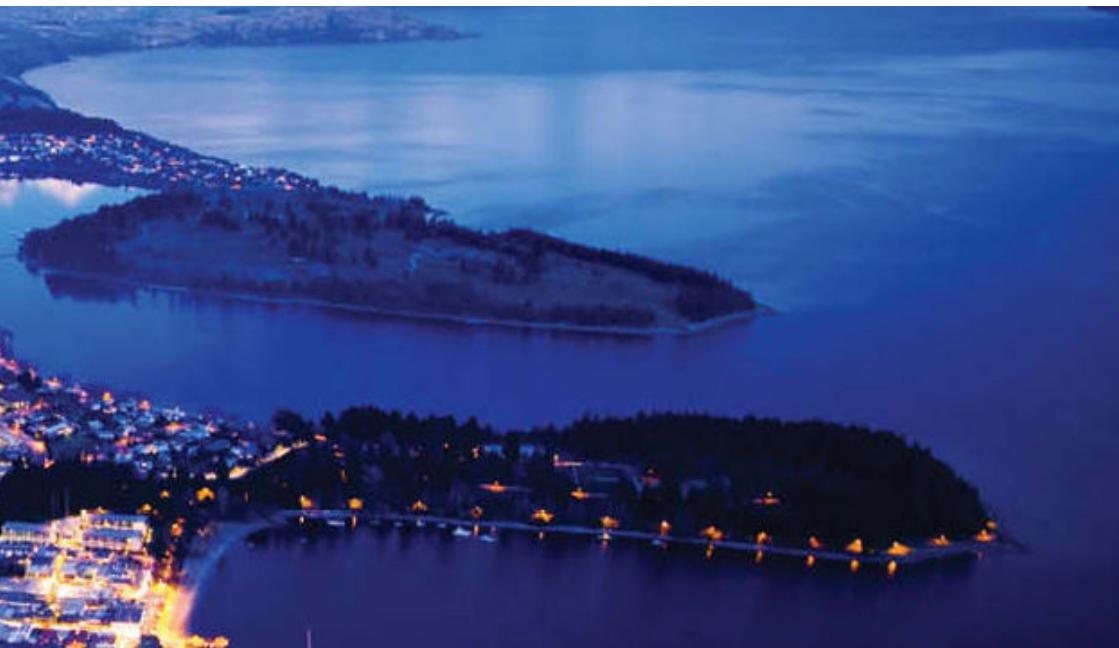
한국인의 뉴질랜드 워크비자 발급을 통한 취업 현황도 뉴질랜드 전체 워크비자 발급 현황과 큰 차이가 없다. 통계에 의하면 직업별로 쉐프와 요리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카페 및 식당 매니저, 소매점 매니저, 미용사, 소매점 슈퍼바이저 등이 상위 10개 직업에 포함되어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외에는 주로 엔지니어에 대한 워크비자 승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뉴질랜드의 직업별 한국인 워크비자 승인 현황(각 회계연도 기준, 단위: 명)

구분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Chef	423	510	483	465	381
Cook	18	30	36	60	66
Cafe or Restaurant Manager	72	42	66	60	54
Student	3	3	69	51	39
Hairdresser	42	45	42	48	39
Retail Manager (General)	57	66	48	51	30
Mechanical Engineer	30	48	48	45	33
Retail Supervisor	21	12	18	27	27
Ship's Engineer	48	42	30	33	21
Engineering Professionals	0	3	12	18	30

주) 관광가이드(tour guide)와 종교인(Minister of Religion)의 경우 최근 2년 간 승인 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상위 10개 직업에서 제외함.

자료 : 뉴질랜드 MBIE, 'Migration Data Explorer'



03.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현황(취업통계자료)

월드잡플러스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해외취업은 2013년 1,607명에서 2018년 5,783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일선사업과 연수사업을 통해 뉴질랜드에 취업한 사례가 2016년 29건에서 2018년 3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전체 해외취업자 수에 비해 뉴질랜드 취업자 수의 비중이 0.58%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3년 간 뉴질랜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수가 1,249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국가이다.

■ 최근 3년 간 뉴질랜드 및 주요국가 취업현황(단위: 명)

구 분	계	뉴질랜드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중동	기타
2016년	4,811	29	1,103	1,031	642	353	218	415	1,110
2017년	5,118	27	1,427	1,079	505	385	268	124	1,303
2018년	5,783	35	1,828	1,380	405	397	198	153	1,387
계	15,712	91 (0.58%)	4,358	3,490	1,552	1,135	684	692	3,710

자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통계로 살펴본 뉴질랜드 취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업체유형별로는 한인기업(53%), 외국기업(37%), 해외진출 한국기업(7%)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부터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직종별로는 앞서 살펴본 뉴질랜드의 한국인에 대한 직업별 워크비자 승인 현황과 유사하게 사무 및 서비스 분야가 취업자의 77%로 나타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최근 3년 간 뉴질랜드 취업현황(단위: 명)

구분	전체	외국기업	한인기업	현지 진출 한국기업	기 타
2016년	29	16	12	-	1
2017년	27	3	24	-	-
2018년	35	15	13	6	1
계	91	34	49	6	2

자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 최근 3년 간 직종별 뉴질랜드 취업현황(단위: 명)

구분	계	사무/서비스	의료	IT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설/토목	기타
2016년	29	19	1	0	0	0	1	8
2017년	27	23	1	1	1	0		1
2018년	35	28	1	2	2	0	2	0
계	91	70	3	3	3	0	3	9

자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한편, 2018년에 뉴질랜드에 취업한 한국인의 평균 계약연봉액은 31.6백만원 가량이고, 구간별로는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구간대가 65%로 가장 많으며 3,500만원 이상인 취업자도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간 뉴질랜드 취업자 연봉 수준 현황(단위: 명)

구분	평균연봉	1,5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3500만원 이상	기타
2016년	3,022만원	-	22	5	2
2017년	3,174만원	2	16	9	-
2018년	3,163만원	3	21	11	-

자료: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04. 뉴질랜드 부족직업군(Essential Skills in Demand, ESID)

① 부족직업군 개요

부족직업군은 뉴질랜드 여러 직업 중에서 부족한 직업군, 즉 고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직종을 의미하며, 뉴질랜드의 경제 구조 또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직업군 또한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부족직업군을 선정하며, 특히 뉴질랜드처럼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부족직업

군 리스트이다. 부족직업군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고 뉴질랜드인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토의를 거쳐 선정이 되며, 2019년 5월에 뉴질랜드 이민성은 부족직업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하였다.

부족직업군은 지역의 구분과 이민 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장기기술부족직업군(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LTSSL)과 지역기술부족직업군(Regional Skill Shortage List, RSSL), 건설및인프라부족직업군(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Skill Shortage List, CISSL)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2019년 5월의 주요 개편 내용은 LTSSL에 포함되는 직업 조정, 기존 단기기술부족직업군(Immediate Skill Shortage List)을 RSSL로 대체, 캔터베리부족직업군을 변경한 CISSL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❶ 부족직업군의 적용

뉴질랜드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우선 뉴질랜드 자국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증빙(labour market test)이 필요한데, 해당 직무나 직업이 부족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인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것이므로 이러한 증빙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고용 시 부족직업군에 매칭되는 자를 채용 할 유인이 있으며, 취업자의 입장에서는 동 리스트에 속하는 것이 취업에 보다 유리하게 된다. 다만 취업자 본인의 직업이 부족직업군에 속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족직업군 리스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매칭되어야 한다.

❷ 장기기술부족직업군(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LTSSL)

LTSSL은 전세계적으로나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현재 부족하거나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숙련 노동자(highly skilled workers)에 대한 직업군을 의미한다. 취업자의 직업이 LTSSL에 속하는 직업을 갖는다면 취업후이민(Work to Residence) 형태의 취업비자인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경우 2년 동안 워크비자가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영주권 승인률이 90%에 육박한다.

☰ 뉴질랜드 장기기술부족직업군 목록(2019년 5월 27일 발효)

직업군	직업명
건설 (Construnton)	건설 프로젝트 매니저(133111), 프로젝트 빌더(133112), 수량조사자(233213), 조사관(232212)
엔지니어 (Engineering)	화학 엔지니어(233111), 재료 엔지니어(233112), 토목 엔지니어(233211), 지질 엔지니어(233212), 구조 엔지니어(233214), 전기 엔지니어(233311), 전자 엔지니어(233411), 산업 엔지니어(233511), 기계 엔지니어(233512), 생산/플랜트 엔지니어(233513), 환경 엔지니어(233915), 엔지니어링 전문가(233999), 토목 공학 기술자(312212), 전기 공학 기술자 (312312), 전자 공학 기술자(312412), 통신 엔지니어(263311), 통신 네트워크 엔지니어(263312)
재무/비즈니스 (Finance/Business)	조달담당자(133612)
보건 및 사회서비스 (Health and Social Services)	임상심리학자(272311), 방사선사(253917), 일반 실무자(253111), 의료 방사선 치료사(251212), 의료 실험실 과학자(234611), 산부인과 전문의(253913), 의학 물리학자(234914), 물리치료사(252511), 정신과 전문의(253411), 공인 노인 간호사(254412) 소리전문가(251214), 통증의학 전문의(253399), 일반 외과의사(253511), 수의사(234711)
ICT, 전자통신 (IC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필름 애니메이터(261211), ICT 프로젝트 매니저 (135112), 조직 및 방법 분석가(224712), 사업분석가(261111), 시스템 분석가(261112), 멀티미디어 전문가(261211), 웹 개발자(261211), 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261311) 개발자 프로그래머(261312), 소프트웨어 엔지니어(261313), 소프트웨어 테스터(261314), 소프트웨어 및 앱 프로그래머(261399), 데이터베이스관리자(262111), ICT 보안 전문가(262112), 시스템관리자(262113), 네트워크/시스템 엔지니어(263111), 네트워크 관리자(263112), ICT 품질보증 엔지니어(263211), ICT 지원 엔지니어(263212), ICT 시스템 테스트 엔지니어(263213), ICT 지원 및 테스트 엔지니어(263299) 통신 엔지니어 (263311), 통신 네트워크 엔지니어(263312), ICT 고객지원 담당자(313112)
접객 및 관광서비스 (Recreation, Hospitality and Tourism)	쉐프(351311)
과학 (Science)	기타공간과학자(232214), 환경조사 과학자(234313), 식품기술자(234212)
무역 (Trades)	자동차 전기기사(321111), 디젤 기계 정비공(321212), 일반 전기기사(341111), 전기배선정비공(342211)

자료 : 뉴질랜드 이민성

❶ 지역기술부족직업군(Regional Skill Shortage List, RSSL)

기준에는 단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직업군에 대해 빠르게 인력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기술부족직업군(Immediate Skill Shortage List)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부족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RSSL로 대체하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RSSL과 CISSL은 기준 6개 지역 모델에서 확장된 15개 지역 모델을 통해 뉴질랜드 전역의 기술 부족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평가될 예정이다. 취업자의 직업이 단기부족 직업군에 매칭된다면 Essential Skills work visa로 연결될 수 있다. 15개 지역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역기술부족직업군 목록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페이지(<https://skillshortages.immigration.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 6개 지역 모델	변경 적용되는 15개 지역 모델
Auckland / Upper North	Northland, Auckland
Canterbury / Upper South Island	Canterbury, Nelson-Tasman, Marlborough, West Coast
Otago / Southland	Otago, Southland
Wellington	Wellington
Waikato / BoP	Bay of Plenty, Waikato, Gisborne
Central North Island	Taranaki, Whanganui-Manawatu, Hawke's Bay

❷ 건설및인프라부족직업군(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Skill Shortage List, CISSL)

뉴질랜드 이민성은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건설 및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와 관련된 직업군 종사자들의 단기 취업비자 취득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CISSL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CISSL은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만료되는 캠터베리부족직업군(Canterbury Skill Shortage List)을 대체하여 최근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특히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건설업에 대해 기존 캠터베리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적용 될 수 있는 부족직업군으로 재편한 것이다. 구체적인 건설및인프라부족직업군 목록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페이지(<https://skillshortages.immigration.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취업 유망직종 도출

뉴질랜드 취업시장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IT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성에 필요한 직업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이 취업할 때 비즈니스, 요리, 호스피탈리티 분야가 압도적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한국인들이 선택하는 직업의 분야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점도 특징이어서 취업 유망 직종을 딱 꼽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워크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경로에 따라 유망 직종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 통계를 통해 유추해 볼 때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으로써 취업하기 유리한 직업분야로 대표적인 것은 비즈니스, IT, 리테일, 호스피탈리티 분야 등이다. 최근에는 IT와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IT는 뉴질랜드에서 장기기술부족직군에 속하는데다 고연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즈니스 분야는 뉴질랜드 기술이민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직업분야로 지속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직군은 기본적인 경력사항이 필수적 이기 때문에 영어능력은 물론이고 뉴질랜드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건들을 갖추거나 관련 경력을 충실히 쌓아야하므로 뉴질랜드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 청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한국인의 취업 현황과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1. 호스피탈리티, 2. IT, 3. 경영 관련 사무직의 세 직업군을 취업 유망 직종으로 선정하여 소개한다.

▣ 참고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간 FTA에 의하면 양국 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10개 직종(한의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 관광 가이드, 영상 애니메이터, 생의학 기술자, 산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한국인에 대해 최대 3년 간 유효한 뉴질랜드 워크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 하지만 2019년 말까지 동 제도를 통해 워크비자를 발급받은 사례가 2건에 불과해 취업유망직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02 직종별 채용 트렌드 및 취업역량

01. 호스피탈리티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에 대한 고용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접객업이라고도 번역되는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산업이다. 호스피탈리티에는 서비스 업종 중 고객서비스 (customer service), 식음료판매(working with food and drink), 숙박업(providing accommodation) 크게 세 개의 직업군이 속한다. 뉴질랜드는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일자리가 많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호스피탈리티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구인 수요가 많다. 뉴질랜드인의 전로 및 경력관리를 돋기 위한 정부기관인 Careers New Zealand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숙련된 쉐프가 부족하여 뉴질랜드 이민성의 장기기술부족직군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며, 많은 레스토랑과 숙박업체가 매니저를 뽑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앞서 제시된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 통계나 워크비자 승인 통계를 살펴보면 Chef, Cook, Cafe or Restaurant Manager가 상위 1,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뉴질랜드의 호스피탈리티 분야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주도 오히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종업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Careers New Zealand에 따르면 호스피탈리티에서는 Chef, Kitchenhand와 같은 주방에서 일하는 직업군과 Cafe or Restaurant Manager를 비롯하여 Hotel/Motel Manager, F&B Attendant, Bartender 등의 직업이 유망군에 포함된다. 참고로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았던 Cook(요리사)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외국인 Cook에 대한 워크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고 있어 취업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숙련된 Cook의 경우에는 여전히 취업 기회가 많아 취업 유망 직종에 포함될 수 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호스피탈리티 분야는 주류 판매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력이나 전공, 자격증, 나이 등에 대한 제한은 없는 편이어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호스피탈리티 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므로 다른 나라에서 관련 종사 경험이 있다면 스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하다. 아마도 호스피탈리티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언어와 적성일 것이다. 동 분야는 대부분 손님과 면대면으로 의사소통해야 하



고 다양한 요구에 응대하여야 하므로 영어 능력은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직업적으로 항상 예의 바르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적성에도 맞아야 한다. 물론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나 주방 보조의 경우에는 쉐프의 업무지시를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능력이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쉐프로 진급하게 되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하고 때에 따라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시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좋다.

■ 호스피탈리티 구인광고 예시(1)

업체명	소재지	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PARK HYATT AUCKLAND	Auckland	모집분야	조리사(Demi Chef)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주 40시간)
		모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 및 음식의 조리- 항상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 다른 부서 직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 재료 재고의 관리
		자격요건	학력/전공 전문대학 졸업
			경력 무관
			언어능력 영어(상)
			자격면허 없음

■ 호스피탈리티 구인광고 예시(2)

업체명	소재지	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LK TAO Ltd	Auckland	모집분야	음식서비스 종사원(Restaurant Manager)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모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스토랑의 모든 Customer service- 식당의 매뉴얼관리, 직원관리, 로스터링, 매출비교분석, 상권 분석, 인건비분석, 기타비용 분석- 공급업체 관리 등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기타 주변 경쟁사의 가격 분석
		자격요건	학력/전공 전문대학 졸업
			경력 1년 이상, 2년 이하
			언어능력 영어(상)
			자격면허 없음

☰ 호스피탈리티 구인광고 예시(3)

업체명		소재지			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Pullman hotel NZ	Auckland	모집분야	모집인원	근무형태	호텔서비스원(Receptionist) 1명 정규직(주 40시간)		
		모집분야			- In charge of checking guests in / out - answer any queries from our guests		
		자격요건	학력/전공	경력	해당없음 1년 이상 ~ 2년 이하		
			언어능력		영어(최상)		
			자격면허		없음		

02. IT

뉴질랜드는 혁신 및 창조경제 관련 부서인 Callaghan Innovation을 통한 ICT 분야 집중 지원 등 정부 주도로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IT 분야 육성을 장려하고 있어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른 고용성장을 보이는 분야로 IT 분야를 꼽을 수 있으며, 동 분야는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가 많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 IT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도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IT 분야는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기술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른 나라의 숙련된 IT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두 번째 취업 유망 분야로 IT를 선정하였다.

Careers New Zealand에 따르면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r, Software Developer, Systems Administrator, Data Analyst, Security Analyst, Network Administrator 등의 직업이 IT 분야에서 취업 기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즘 IT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구인난을 겪는 분야이지만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반해,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취업을 위해서 업무 경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철저한 능력제이기 때문에 업무 경력과 어떠한 스킬을 갖고 있는지가 취업의 결정적 요인이 된

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뉴질랜드의 경우 C++과 Java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이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봉도 낮고 간단한 일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인이 발휘하는 능력만큼 직위와 연봉이 금세 오르기 때문에 경력을 잘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IT 기업 특성상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오늘의 할 일을 설정하는 데서 일과가 시작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업무 분량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영어 능력이 요구된다. 한국 청년들이 빈번하게 문을 두드리는 IT 업종은 인력 수요가 높아 고용 부족 직군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뉴질랜드 기업 문화 특성상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지의 채용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한국인 취업 준비생들은 본인의 스펙 및 스킬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기술이 중요시되는 IT 직군이라 하더라도 직장 동료 및 상사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IT 인력은 경력자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졸 신입자가 취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지원 시 첫 직장을 찾고 있음을 솔직하게 밝히고, 개인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취미생활로 하는 IT 관련 일들을 평상시에 기록해 놓았다가 보여줌으로써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 IT 부문 구인광고 예시

업체명	소재지	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Unicom	Auckland	모집분야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Network Engineer)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모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de technical guidance to both external and internal clients - Build and implement changes to the core network infrastructure - Design and build LAN/WAN, Switching/Routing, Firewall
		자격요건	학력/전공
			해당없음
			경력
			무관
		언어능력	영어(중상)
		자격면허	관련 경험자 우대



≡ IT 부문 구인광고 예시

업체명		소재지		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Dimension Software	Auckland	모집분야	모집분야	소프트웨어엔지니어(Software Engineer)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 PI 설치, 구성 및 업그레이드 - SCADA 및 제어 시스템 통합 - 자산 프레임 워크 및 PI ACE - 데이터베이스 개발 - SharePoint와 같은 웹 기반 클라이언트 - SSRS 및 Crystal과 같은 보고 - ERP / CMMS 통합 	
			자격요건	학력/전공	대학 졸업
				경력	5년 이상 ~ 10년 이하
				언어능력	영어(상)
				자격면허	없음



03. 경영 관련 사무직

일반적으로 경영 관련 사무직은 특별한 기술이나 특화된 능력이 적용되지 않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워크비자 발급이 까다로운데다 뉴질랜드 법규에 익숙해야 하고 뉴질랜드에서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과의 경쟁이 큰 분야여서 현지기업에 취업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의 수요가 있는 한상기업이나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기업 위주로 한국인에 대한 구인 수요가 있고, 인사, 회계, 마케팅 및 세일즈 등 경영 관련 사무직은 기업 활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인 수요가 많은 분야이므로 영어 능력과 뉴질랜드 기업 환경에 익숙하다면 취업 기회가 많은 분야이다.

우선, 인사분야에서 유망한 일자리는 HR Advisor, HR Administrator & Recruitment, HR Payroll Administrator 등을 들 수 있는데, 기업의 핵심인재를 유지·관리하고 효과적인 보상과 급여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된 업무는 인사서류 유지 관리, 직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급여 지급 및 관리, HR 문서 준비(예: 계약서 및 고용 안내서), HR 관련 매뉴얼 업데이트 및 수정, 채용 사무 및 조정 등이다.

회계분야는 Accountant, Accounting Assistant나 Accounts Payable, Account Manager 등과 같은 회계 및 경리담당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다. 주로 월별 회계장부 관리 및 보고서 작성,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및 관련 회계 조정, HR 부서와 연계하여 급여 지출 관리, compliance report 작성, 송장의 수불 등 의 업무를 담당한다.

마케팅 및 영업은 업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Sales Manager, Sales and Marketing Manager, Sales and Marketing Coordinator,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등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파트너십 구축, 담당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목표 유지 및 거래처 포트폴리오 관리지원, 판매 확대를 위한 거래처와의 협상 및 협력 등이 주요 업무이다. 최근 마케팅 및 세일즈 활동이 소셜네트워크 및 인터넷과 연계됨에 따라 Social Media Manager, Digital Marketing Manager 역시 유망한 직업군으로 평가된다.

☰ 경영 관련 사무직 구인광고 예시(1)

업체명	소재지	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SKY Enterprises Limited	Christchurch	모집분야	인사 및 노무 사무원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주 40시간)
		모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구인 관리 - 광고관리 - 기타 인사서류 관리
			학력/전공 해당없음
			경력 3년 이상
			언어능력 필수 : 영어(상)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경영 관련 사무직 구인광고 예시(2)

업체명	소재지	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IE Money	Auckland	모집분야	회계 사무원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주 40시간)
		모집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cessing all journal entries - Balance sheet reconciliations - Daily cashflow reporting - Fixed asset register maintenance/Stock reporting - Process commissions/payroll - PAYE, GST & FBT returns - Provide support to the wider business in relation to financial decision making
			학력/전공 대학(교)졸업
			경력 무관
			언어능력 필수 : 영어(상)
		자격요건	자격면허 없음

☰ 경영 관련 사무직 구인광고 예시(3)

업체명		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Asian Savour World PTY	Auckland	모집분야	영업관리 사무원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정규직(주 40시간)
		모집분야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제품 홍보 및 마케팅 - 대형 마트 거래처 관리 및 경쟁사 판매가 조사 등 공격적으로 한국상품의 현지화 지원
			학력/전공 대학(교)졸업
			경력 무관, 경력자 우대
			언어능력 영어(상)
			자격면허 없음

☰ 경영 관련 사무직 구인광고 예시(4)

업체명		채용개요 및 자격요건	
Cornell Education Group	Auckland	모집분야	마케팅 사무원(Marketing Assistant)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주 40시간)
		모집분야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actively add value by identifying marketing and sales opportunities and areas for the improvement of marketing process including the recruitment of agents and students from overseas. - The maintenance of accurate and secure records on students and their results, liaison with, and provision of relevant data to, external bodies including NZQA, INZ and Insurance. - Carry out operational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Group's Quality Assurance System, Policies and Procedures.
			학력/전공 대학(교)졸업
			경력 2년 이상 ~ 5년 이하
			언어능력 필수 : 영어(최상)
			자격면허 없음





03 산업 및 직무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01. 개요

☰ 유망 직종별 필요 역량 요약

구분	자격 요건	언어 능력
1. 호스피탈리티	- 학력, 자격증 무관 - 경력자 우대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지만 주방업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중급 수준이면 취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IT	- 경력 중요 - 공고된 직무기술과 보유 스킬 일치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 필수
3. 경영 관련 사무직	- 대졸자 선호 - 자격증 우대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 필수

뉴질랜드의 취업절차도 해외취업의 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몇 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우선, 뉴질랜드의 경우 자국민 우선 채용 원칙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labour market test를 통해 자국민을 채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외국인 채용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할 때 더 많은 수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이러한 수고를 감수하고 본인을 고용하게끔 내국인에 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잘 부각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 뉴질랜드는 인종이나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적기 때문에 적어도 내국인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CV와 Cover letter 작성 시 본인이 내국인에 비해 회사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본인이 특별한 기술을 갖지 못하더라도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이중언어구사자(bilingual)라는 점도 강점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인이 갖는 열정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도 뉴질랜드 고용주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뉴질랜드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체 기업 중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에 직원 고용 시 한국의 공채와 같은 형태보다는 상시채용의 방식으로 1~2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 때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거나, 취업 알선 전문회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지인을 통한 추천이나 대학 추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인 구직자는 직접 발품을 팔아 기업의 구인 공고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추천인(referee)을 잘 확보해야 하며, LinkedIn을 비롯한 자신의 SNS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면접에서는 ‘Manageability’를 주요 요소로 본다. ‘Manageability’라는 것은 본인의 나라에서 ‘시니어’였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낮은 단계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이런 환경을 잘 견딜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현지 기업들의 애로 사항 중 하나는 구직자가 채용 과정 중에는 상당한 포부와 의지를 보여주지만 막상 채용 이후에는 비자 발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치보다 낮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비자 발급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해, 업무 분위기 저해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 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로 작용해 현지 취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구직자는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고 채용 이후에는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업무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TIP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의 경력보다는 현지 경력을 우선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므로 현지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지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가보다 그 경력을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연계해 경험을 쌓았는지가 뉴질랜드 현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지 회사의 파트타임 또는 무보수 인턴의 경험이 한국에서의 오랜 경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해외 인력 유입이 많아 정착률이 높지 않은 편이므로 첫발을 딛는 해외 취업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뉴질랜드 사회에 동화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상 과거 경력 또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지원자의 행실, 태도 등을 확인하는 것 이 일반화돼 있으므로 인턴, 파트타임 업무 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회사에 공식이 생기는 경우 대외 공고 전 내부 충원 또는 지인 추천 등을 통해 섭외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해 원만한 대인관계 및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현지에서의 인턴, 파트타임 경력은 해당 회사의 채용 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제의를 받을 좋은 기회이므로 무작정 큰 취업 목표를 세우기보다 작은 목표를 통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단계별 취업 전략이 필요하다.

체크포인트

한국인 구직자가 뉴질랜드에 취업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구직활동 및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워크비자의 발급 여부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워크비자인 필수기술취업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를 비롯한 대부분의 워크비자는 고용주로부터의 취업제의(job offer)를 필요로 한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구직활동을 통해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아 워크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취업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이용해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경험을 쌓으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가거나,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한 후 잡서치비자를 취득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취업경로라고 할 수 있다.



02. 취업절차

1.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박람회 참여, 구인구직사이트 검색, 관심 기업의 웹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탐색하여 원하는 유형의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 현지 구인구직사이트 : SEEK, Trade Me 등
2. CV 작성 및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CV는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므로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표현- 구인구직사이트나 회사에 직접 CV를 발송하여 구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
3. 온라인 프로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들어 LinkedIn 같은 전문 네트워킹 사이트가 고용주들에게 인기- LinkedIn 및 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여 공개 프로필을 강화하고 기술을 강조
4. 소셜미디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뷰 단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원자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므로, 지원 전에 온라인 상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예를 들어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해 본 후 고용주가 보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고, Twitter 또는 LinkedIn 프로필을 작성하여 올림
5.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에 지원 시 CV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커버레터를 성실히 제작하여 제출- 또한 별도의 지원신청서가 있다면 작성하여 제출
6. 인터뷰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뷰는 고용주가 구직자를 직접 만나 일을 맡길 만한 인물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고, 구직자의 구직 의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인터뷰 준비는 매우 중요- 면접 시 구직자의 스킬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실력을 잘 어필해야 함- 또한 스킬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조직에 잘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면접의 주요 목적이므로 인성의 측면에서도 답변 준비 필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 인력, 업무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 예상 질문을 만들어 충분히 반복하여 예행 연습
7. 테스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뷰 시 구직자의 기술(예: 글쓰기,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 능력 등)이나 성격 등에 대한 테스트가 시행될 수도 있음- 모의시험을 연습하여 준비. 모의시험은 New Cops New Zealand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8.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인상은 중요하므로, 복장은 단순화되며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을 착용하고, 면접에 늦지 않도록 주의- 인터뷰 질문에 대답할 때 자신감을 갖고 분명하게 말하기- 특히 자신의 예전 경험이나 경력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
9. 추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들은 채용 전에 지원자의 업무 경력과 학력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조직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통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추천인(referees)을 요청함- 지원자는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이며 접촉하기 쉬운 추천인을 선택하여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고, 추천인은 지원자의 경험이나 수행 능력 등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함
10. 취업제의 및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에 합격하면 통상 합격 전화를 주거나 이메일로 job offer letter(잡오퍼 레터) 및 contract(계약서)를 발송- 취업제의(job offer)를 받으면 곧 바로 수락하기보다는 그 일이 본인에게 적합한가에 대해 한번 더 고려- 취업제의를 수락하기 전에 고용 계약을 검토하여 이해했는지 확인하거나, 취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급여나 휴가 또는 수습기간 등 계약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협상을 제의해 볼 수도 있음- 비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 잡오퍼 레터 및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이민성에 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비자가 승인되면 업무 시작

03. 취업절차 핵심 포인트

❶ 영어능력은 공통 스펙

해외취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이 있다면 바로 언어능력이며, 특히 뉴질랜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영어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한국 청년들이 열정과 스킬 측면에서 현지인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취업제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영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업무에 따라 영어 능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 조리를 담당한다면 상사가 시키는 일을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훌륭한 조리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도 진급을 통해 승진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영어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능력은 높을수록 좋다.

❷ 스펙과 스킬을 구분하라

뉴질랜드에서 구직활동의 시작은 자신이 보유한 스킬을 파악하여 어떤 직업에 지원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서 출발하는데, 스펙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펙이라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퀄리피케이션(Qual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이 퀄리피케이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할 정도로 실제 스킬을 중요시한다. 스킬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를 뜻하며, 이는 ‘나는 OO 박사 학위가 있다’라는 스펙보다는 ‘나는 OO 개발을 A부터 Z까지 할 수 있다’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뉴질랜드 정부는 직업별 보수, 필요한 훈련, 직업의 수요 및 전망 등 뉴질랜드 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인 커리어(<https://www.careers.govt.nz>)를 운영하고 있다. 동 사이트에서는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돋기 위한 여러 툴(Tools)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Skill Matcher tool”은 자신이 파악한 스킬을 적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안내해 주므로 한번쯤 이용해 볼 만하다.

[TIP] 뉴질랜드 취업 시 자신의 스킬 파악하기

스킬(Skills)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업무환경에서 필요한 스킬은 크게 employability skills, transferable skills, specialist skills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의 스킬을 파악함으로써 구직자는 더 많은 직업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부족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통해 이를 보완할 것 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킬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employability skills : 고용주들이 일터에서 필수라고 인식하는 자질 및 태도

- Positive attitude(긍정적인 태도)
- Communication(원활한 의사소통)
- Teamwork(팀워크)
- Self-management(자기 관리)
- Willingness to learn(학습 의지)
- Thinking skills(사고력)
- Resilience(회복탄력성)

(2) transferable skills : 어떠한 상황이나 직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기술 능력

- (예) 고객 대응 능력
- (예) 수학적(사실과 수치에 기반하여 작업할 수 있는) 능력
- (예) 조리 있는 말하기와 커뮤니케이션
- (예) 정확성 및 섬세한 안목

(3) specialist skills : 특정한 직업이나 직업군과 관련된 기술

- (예) 언어적 유창함
- (예) 중장비 운전 면허
- (예)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❶ 온라인의 나를 관리하라

이제 미국에서는 링크드인(LinkedIn) 프로필이 없으면 구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뉴질랜드도 점점 그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뉴질랜드 채용관리자의 60% 가량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인터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지원자의 SNS도 확인하기 때문에 온라인의 자기자신을 서류상의 자기자신과 잘 매칭 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수요소이다.

❷ CV 및 Cover letter 작성하기

한국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일반적인데 반해 뉴질랜드에서는 CV(curriculum vita)와 Cover letter를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CV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킬, 학력, 자격증, 경력, 비자 종류(만료 기간) 등을 기재하는데, 이 때 중요한 점은 해당 공고에 기재된 job description(직무 기술)에 맞게 자신이 어떻게 능

력을 펼칠 수 있는지 기재하는 것이다. 경력의 경우 가장 최신 경력이 상단에 오도록 작성하고, 뉴질랜드는 학벌보다는 경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력자의 경우 본인의 경험이나 성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Cover letter는 약 1페이지 분량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며, 이러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 본 직무에 적합합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Cover letter는 지원에 대한 “성의와 관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제출 유무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CV와 함께 지원 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수많은 지원서를 빠르게 검토해야 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공고에 올렸던 직무기술과 매칭되어 있지 않는 커버레터를 즉시 삭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포지션별로 Cover letter를 모두 다르게 수정해서 보내야 한다.

참고로 뉴질랜드에서 통용되는 이력서의 양식은 뉴질랜드 정부가 운영하는 Careers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 곳에서는 특정 직군의 뉴질랜드 내 기대 연봉이나 수요 등도 소개하고 있다.

(링크: <https://www.careers.govt.nz/job-hunting/cvs-and-cover-letters/templates/>)

[TIP] CV 작성팁

참고로 오클랜드 무역관의 오프라인 멘토인 Jonathan Ward(Lead Designer of Action Step)가 작성한 CV 작성팁을 소개한다. 동 팀은 Software Engineer를 위한 CV 작성팁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직종에도 공히 적용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CV를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① Be correct

Everything listed in your CV must be correct. Never lie about experience or your level of skill. If this even convinces an employer to talk to you it will become obvious that your claims are false.

DO	DO NOT
List your experience in relevant technologies. Include how much experience you have in a real world setting using those technologies.	DO NOT list every tech keyword you can think of. (e.g PHP, C#, Oracle, Javascript, Java, Struts, Scala, C++, Python, HTML, XHTML etc.)
Mention your visa status. Employers really need to know	DO NOT make employers guess if you are a resident or not. If you are not. Make it clear what you want (e.g sponsorship etc.).
Include best contact details	DO NOT make contact details super large and bold. Employers only need this if they want to talk to you. Only make your name big and bold.

② Be precise

How much time have you spent working on the skills you are selling to the employer? How did you get those skills? How have you used those skills recently. This should all be easy to see in your CV.

DO	DO NOT
List projects you are proud of. Reference what skills you used from the above list in these projects. (e.g I was responsible for frontend architecture using React JS.)	DO NOT simply list places where you worked with no relevance to the job you are applying for. Employers need to see where you shined. This is hard to figure out from a table of data.
List employment history. But include responsibilities, skills required and soft skills applied (e.g team leader, collaboration)	DO NOT leave gaps in your employment history and leave employer wondering what you did for those periods.
Include a reason for looking for a new job in your introduction.	DO NOT leave it to reader to assume why you want a new job.
Include a start date in your introduction	
List education if it is relevant. If it is super important (e.g graduated not long ago) just list it along with employment history and call it EXPERIENCE	

③ Sell the truth

Your job is to put your experience, personality and ability in the best light possible. Your CV is a “pitch” for the employer to invest in you as a “product”. How do you sell an investment to a prospective investor? You show them what a great opportunity they have to make money from your product – i.e YOU.

DO	DO NOT
Be genuine and honest (e.g I know a little bit of Python)	DO NOT oversell yourself (e.g I am an expert in)
Make jokes	DO NOT make too many jokes
Make it clear what you are interested in and what areas you are actively researching right now.	DO NOT simply list some books you'd like to read in the future. What are you learning right now?
Show how you can manage your time and other people	DO NOT lie about your personality traits. If you are shy, that's ok.

④ Tell good story

Start by introducing yourself. Talk about what you've done recently. Talk about

what you're interested in. Show off your proudest achievements. Tell the reader where they can find more information (e.g. websites, references etc). Having your own website at your own custom domain is the single most impressive and productive thing you can do. Make sure it includes the same info as your CV with perhaps more explanations and code samples.

DO	DO NOT
Have your own website with a customised domain name (e.g. bobhoskins.com). Have an email address at that domain. (e.g. interview @bobhoskins.com)	DO NOT use a Facebook page or just a LinkedIn profile. But you can include these on your CV if they are relevant.
Give reasons why you are interested in some things and not others	DO NOT leave it to reader to assume why you studied one thing and not another.
Give some history about what you've done in the past in your home country	DO NOT assume the reader knows anything about Korea. Show you are proud of your country.
Include lots of links to content online. A GitHub (or equivalent) account is important. Employers like to see actual code.	DO NOT promise you can do something. You need to show it.
Have some social media presence with opinion and thoughts about your subjects of interest	DO NOT share ugly photos of you at a Christmas party somewhere

⑤ Keep it brief but pretty

Don't use 6 paragraphs when 2 will do. Don't use 5 pages when 2 will do. Most good CVs are simply a two-sided page of A4.

DO	DO NOT
Use a nice font. Not more than two.	DO NOT use a standard template in Word. Your CV will look like everyone else's.
Add colour and style to your CV. Make it easy to scan.	DO NOT make text too dense, too small, too faint, too tight, too condensed or too colourful.
Learn to use TABS in Word	DO NOT just tap space to move words to the right. It'll look terrible and be unmanageable.
Make it readable. Learn about leading and kerning.	DO NOT make things too crowded. Do not use ENTER (new line) when leading (line spacing) is what you want.
Aim for three pages max. Two pages is best.	DO NOT write too much "waffle"
Use a single column of text	DO NOT use two or three column layouts. It's too unreadable.





04 취업전략 및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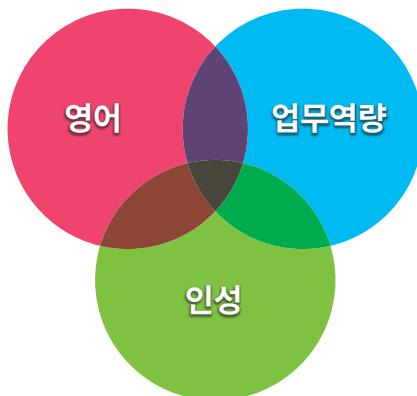
효과적인 취업전략을 위해서 취업준비는 지원자의 결심과 자기분석에서 시작한다. 자기분석이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적성, 전문분야의 능력, 흥미와 장래 꿈, 가치관 등을 스스로 되새겨보고 정리해보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장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과정이다. 아래 자기분석 항목과 점검내용을 토대로 질문에 답해보도록 한다.

☰ 자기분석항목

	장단점	호불호	인간관계	흥미/ 가치관
개인	자신의 장점은? 자신의 단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사교적인가? 내성적인가?	본인의 흥미와 관심?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	가족에게 공헌하는 것? 가족에게 부담인 것?	가족의 좋은 점? 가족생활의 싫은 점?	가족 내의 역할은? 가족 간 충돌경험은?	가족 관계에서 소중한 것은?
학교	전공과 전문분야는? 적성과 안 맞는 과목은?	좋아하는 선생님, 선배? 싫어하는 학우?	학교에서 인간관계는? 상대하기 어려운경험?	어떤 과목에서 흥미?
회사	능력을 발휘한 경험? 본인이 서투른 점?	직무경험(아르바이트) 에서 좋고 싫었던 경험?	직장 내 어려웠던 인간 관계?	흥미로웠던 일 경험?

자기분석표 기입 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업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점연구 대상 업계를 좁혀나간다. 자기 평가를 위해서 인사담당자들이 강조하는 능력밸런스를 중심으로 취업로드맵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 능력밸런스





▶ **영어**: 뉴질랜드는 영어가 상용어이고 업무도 당연히 영어로 수행해야 하므로 뉴질랜드 취업을 위해서 영어능력은 기본적인 취업조건이다. 직종별 또는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필요한 영어능력의 수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상급 정도의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된다.

☰ 영어 능력 구분 기준

최하 : 아주 간단한 일상 언어 정도만 구사 가능
하 : 익숙한 주제에 대해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중 : 업무와 관련된 제한적인 의사소통 가능
상 : 거의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의사소통 가능
최상 :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능

▶ **업무역량**: 뉴질랜드의 경우 직종에 따라 요구하는 역량 수준이 상이하지만, 워크비자 발급을 위한 필요 역량은 직종별로 비교적 명확하다. 일부 기술부족직군의 경우 관련 협회에 등록(registration)이 요구되지만, 일반적으로 자격증과 같은 스펙보다는 업무 경험이나 경력, 보유 기술 등 어떠한 스킬(skill)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다 중요시 된다.

☰ 전문능력 자기평가표 자기분석항목

	항 목	자기평가수준
1	관심업종에서의 인턴십 등의 경험이 있다.	1—네 2—아니오
2	나의 전공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특별한 과목을 제공한다.	1—네 2—아니오
3	관심업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1—네 2—아니오

▶ **인성**: 뉴질랜드의 경우 업무역량뿐만 아니라 인성을 중시하는데, 인성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조직에서 유기적으로 협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직업윤리, 열정 및 에너지, 팀워크, 긍정적인 태도 등을 중심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다.



05 주요 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01. 뉴질랜드 주요 로컬기업 리스트

회사명	종업원	업종	웹사이트
AIR NEW ZEALAND	11,793	AIRLINES	www.airnz.co.nz
SPARK NEWZEALAND	5,377	TELECOMMUNICATION SERVICES	www.spark.co.nz
FISHER & PAYKEL HEALTHCARE	4,305	HEALTH CARE EQUIPMENT	www.fphcare.com
SKY CITY ENTERTAINMENT	3,318	CASINOS & GAMING	www.skycity.co.nz
XERO	2,531	APPLICATION SOFTWARE	www.xero.com
SANFORD	1,705	PACKAGED FOODS & MEATS	www.sanford.co.nz
SUMMERSET GROUP HOLDINGS	1,438	HEALTH CARE FACILITIES	www.summerset.co.nz
GENESIS ENERGY	1,187	ELECTRIC UTILITIES	www.genesisenergy.co.nz
KATHMANDU HOLDINGS	1,144	SPECIALTY STORES	www.kathmandu.co.nz
MERIDIAN ENERGY	1,013	RENEWABLE ELECTRICITY	www.meridianenergy.co.nz
VECTOR	970	MULTI-UTILITIES	www.vector.co.nz
TRUSTPOWER	818	ELECTRIC UTILITIES	www.trustpower.co.nz
MERCURY NZ	775	ELECTRIC UTILITIES	www.mercury.co.nz
CBL CORP.	577	REINSURANCE	www.cblinsurance.com
SMITHS CITY GROUP	463	COMPUTER & ELECTRONICS RETAIL	www.smithscitygroup.co.nz
CAVALIER CORPORATION	462	HOME FURNISHINGS	www.cavcorp.co.nz
NEW ZEALAND REFINING	390	OIL & GAS REFINING & MARKETING	www.nzrc.co.nz
PORT OF TAURANGA	230	MARINE PORTS & SERVICES	www.port-tauranga.co.nz
NZX	214	FINANCIAL EXCHANGES & DATA	www.nzx.com
COLONIAL MOTOR COMPANY	191	AUTOMOTIVE RETAIL	www.colmotor.co.nz
SOUTH PORT NEW ZEALAND	100	MARINE PORTS & SERVICES	www.southport.co.nz
TOURISM HOLDINGS	88	TRUCKING	www.thlonline.com
PLEXURE GROUP	72	APPLICATION SOFTWARE	www.plexure.com
SEADRAGON	28	PACKAGED FOODS	www.seadragon.co.nz



02. 뉴질랜드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 리스트

기업명	진출형태	투자형태	모기업명	업종(대분류)
대한전선뉴질랜드	서비스법인	단독	대한전선	건설·공사업
마그마뉴질랜드	서비스법인	합자	마그마코리아	건설·공사업
현대제철	생산법인	단독	현대제철	광업·자원개발
국민은행오클랜드지점	지점	단독	KB국민은행	금융·보험업
DK코리아	서비스법인	단독	디케이코리아	농임어업
동원수산	생산법인	합자	동원수산	농임어업
선창산업	서비스법인	M&A	선창산업	농임어업
주암산업	생산법인	단독	주암산업	농임어업
지오엠	생산법인	단독	지오엠	농임어업
한솔뉴질랜드	서비스법인	단독	한솔홈데코	농임어업
LG전자 뉴질랜드지사	지점	단독	LG전자	도매·소매업
기아자동차뉴질랜드법인	판매법인	단독	기아자동차	도매·소매업
삼성전자 뉴질랜드법인	판매법인	단독	삼성전자	도매·소매업
현대자동차 태평양사무소	판매법인	단독	현대자동차	도매·소매업
(주) 코코스	지점	합작	코코스유학이민	서비스업
하나투어뉴질랜드	지점	합작	하나투어	서비스업
현대로템	지점	단독	현대로템	서비스업
뉴질랜드 해운	서비스법인	합작	뉴질랜드해운	운수업
대한항공 오클랜드지점	지점	단독	대한항공	운수업
오뚜기 뉴질랜드법인	생산법인	단독	오뚜기	제조업
오스템임플란트	판매법인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제조업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홈페이지

03. 뉴질랜드 한상기업(교민기업) 리스트

뉴질랜드 소재 한상기업(교민기업)은 한상넷(www.hansang.net)에서 홈페이지, 직원 수, 매출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파악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업종별 기업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건설업

연번	기업명	홈페이지	직원수(명)	연매출(달러)
1	Lucky Construction Limited	www.luckyconstruction-nz.com	5 ~ 50	백만 미만
2	TRAUM HAUS CO LTD	www.traumhaus.co.nz	5 ~ 50	백만 이상

▷ 교육서비스업

연번	기업명	홈페이지	직원수(명)	연매출(달러)
1	굿인포 헤딩스 그룹	www.findjob.co.nz	5 ~ 50	오십만 이하
2	노블레스 아카데미	www.noblesseacademy.com	5 ~ 50	십만불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연번	기업명	홈페이지	직원수(명)	연매출(달러)
1	(주)유비바이오	www.ubbio.com	5 ~ 50	백만 이상
2	Asian Sources International	jongga.co.nz	5 ~ 50	백만 이상
3	하이웰 헬스케어	www.hiwell.co.nz	5 ~ 50	백만 이상
4	(주)장수녹용	www.goodinfo.co.nz	5 ~ 50	오십만 이하
5	뉴코아그룹	www.edreamline.com	5 ~ 50	백만 이상
6	뉴질랜드목조주택건축학교	wccnz.com	5 ~ 50	오십만 이하
7	힐러 뉴질랜드	HEALERNZ.COM	5 ~ 50	오십만 이하
8	페이콤	www.pacomnz.com	5 ~ 50	백만 이상
9	캐대쉬 주식회사	www.tajo.com	5 ~ 50	백만 이상
10	내추럴헬스	nzhn.com	5 ~ 50	백만 이상
11	아이 뉴질랜드	ayenz.co.nz	50 ~ 100	백만 이상
12	엘카라(주)	www.elkara.co.nz	5 ~ 50	백만 이상

▷ 부동산업

연번	기업명	홈페이지	직원수(명)	연매출(달러)
1	Ginus	ginusgroup.com	5 ~ 50	백만 이상
2	하코트 부동산	www.hatcotts.com	100 ~ 200	백만 이상
3	리맥스	remax.co.nz	5 ~ 50	백만 이상

❶ 숙박 및 음식점업

연번	기업명	홈페이지	직원수(명)	연매출(달러)
1	GK Lincoln Road Limited	www.facebook.com/Gengis-Khan-Hender	5 ~ 50	백만 이상
2	타카푸나골프장	tgolf.com	5 ~ 50	백만 이상
3	프린스 코포레이션	kingseat.com	5 ~ 50	오십만 이하

❷ 제조업

연번	기업명	홈페이지	직원수(명)	연매출(달러)
1	제이피 에듀케이션	i-ekc.com	5 ~ 50	백만 미만
2	NZ Fish Processing	www.oceanwild.co.nz	5 ~ 50	백만 이상
3	굿인포 홀딩스	www.goodinfo.co.nz	5 ~ 50	만 이하
4	GMP PHARMACEUTICALS	www.gmp.net.nz	5 ~ 50	십만 이하
5	골든키위 올엔젯	www.allnz.com	5 ~ 50	백만 이상
6	내쇼날 디어혼(주)	www.nationaldeer.com	5 ~ 50	백만 이상
7	바이탈 뉴트리션	www.vitalnutrition.co.nz	5 ~ 50	백만 이상

❸ 기타

연번	기업명	홈페이지	직원수(명)	연매출(달러)
1	뉴질랜드 호주투어	www.nztour.biz	5 ~ 50	백만 이상
2	upcycle	upcycle.co.nz	5 ~ 50	백만 이상
3	WIDE PHOTOGRAPHY	www.widephoto.co.nz	5 ~ 50	백만 이상
4	디피 골프센터	www.dpgolf.co.nz	5 ~ 50	백만 미만
5	The New Korea Herald	www.koreaherald.co.nz	5 ~ 50	오십만 이하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03

스스로 취업하기

04

해외취업 업무지원 기관 현황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공공기관, 해외취업 박람회(설명회), 기타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1. 월드잡플러스(웹/앱)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는 청년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별로 분산된 해외진출정보(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등)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일자리(구인/구직)정보, 해외취업 후 경력관리, 국내 복귀 후 재취업 등 해외진출 전(全)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진로적성 진단과 연계한 커리어플래너 제공
- ☑ 주요 국가별 기본 정보 및 유망 직종 취업전략 제공
- ☑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한 해외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 영문/일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무료 첨삭 서비스 제공
- ☑ 해외취업, 해외연수(K-Move스쿨),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모집 공고 제공
- ☑ 청년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취업설명회(박람회)참여, 해외취업 아카데미 신청 정보
- ☑ 취업사실 확인 및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원
- ☑ 해외진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국내 재취업 정보 제공
- ☑ 부당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



▶ 일자리 검색하기

▣ 월드잡플러스 해외일자리 검색

WORLDJOB+



▣ 월드잡플러스 해외일자리 검색

해외일자리검색
현재 채용공고 10 15 건 | 뉴질랜드 채용 ... 7 건

키워드입력

검색

근무지역

희망직종

해외우수일자리 베스트20 (2019년 11월 05주차)

- [경력] [KOTRA] 기아자동차 맥시코법인
[KOTRA][멕시코시티채용상담회] 멕시코, 경기자...
- [무관] [KOTRA] 신일멕시카나
[KOTRA][멕시코시티채용상담회] 멕시코, 신일...

K-Move 스쿨 연수과정

- 수원상공회의소
Linux & Java 개발자 양성과정
- JSL 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4...

✓ 체크포인트

- (1) 앱스토어에서 월드잡플러스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친구추가(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 링크드인(LinkedIn)에서 worldjob plus를 검색하는 경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2)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또는 이력서 작성 시 희망 국가와 직종을 체크해두면 나에게 맞는 해외취업 정보를 [마이페이지] > [빅데이터 기반 추천정보]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력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구인공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지원도 가능하다.
- (3) 해외일자리 BEST 20은 평균연봉 2,400만 원 이상, 주거지원 등 근무 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골라 월 2회 선정하고 있으니, 일자리 검색 시 BEST20 스티커를 확인하자!

101

❶ 해외진출 정보 찾기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비자정보, 진출현황, 취업 성공수기 등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2]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가이드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WorldJob+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Brands', 'Search', 'Language', 'Logout', and 'Help'.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veral tabs: 'Business Information', 'Job Search', 'Overseas Employment Guide', 'Overseas Employment Consulting', 'Public News', and 'My Page'. The 'Overseas Employment Guide' tab is currently selected. On the left side, there is a sidebar with sections for 'Overseas Employment Guide', 'Careers', 'Overseas Employment Consulting', and 'Public News'.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various articles and resources related to overseas employment, such as 'Overseas Employment Test', 'Overseas Employment Consulting', and 'Overseas Employment Success Stories'. To the right, there is a sidebar titl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containing links to various topics like 'Overseas Employment Success Stories', 'Overseas Employment Guide', 'Careers', 'NCS', 'Overseas Employment Consulting', and 'Overseas Employment Success Stories' again.

체크포인트

- (1) 어학능력테스트를 통한 외국어 수준 확인, 온라인 강의, 해외취업 아카데미 등 알짜정보가 곳곳에 있으니 찾아서 이용하자!
- (2)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니 구인공고에 지원하기 전에 미리 이용하자!

The screenshot shows three user reviews from the website. Each review includes a rating, a message, and the user's name and creation date.

- Review 1: Please check my resume and revise it. Rating: ★★★★☆. Posted by 이○원 on 2018-10-19 11:02:40. Message: Thank you very much!
- Review 2: Please check my CV and resume. Rating: ★★★★★. Posted by 오○민 on 2018-10-18 16:30:22. Message: I really appreciate your kind help.
- Review 3: Dear whom may concern. Rating: ★★★★★. Posted by 손○경 on 2018-10-13 00:50:09. Message: Thank you so much.

02. KOTRA

Kotra는 해외시장 뉴스(www.news.kotra.or.kr)를 통해 뉴질랜드 등 94개국에 대한 국가정보, 무역·투자진출 현황, 취업유망분야 등의 자료와 해취투게더 카페([cafe.naver.com/kotrajobinfo](http://naver.com/kotrajobinfo))를 통해 비자정보, 정착생활 후기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3]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

The screenshot shows the Kotra Business News homepag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a magnifying glass icon and a dropdown menu labeled '통합검색'. Below the header,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abs for '뉴스', '상품·산업', '국가·지역정보', '비즈니스' (selected), and '보고서'.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for '비즈니스' with links to '인증정보나 바이어 찾기 등 해외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는 여기에' and a '비즈니스' section with links to '무역사기사례', '기업성공사례', '무역관 현경DB', and '해외인증정보'.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ction for '뉴질랜드' with a flag, population statistics (4,957,400), and links to '출장자료' (Travel Information) and '동영상' (Videos). There is also a '관련뉴스' (Related News) section with links to news articles about New Zealand's foreign trade, business environment, and tourism.

03.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는 글로벌시장 리포트를 통해 주요 국가의 해외시장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잡투게더(www.jobtogether.net)를 통해 해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2 정부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취업 단계별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등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 [표 3-1] 취업준비단계별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

구분	추천 프로그램	비고
관심	해외취업센터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전화, 방문상담)	월드잡/해외취업센터
	· 해외취업 설명회 ·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채용정보, 비자정보, 고용동향 등 제공(월드잡 공지사항 참조)
	청년해외진출 멘토링	국가·직종별 멘토가 해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강연과 그룹멘토링 형식으로 전달(월드잡 공지사항 참조)
준비	해외취업 아카데미 (서울/부산/군산/통영 해외취업센터)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글로벌 네트워킹 스킬 등 교육(월드잡을 통해 신청)
	역량 강화 온라인교육	월드잡을 통해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역량 강화 교육 컨텐츠 제공
	청해진 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 과정과 K-Move스쿨, 중장기 통합지원 프로그램
	K-Move스쿨	직무·어학교육 맞춤형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도전	공공알선(해외취업센터)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전화, 방문상담
	월드잡플러스 구인공고 지원	국내외 K-Move센터를 통해 발굴·모집된 해외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매칭
	해외취업박람회	(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기업과 구직자의 오프라인 채용 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서비스	국내외 민간알선 기관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성공	해외 K-Move센터 헬프데스크	해외 17개소(코트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취업자의 해외정착 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취업자의 조기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
	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지원	해외취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외취업 정보와 노하우 제공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월드잡 경력관리시스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업자의 현지정착 지원, 경력이동경로 파악, 경력증명서 발급 (예정), 이(전)직 지원 등



01. 해외취업센터

센터에서는 해외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채용관 운영을 통해 면접을 지원하며, 해외취업 정보제공,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역량진단 서비스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수행 한다.

■ [표 3-2] 해외취업센터 현황

구분	내용
온라인 상담신청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방문상담예약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402호(02.6964.7081~7085)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빌딩 610호(051.715.7017~7018)
군산청년 해외취업센터	전북 군산시 장미동 4길 24-2 4층(063.443.1558)
통영청년 해외취업센터	경남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세움 2층 (055.648.1837)

■ [표 3-3] 해외취업센터 이용정보

구분	내용
해외취업상담	방문, 전화, 이메일 상담 실시간 채팅 상담(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실시간 채팅문의)
해외취업 아카데미 (무료)	해외취업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인재의 조건,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강의) 신청 : 매월 신청 진행, 기수당 정원 50명 내외로 선발
해외취업 알선	구인기업, 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
상시채용관	기업의 채용 설명회 및 (화상)면접 장소 제공 해외취업동아리 스터디 공간 제공

* 아카데미 과정은 수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운영(IELTS 시험대비반, 독일 취업반 등)

02. 청해진 대학

청해진 대학은 해외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장기적으로 대학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편성·운영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 [표 3-4] 청해진대학 사업 운영기관 현황(2019.11월 현재)

기관명	국가	연수과정명	연수직종
강남대학교	일본	[청해진_2차]일본 Linux & Java 개발자 과정	IT
경성대학교	베트남	베트남 글로벌비즈니스 중간관리자	사무
배재대학교	멕시코	[청해진_4차]중남미 무역비즈니스 전문가양성과정	사무
대구보건대학교	미국	[청해진대학_4차] 해외 치과기공사 자격증(CDT,DT) 교육 및 정규취업	의료
동의과학대학교	일본	2019년 일본취업 자동차부품 및 기계설계 과정	기계/금속
두원공과대학교	일본	[청해진_4차]일본 기계 및 기계설계 직무분야 정규직 취업 연수	기계/금속
백석대학교	미국	3차년도 청해진 대학 미국 특급호텔 경영관리자 육성과정	서비스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	[청해진_2차] 베트남 무역물류사무직 과정	사무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	[청해진_4차] '일본IT'과정	IT
선문대학교	일본	[청해진_4차]글로벌 모바일 SW 및 앱 전문가 과정	IT
영남이공대학	일본	[청해진_3차]일본 기술비자 취득 IT & 자동차 취업 연수과정	IT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일본향 웹/모바일 엔지니어 양성과정	IT
인제대학교	베트남	[청해진_2차]베트남 디자인 CAD 전문가 양성과정	기타
오산대학교	일본	[청해진_3차]일본 게임그래픽콘텐츠 전문가 해외취업 양성과정	IT
전주비전대학교	일본	[청해진_3차년]일본 기계·자동차 Maintenance 취업 연수과정	기계/금속

03. K-Move스쿨

K-Move스쿨은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직무, 해외문화 및 직장예절 등 구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3-5〕 K-Move스쿨 사업개요(2019. 11월 현재)

구분	내용
지원 대상	<p>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30%범위 내에서 연령초과자 선발가능)나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대학) 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사업 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자로 연수종료 후 해외취업이 가능한자 ※ 휴학생은 참여 불가 <p>지원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 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연수 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자▪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 대상 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교환학생 체류기간 등 예외 인정) ※단, ①해외 유학생 대상 모집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과정 및 국내교육 구성이 연수과정의 50%이상인 과정은 참가가능, ②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예외 인정
연수분야	IT, 경영사무, 외식조리, 무역물류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분야
연수국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중남미, 중동 등
연수 기간	(단기) 200시간 이상(단, 8주 이상 구성) (장기) 600시간 이상 ※ 1일 8시간 이하/주말 수업 가능
연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확보형 :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 후 취업으로 연계▪ 자격취득 또는 훈련(교육)과정 이수형 : 해당국 부족직군, 기술·기능 및 전문 직종으로 자격취득 또는 해당국 지정 훈련과정 이수 후 취업과 연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유아교육 과정, 필리핀 스키스쿠버 강사 과정 등▪ 도제제도 연계형 : 호주·캐나다·독일 등 도제훈련을 운영 중인 국가의 구인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과정▪ 특화모델 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신시장 개척 연계: 새로운 국가, 직종의 구인수요가 있을 시 연수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과정② 과정평가형 자격 연계: 과정평가형 자격과 연계하여 연수과정 후 취업 연계 과정
지원 금액	(단기) 1인당 최대 580만 원 (장기) 1인당 최대 8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개인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20% 이내(신흥시장 취업 과정의 경우 10%)- (대학) 개인부담금 없음
취업현황	2017년 기준 71.79%(2,520명/3,510명)
신청방법	월드잡 플러스 검색 후 지원(일자리찾기-해외연수)

■ [표 3-6] K-Move스쿨 신청 및 취업절차

구분	내용
① 월드잡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등록)
② 모집공고 지원	과정별 모집요강 확인 및 지원
③ 연수생 선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④ 연수 실시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실시
⑤ 취업 알선	해외기업 알선 및 면접(일반적으로 연수과정 80% 경과 후)
⑥ 사후 관리	연수 종료 후 1년까지

■ [표 3-7] K-Move스쿨 주요과정(19. 11월 현재)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19	일본	IT	(사)한국무역협회	[우수과정] 38기 SMART Cloud IT마스터
2019	일본	IT	JSL인재개발원	IoT기반 프로그래밍 전문가과정 트랙 II 3기
2019	일본	서비스	전경련 국제경영원	일본 서비스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정 2기
2019	미국	사무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미국 상경 6기 물류 포워딩 글로벌 유통 전문가 양성과정
2019	미국	사무	동아대학교	2019년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비즈니스/디자인 전문가 연수과정 7기
2019	미국	사무	아이씨엔그룹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5기
2019	베트남	사무/관리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우수과정]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베트남 9 기) 과정
2019	베트남	사무/관리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베트남 한국기업 생산성향상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8기
2019	싱가포르	서비스	한양여자대학교	2년 취업비자 취득 호텔실무자(정규직) 취업 연수과정 16기
2019	사우디	간호사	코사솔루션	제10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19	호주	서비스	해외교육진흥원	[우수과정] 호주 시드니 TAFE NSW - Hospitality 취업연수 과정 (Certificate III) 24기
2019	중국	사무	신월신영 스카이차이나지점	제9기 중국경영지원전문가 연수과정

04.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해외취업은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리크루트사)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기관 중에서 월드잡플러스를 통하여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이 성사된 경우 구직자를 대신하여 공단에서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05.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경력관리시스템(월드잡)	→	→	→	향후 계획(예정)
해외취업자의 직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인별 경력관리 플랫폼				- 해외취업 경력증명서 발급 - 국내 재취업 등 이(전직)지원
설문조사	→	→	→	향후 계획 -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취업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장기적으로 파악
해외취업자의 취업만족도, 직업이동경로, 희망서비스 등 조사				

체크포인트

경력관리시스템은 역량개발 및 직무경험을 구직 단계부터 취업 후 국내 복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플랫폼으로 해외취업 준비자, 취업자, 취업 후 국내복귀자 등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06.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사전 구직등록 이후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공단에서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❶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금 우대국가	8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2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3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사업에선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접수 순으로 지원

※ 3차 지원금 대상은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18.3.15)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 구분 없이 800만원 지급

※ 지원금우대국가 :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❷ 지원대상 및 취업 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p>① 만 34세 이하인 자</p> <p>②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p> <p>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근로계약서 작성)한 자</p>
취업 인정기준	<p>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공단사업(취업알선, 연수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p> <p>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 - 청소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등</p> <p>③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p> <p>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p>

체크포인트

- (1) 취업 전에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만 해외취업 후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청은 '월드잡플러스-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메뉴에서 하세요.
- (3) 신청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취업사실확인(K-Move/EPS센터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하며 K-Move/EPS센터 확인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4) 1차 지원금은 근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간, 2차 지원금은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3차 지원금은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2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 (5)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취업경력(취업처, 재직기간 등)을 입력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6) 세부 내용은 월드잡플러스에서 당해년도 사업공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03 스스로 취업하기

01. 주요 채용 사이트

뉴질랜드 취업과 관련한 주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뉴질랜드 취업 관련 대표 구인/구직 사이트

사이트 명	URL	특징
SEEK	https://www.seek.co.nz/	호주 및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채용 사이트로 거의 모든 업종의 일자리 정보 제공
Trade Me Jobs	https://www.trademe.co.nz/jobs	뉴질랜드 최대 온라인 거래 사이트로, 일자리 정보도 다수 게재
Work in Wellington	https://www.nzkoreapost.com/	뉴질랜드 수도인 웰링턴 지역의 일자리 정보 제공. IT를 비롯한 High-tech 분야 취업 정보 강점
코리아포스트	https://www.nzkoreapost.com/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한국인 구인 구직 정보가 다수 게재되고 있음

※ 표에 제시된 것 외에도 indeed(<https://fi.indeed.com/>) 등과 같은 글로벌 취업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도 뉴질랜드 현지의 구직/구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02.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BSNS) 이용

최근 BSNS는 프로페셔널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경력, 관심 분야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개인에게는 새로운 구직의 장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구직용 BSNS로는 링크드인(Linked in)을 꼽을 수 있다. 링크드인(Linked in)은 '18년 2월 기준, 유효 가입자 수가 4억 천명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Professional Social Network다.

≡ 링크드인 활용방법



특히,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링크드인과 같은 BSNS를 이용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회사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소구모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BSNS에만 올리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 헤드헌터들이 BSNS에 등록된 사용자들의 프로필을 살펴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직을 권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계정을 만들어 놓고 지원할만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 3-9]를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BSNS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 BSNS 활용 방법

항목	내용
프로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문성과 자신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프로필 사진 첨부경력사항을 자세히 기재. 특히, 담당했던 업무나 프로젝트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이미지 등을 함께 추가취미, 특기 같이 업무 외에 자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지속적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관심사나 역량과 관련된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리서치 컨텐츠를 공유. 지인들이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자신에 대한 추천 글 요청
관심기업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 있는 회사를 관심기업으로 등록한 후 회사에서 올리는 컨텐츠를 파악하여 최근에 등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 이러한 실시간 정보는 추후 회사 면접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채용공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경우 BSNS를 통해 구인공고를 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관심 기업 그리고 관심 직무 및 포지션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된 채용 공고 및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확인

03. 취업박람회

2019년 8월에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은 주뉴질랜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뉴질랜드 취업 및 창업을 돋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금년 행사에서는 채용 기업 20개사, 55개 일자리를 확보하고 169명의 구직자들이 사전접수를 하는 등 구직자들과 참가 기업 모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오클랜드 무역관은 크라이스트처치 등 다양한 지역으로 취업박람회 개최를 확대하고 한인 청년들의 취업을 돋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뉴질랜드 해외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향후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오클랜드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취업박람회	2019.8.27	Victory Convention Centre, Auck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기업: 20개 사 - 참가대상자: 뉴질랜드 거주 한인 청년 - 내용: Talent Boost 설명



자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구직자들에게 일부 취업알선업체들이 연락을 취해 와서 자신들이 알선하여 취업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횡령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K-move 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관련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P P





04 해외취업 업무지원 기관 현황

❶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

- 주소: Level 16, Huawei Centre, 120 Albert St. Auckland, New Zealand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auckland/KTMUIUI010M.html>
- 현지 연락처 : (64-9) 373-5792

❷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nz-ko/index.do>
- 현지 연락처 : (64-4) 473-9073~4

❸ 주 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 주소: Level 12, Tower 1, 205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 New Zealand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index.do>
- 현지 연락처 : (64-9) 379-0818

❹ 오클랜드한인회

- 주소: 5 Argus Pl, Hillcrest, Auckland
- 홈페이지: <https://nz.korean.net/>
- 현지 연락처 : (64-9) 443-7000



PART 04

해외취업 사례



01 성공사례

남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도전하라

02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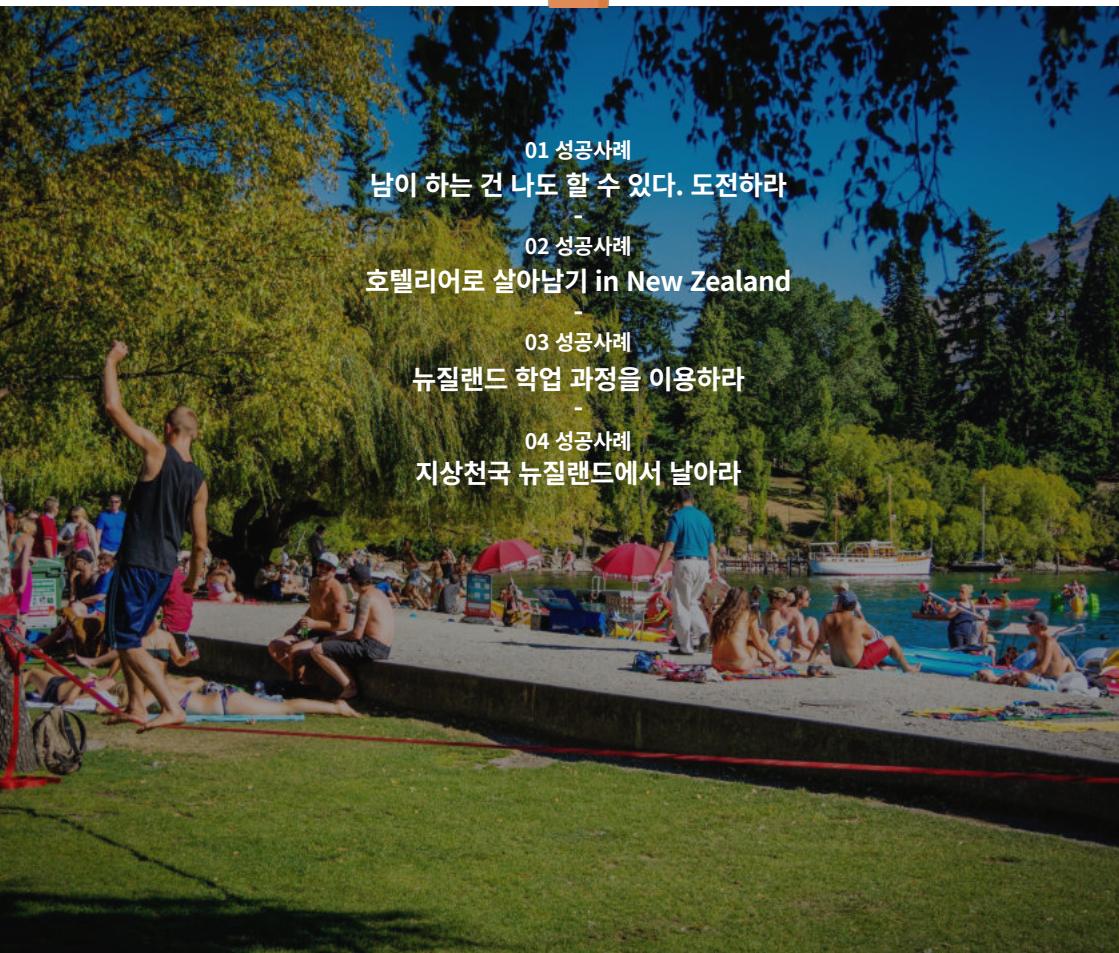
호텔리어로 살아남기 in New Zealand

03 성공사례

뉴질랜드 학업 과정을 이용하라

04 성공사례

지상천국 뉴질랜드에서 날아라





01 해외취업 성공사례

拇指 성공사례 이

남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도전하라

작성자 : 손OO

I. 해외 취업 도전 계기/동기, 경로(회사 선택적 동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질랜드 회사에서 Marketing Officer로 일하고 있는 손OO이
라고 합니다. 저는 20살 초반에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먼저 왔습니다. 저의 어학연
수 목적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고 영어공부였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 한
국에서는 접하지 못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
에는 어학원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에서 접하지 못할 새로운 것들에 많이
경험하고 그 시간을 즐겁게만 보낸 듯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학원
친구들뿐만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현지인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
러면서 그 친구들은 뉴질랜드에 어떻게 오게 됐고,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비
자에 대한 정보와 취득 법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온 단
어가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이었습니다. 즉, 저는 한국사람 이면서도 뉴질랜드의 다
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뉴질랜드의 영주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였지요. 이때가 바
로 저의 해외 취업 도전 계기가 아닌 듯싶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뉴질랜드 영구 영주
권 취득법을 조사했고, 가장 필요한 뉴질랜드 학위와 뉴질랜드에서의 해외취업을 준
비하게 됐습니다. 저의 꿈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래전부터 영어 선생님을 꿈꿔왔으
며,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저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
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AUT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대학교에서의 영문학(English Studies)과 미디어공부 (New Media
Studies)를 전공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저는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
었고, 영주권취득이 되지 않더라도 제 꿈인 영어 선생님으로서 필요한 영어공부를 충
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017년도에 AUT에서 학사학위를 받아 졸업을
하게 됐으며, 그 이후에 전공에 적합한 marketing 또는 PR (Public Relations)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졸업 후 6개월이 됐을 쯤, 오클랜드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서 Marketing officer로 해외 첫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학교에서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경력을 쌓았고, 한국 학생이 많은 제 학교에 K-Move 사업을 홍보하러 오신 KOTRA의 정애경 과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 지원이 확실한 회사의 Marketing officer로 지원해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공부한 것이 마케팅과 관련이 있었기에 정애경 과장님께서는 제가 컨설팅과 잘 맞을 것 같다며 추천을 해 주셔서 지원을 하게 됐고 인터뷰 통과 후 이직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2. 해외취업 준비과정 (정보추적기록, 이력서 작성방법, 면접준비방법 등)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조건은 제가 공부한 전공과 관련된 일을 구하여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대학교는 졸업하였지만 경력이 없던 저에게는 취업준비 및 취업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대학교 역시 학생의 취업을 위해 CV작성, Cover letter작성, 면접 준비 그리고 Job fair등 다양한 취업관련 서포트를 제공해주었고, 저는 모든 서포트를 가능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CV작성과 Cover letter작성까지 한 달 정도 걸렸고, 그 뒤부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job fair를 가끔씩만 참가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저 혼자서 취업활동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인터넷으로 지원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제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서 저 자신을 마케팅 많이 한 듯합니다. 그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CV를 들고 제가 원하는 마케팅 또는 PR(Public Relations) 회사에 가서 “제가 마케팅/PR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턴쉽도 괜찮고 파트타임도 괜찮은데 HR 매니저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니 5번 중에 2-3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뷰를 1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본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영어 인터뷰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마케팅 PR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CV와 Cover letter를 다시 수정할 수 있었고, 혼자서 인터뷰 준비까지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업 준비 6개월쯤 됐을 때, 오클랜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Marketing Officer를 구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바로 온라인 지

원을 했으며, 학교로 직접 찾아가 “여기 Marketing Officer를 구한다고 들었는데, Marketing Manager와 지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면접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2년이라는 경력을 쌓고 영주권 신청 시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해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취업 지원 사업도 하는 KOTRA를 알게 됐고, 나의 정보를 KOTRA에 넘김으로서 이직활동에 도움을 받아 현재 회사인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자신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저만의 취업 노하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면접을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HR 매니저와 직접 면접을 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를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첫 직원은 많은 일 때문에 casual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CV를 주면서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CV는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을(HR 매니저) 지목하고 그 사람에게 내 CV를 전달해 달라는 것이 아닌 지금 바로 만나서 얘기를 희망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하면, 적어도 전화를 통해서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은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5번 중 약 2-3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접을 봤고, 그 결과가 좋은 안 좋은 영어면접 연습은 충분히 가능했으며, 이 외에도 희망하는 인재상을 인터뷰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어, 나중을 위해 CV, Cover letter 그리고 인터뷰 준비를 다시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접을 보고 다녔고, 결과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첫 직장에 6개월 만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두 번째 방법으로는 면접 시 나를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이 끝날 때쯤 되면 면접관이 궁금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만약 내가 이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당황해하면서 답변을 해주게 되고, 그 답변에 대한 나의 답변은 “그러한 문제라면 나의 장점인 OOO로 충분히 보안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어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회사에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기에 다른 회사에서 면접은 충분히 보안 후 면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질문을 했기에 면접관이 저를 기억할 가능성성이 조금이나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제가 계속 취업 준비 중이며 내가 희망하는 직종은 ‘OOO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렸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저를 기억해 나중에 기회가 회사정보가 있을 때 연락을 주기도 했었고, 또는 알고 있는 지인이 마케팅을 구한다고 하면 저를 그 회사에 소개를 시켜주어 저의 CV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조금씩 취업의 확률을 높이는데 저는 초점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4.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봉, 회사생활 전반 등)

저의 뉴질랜드 첫 회사는 대학교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고 현재 회사에서도 역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그리고 월-금 5일로 총 주 40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일하는 시간은 9:00 – 18:00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업무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이를 회사 매니저와 조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업무시간은 9:30-6:30이지만 저는 출퇴근 시 버스문제 때문에 9:00에서 6:00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월-목은 9:30에서 7:00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9:30-16:00까지 하고 퇴근을 합니다. 이는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가정 하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듯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 한지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저의 영주권을 취득에 서포트를 해주기로 약속했기에 앞으로 2-3년은 충분히 더 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다른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업무시간을 중요시하는 뉴질랜드 시스템 때문에 퇴근 후 자기개발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하며, 그 자기개발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회사를 통해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외국인과 영어로 일을 한다는 점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모두 영어를 native수준으로 너무 잘했으며, 각 나라마다 억양과 발음의 차이가 심해 대화하기에 힘들었으나 두 달이 지나자 금방 그 발음과 억양에 익숙해져 대화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영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저의 업무관련 하여 review를 하고, 연봉협상을 이룹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review 및 연봉협상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폐이에는 만족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5. 현지 정착 어려사랑 및 극복과정

제가 현재 뉴질랜드에 유학을 하고 취업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총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동안 즐거운 점도 정말 많았고, 제가 원했던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여기에서 정말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는 만큼 힘든 부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언어와 외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1-2년을 살고 공부를 하면 영어로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정착을 희망하기에 제가 해야 하는 영어로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전공 공부, 그리고 수업을 따라가고, 모든 과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2년을 영어권 나라에 산다고 충분하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제외하고 전공공부도 영어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그와 동시에 취업 시에는 그에 필요한 영어를 또 다시 준비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인 영어는 늘겠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볼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영어권나라에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 6년 동안 산 저도 영어를 native처럼 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신문도 읽고 영어로 영화도 보고 수업도 하고 일도 하지만, 저의 한국어 실력과 비교했을 시에는 영어는 아직도 제2 외국어에서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추천 드리고 싶은 방법이 취미생활을 외국인과 하는 것입니다. 저는 activity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수영, 스노우쿨링, 트랙킹 등을 자주 즐기는데, 이에 같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다보니, 영어실력이 말도 안될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굳이 주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희에게는 이미 공감대 형성이 가능했기에 1을 얘기해도 3이상의 답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미 저의 관심사이기에 조금 더 잘 들리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외생활 정착 시 가장 어려웠던 언어라는 부분을 많이 극복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사항은 외로움이었습니다. 20살 초반까지 한국에서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다가 뉴질랜드로 왔고, 우연치 않게 해외에서 정착을 결정하

였기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 역시 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6년이라는 시간동안 뉴질랜드에서 저 혼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외로운 탓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또 다른 애로사항은 그 친구들 역시 어학연수, 유학 또는 워킹홀리데이로 왔기에 만나고 1-2년 있다가 모두 다시 떠나가고 저만 다시 남아 또 다른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100% 잘 적응했다 라고는 말은 못하나, 최근 들어 가장 힘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공부 후 취업하고 그리고 영주권을 바라보는 친구들을 소개해 알게 됐고 또는 우연치 않게 알게 되어서 좋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힘든 부분을 공감하고 나누고 위로해줄 수 있어서 그 외로움이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정착하시고자 하는 분들 역시 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방법이 정답은 하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저는 해외취업부터 이민까지 정말 우연치 않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어학연수로 와서 우연치 않게 현지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우연치 않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알게 됐고, 필요한 부분이 해외취업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간 중간 내가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고,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먼 길 같았고 꿈만 같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도 했는데 내가 못 할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시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꿈처럼 보이겠지 만 충분히 자신의 꿈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와 흡사하게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계획과 목표를 만드시고 포기 없이 이루어 나가면 해외 취업과 이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호텔리어로 살아남기 in New Zealand

작성자 : 김현정

Kia Ora!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Nesuto Stadium 호텔에서 근무중인 6년차 호텔리어 김 현정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온 것은 2016년 11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나갔던 파크 하얏트 호텔 인턴십을 통해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다국적 고객님들을 만나며 글로벌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큰 기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온 결정이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고 준비한 기간은 1년, 부산 중심가에 있는 호스텔에서 리셉션 니스트로 일을 하며 영어실력을 키웠습니다. 한국인이 거의 오지 않는 외국인 위주의 호스텔이라 게스트와 캐주얼한 대화를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주 묻고 답하는 업무상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출국하기 전,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일종의 자기소개서,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 적는 간단한 편지형식의 글로 한국의 자기소개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토대를 미리 작성하여 호텔 선배님들께 보여드리고 조언을 구하여 뉴질랜드 입국과 동시에 구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사이트 SEEK이 가장 많은 구인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매니저 연락처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보냈습니다. 호텔 식음료부와 객실부에 지원할 때 사용할 이력서를 따로 만들었고 연관된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다는 부분을 커버레터에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제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영어는 토익뿐이었으나 뉴질랜드에서는 토익보다는 아이엘츠(IELTS)를 이용하기 때문에 토익에 대해 대부분 잘 알고 있지 않아 접수가 큰 의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레터가 더욱 중요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커버레터를 통해 어필해야만 했습니다. 최대 3주를 구직기간으로 정하고 50여 번의 지원 끝에 2주 후 아파트호텔 리셉션 니스트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고용형태는 Casual, Part-time, Full-time의 형태로 캐주얼은 제한없이 총 근로시간이 유동적이고 파트타임은 최대 주 20시간, 풀타임은 최소 주 35-40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면접 이후 트라이얼을 진행하는데 이는 실제로

현장에 3-4시간정도 투입되어 본인이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저의 첫 계약서는 캐주얼로 당시 최저시급 NZD 15.75불이었습니다. 고용이 확정되고 나서도 업무에 능숙해질 때까지 많은 시프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 15-20시간만 근무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주급제인 뉴질랜드에서는 주당 최대한 많은 시간을 받는 게 본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를 적게 하고 빨리 일을 배워야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있었던 저에게 주 고객층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인의 억양은 너무나도 생소했고 그로 인해 오는 의사소통의 벽도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 현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줄임말, 슬랭(Slang - 은어) 등을 배우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듣고 따라하고, 자주 업무에서 사용되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 반복 말하기로 매일 연습한 결과, 3개월 후에는 주 30시간 이상 시프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근무하던 매니저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컴퓨터 스킬이 좋고 빠르게 배우는 부분을 보고 호텔의 부동산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를 제안하였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전 풀타임 수퍼바이저 직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ANZSCO 레벨 카테고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랐고, 자국민 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강하게 지원을 해줘야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전트에 비자 신청을 맡길 경우 \$1,800 - \$3,400 정도의 진행대행료(비자 신청비 포함)가 발생하고 대행일 뿐 비자승인의 유무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봤고 생각보다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 모든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잘 나와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혼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제가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호텔에 취업하게 되어 한국 학력과 업무 경력이 인정되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로 근무하던 분이 레스토랑 매니저로 비자 신청을 한다면 거부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비자는 승인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승인되었고 워크비자에는 고용주와 잡 타이틀, 받아야하는 최소 시급까지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바뀌거나 이직 할 때마다 새 비자를 신청하거나 기존에 있는 비자의 수정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2번의 승진을 통해 지금은 Nesuto Stadium의 어시스턴트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호텔은 뉴질랜드와 호주에 기

반을 둔 4.5성 호텔로 저는 전반적인 프론트 오피스 업무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텔 프론트 오피스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모국이 아닌 해외에 나와 이방인이 되었지만 이 호텔 안에서 만큼은 누구보다 뉴질랜드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를 궁금해 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에게 본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뉴질랜드 사람이 된 것 마냥 뉴질랜드를 알릴 수 있어야하고, 현지인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을 때 이 곳의 문화를 더 즐기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도 매일 새롭게 생기는 다양한 일 앞에서 배워가는 단계라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에 비해 발전된 문화도, 한국이 더 발전된 문화도, 다른 문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지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지인들의 언어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얻는 이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국어가 아닌 것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제가 도움 받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구직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해도 조금 더 당당하게 본인의 장점과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강점을 어필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눈길이 가게 됩니다. 뉴질랜드는 여전히 사업장 문에 공고를 붙여두는 매장들도 많고, 직접 사업장에 찾아와 공석이 없더라도 미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끔 열정 가득하게 무작정 ‘뭐든지 시켜만 준다면 잘 할 수 있습니다’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본인을 표현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서라도 본인답게 멋있게 스스로를 표현하셔서 마음에 두신 일 꼭 하실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학업 과정을 이용하라

작성자 : 김희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질랜드 Dunedin에 거주하고 있는 김희수입니다. 뉴질랜드에는 2018년 1월에 왔고, 학생비자를 가지고 Auckland Institute of Studies(AIS)에서 Graduated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GDHM) 과정으로 1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3-year Job search Visa(post study work visa)를 취득하여 Christchurch에 있는 HMSHost Terminal Services Inc.에 취직해 Underground coffee cafe attendant로 근무했고, 현재는 Dunedin으로 이주하여 Larnach castle에서 Cafe attendant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fe attendant는 kitchen을 제외하고 카페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담당합니다. 저는 front staff 및 barista로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 나오기 전에 barista 수업을 받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취업 이유는 단지 해외 생활 및 English field 경험을 쌓고 싶어서였으며, 국가선택은 Tourism industry가 발달한 국가에서 경험을 해보고자 뉴질랜드를 선택하였습니다.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학교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GDHM 과정은 인턴십 수료가 필수였기 때문에, Work Experience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인턴십은 Auckland Novotel Ellerslie에서 Food and beverage attendant로 3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학교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 Christchurch로 이주하여 관련 직종 구직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호텔 공식홈페이지 구인광고를 활용하기도 했으나 주로 뉴질랜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Trade me’, ‘Seek’ 같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 지원했습니다. 지원 시 CV와 coverletter의 양식은 학교에서 받은 수업 및 자료들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뉴질랜드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 Reference는 학교 다닐 때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곳의 매니저에게 부탁하여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원한 곳에서 서류가 통과되면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인터뷰 날짜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 후 인터뷰를 보고 인터뷰가 통과가 되면 2~3 시간 정도의 trial을 거쳐 계약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졸업 후 full time permanent job seeking 과정에서 4번의 인터뷰에 응하였고, 근무했던 HMSHost company에서는 그룹-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Dunedin Larnach castle에서의 인터뷰는 구두-인터뷰였고, 첫 직장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Work experience를 기반으로 한 인터뷰가 주가 되었습니다. 현 직장의 경우 첫 번째와는 달리 경험이 있었으므로 인터뷰 및 채용이 순조로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성 ballroom cafe에서 바리스타 및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외국인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들은 대부분 영주권이 목표이지만, 저는 이와 조금 다르게 뉴질랜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이동하면서 길게는 8개월, 짧게는 6개월 정도마다 근무지를 바꾸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취득한 3-year Job search Visa(post study work visa)는 뉴질랜드에서 work visa를 회사에서 지원받을 필요가 없이 3년 동안 자유롭게 이동 및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자의 condition을 잘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해외취업의 경우 국 가를 막론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Language입니다. English field에서 English skill 부족은 취업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Working holliday visa 가 아닌 student visa로 해외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변에서 워홀을 통해 온 사람들 모두 영어 실력에 따라 직장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1년 동안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어학원 생활로 워홀의 포문 을 열지만, 어학원에서의 영어학습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진출 이전에 한국에서 기본 이상의 Speaking and listening skill을 준비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Agency를 통해 학교 자체시험을 보고 학교에 입학이 가능했고, 바로 학교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저의 영어 수준은 현지학교에서의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classmate의 도움을 많이 받고, 무사히 졸업까지 가능한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또한 학교과정을 마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reference가 생기게 되고, 교수들이 referee 가 되어주기도 해서 취업이 용이해 집니다. 또한 학교 과정에서 어학원보다 훨씬 더 높은 질의 영어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인턴십이 첫 직장에 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학력보다는 practical skill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refrence를 찾는게 취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에서 워크비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제 사례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Job search visa는 특정 레벨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visa입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스스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medical check up paper, criminal clearance paper, school certification 등 비자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각자의 condition check를 잘해야 하고, 서류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보통 발급까지 4주 ~ 6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자만료 날짜를 잘 고려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성공사례 04

지상천국 뉴질랜드에서 날아라

작성자 : 이진아(월드잡 해외취업 성공수기 발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업계보다는 인문계를 선호하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된 직장을 갖는 정해진 패턴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은 정말이지 하늘의 별따기다. 하지만 나는 이런 수준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했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 박대를 받는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뉴질랜드행을 결심했다.

두뇌보다 기술이 가치 있는 사회

나는 열여섯 살 때 미용에 입문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 미용과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에서 4년 동안 일했다. 많은 연예인들을 보았고 다양한 매체와 작업했다. 미용으로 성공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미용인들이 강남으로 몰려든다. 나 역시 같은 꿈을 가지고 강남에 입성했다. 하지만 현저히 낮은 임금과 과도한 근무시간, 복지 제도 혜택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주변에선 유명인과 일한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위해 일한다 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나는 유명세보다는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

나는 뉴질랜드에서 취업하기 위해 인터넷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해외 취업 사이트를 뒤졌다. 막연하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정착한다는 각오로 뉴질랜드에 관련된 서적이라면 문화, 여행, 에세이, 장르를 불문하고 읽었다.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로 복지면에서도 우수하고 따뜻한 기후와 친절한 국민성, 안전한 치안 등 나에게는 참 매력적이고 천국 같은 나라였다. 하지만 일자리 수요가 많지 않은 나라라 일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다 K-Move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라 연락하셨다. 정말 운 좋게 K-Move 스쿨에 딱 한개의 뉴질랜드 관련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미용과 관련된 과정이었다. 게다가 국비 지원이 가능해 금전적 여유가 없던 내게 더욱 매력적이었다. 또한 이 과정을 수료한 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마른하늘에 단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올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다. 영어도 서툴고 절차도 몰랐지만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과 더듬더듬 비교해 가며 비자를 신청했다. 비자가 나오고 초기 정착 자금을 모으기 위해 출국 전날 자정까지 일했다. 그리고 올 7월, 중국 상하이를 거쳐 16시간 만에 뉴질랜드에 입국했다.

뉴질랜드에 와서 보니 이곳은 기술직에 열려 있는 나라였다.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은 편이라 사람이 귀하고, 때문에 자연히 기술직이 대우받을 수 밖에 없는 나라이다. 한국과 완전히 반대다. 만약 뉴질랜드행을 준비 중이라면 똑똑한 두뇌보다 요리든 자동차 정비 기술이든 목공업이든 손발을 이용해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세금을 내면 혜택 또한 많다. 재능이나 기술이 있다면 과감히 뉴질랜드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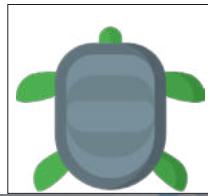
나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고 뉴질랜드에 왔다. 배운 영어라곤 고등학교에서의 무적으로 가르치는 영어와 대학 때 교양 수업으로 들은 게 다였다. 거의 뭐, 초짜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쉬운 문법책을 보면 가볍게 시작했다. 그리고 K-Move 프로그램을 통해 랭귀지스쿨을 다녔다. 지금도 많이 서툴지만 나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친해진다고 생각하며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영어를 익히고 있다. 앞으로도 한참을 공부해야 하기에 기왕 하는 거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드라마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공부하기도 한다. 요즘 유행하는 팝송을 따라 부르며 발음을 익히고 슬랭이나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도 익힌다. 여기에서 키위(뉴질랜드인)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남자 친구를 통해 뉴질랜드의 문화와 다양한 사고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가끔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키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기다려 주고 알려 주려고 노력한다. 영어가 당장 급하고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조급해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쳐버리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재미있게 천천히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학교 과업에 소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나 복습, 간단하게 하는 예습 등은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고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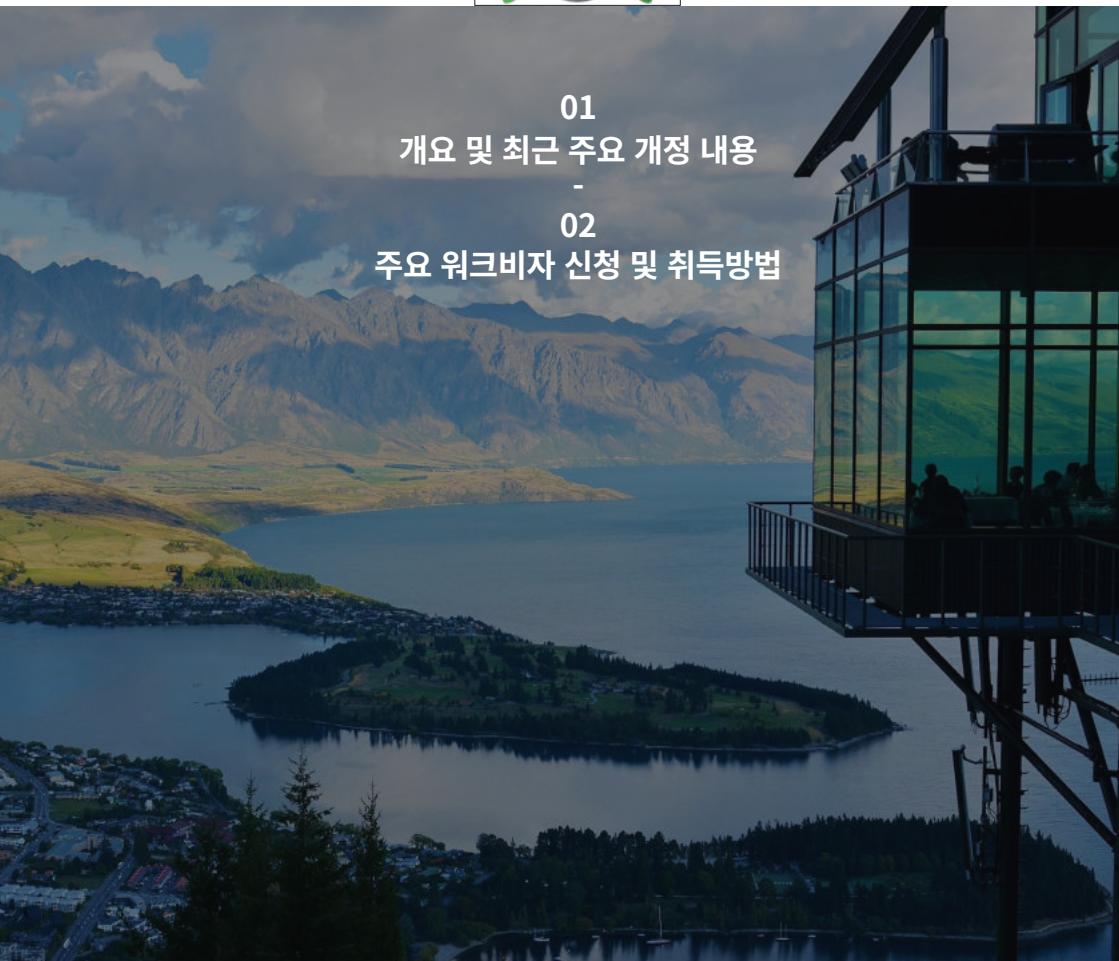
뉴질랜드가 유럽의 문화를 갖고 있어 개방적이라고는 하나 일에선 상당히 보수적인 면도 많다. 근무시간과 임금이 정확하고 아르바이트를 위한 이력서 한장을 써도 정성을 들여야 취업률이 높아진다. 특히 키위들은 사람의 정성이나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오클랜드에 있는 미용실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이력서를 작성해야 했다. 어떤 양식으로 쓸지 몰라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자료를 찾아 수정하고, 내 이력에 접목시켰다. 또 선생님과 남자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이력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다들 흔쾌히 도와준 덕분에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었다. 스카우트 제의를 한 원장님은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을 약속했고 나는 랭귀지스쿨이 종료되면 정식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나의 목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기 전,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온 만큼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고 싶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에 매진하고 싶다. 만약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다면 나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상상하는 공포는 막상 겪게 되면 생각만큼 크지 않다. 나는 뉴질랜드에 온 이후로 정말이지 이곳에서 평생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온 지 정말 얼마 안됐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짧은 몇 달 동안 내가 본 것은 너무나 컸고, 한국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나의 글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의 행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RT
05
취업비자



01
개요 및 최근 주요 개정 내용

02
주요 워크비자 신청 및 취득방법





01 개요 및 최근 주요 개정 내용

01. 개요

뉴질랜드의 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Temporary Visa)와 영구 거주가 가능한 영주비자(Resident Visa)로 구분되며, 취업활동을 위한 비자(이하 워크비자)는 임시비자에 속한다. 뉴질랜드의 비자체계는 매우 복잡한 편인데, 특히 워크비자는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종류가 10여개를 넘어선다. 기술부족직군 이거나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아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Work Visa 중 필수기술취업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뉴질랜드의 취업비자에 해당한다. 이 외에 Post-study Work Visa 와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 Visa)도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이며, 취업활동을 통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소위 ‘취업 후 이민’ 프로그램인 Work to Residence Category에 속하는 장기부족직종비자(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및 이민국공인사업자비자(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도 워크비자에 해당한다.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뉴질랜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워크비자가 어떤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워크비자별로 취득 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발급이 가능한) 워크비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법의 개정으로 인해 워크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는 워크비자의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뉴질랜드 기업에 지원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에서는 뉴질랜드 방문자가 어떤 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탐색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사전에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민성 비자 탐색 웹사이트 :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



자신에 맞는 비자의 탐색 예시

<1단계> Work를 위한 비자 탐색

I would like to come to New Zealand to ...

Get a visitor visa or NZeTA	Study	Work	Live permanently	Join family	Start a business or invest
-----------------------------	-------	------	------------------	-------------	----------------------------

<2단계> 음션 입력 : 고용제의 여부(HAVE), 출신국가(KOREA), 연령 입력(29)

Explore the options to see if there's a work visa that's right for you.

I have a job offer,

I'm travelling on a passport from **Korea, the Republic of (South Korea)**.

I am years old.

[DISPLAY OPTIONS](#)

<3단계> 입력된 음션에 따라 선택 가능한 비자 유형 제시(비교가능)

<input type="checkbox"/> COMPARE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We invite people who have the skills, experience and...	<input type="checkbox"/> COMPARE Essential Skills Work Visa If you're offered a full-time job and your employer first checked if any New Zealanders were available to do the work, you...	<input type="checkbox"/> COMPARE Specific Purpose Work Visa If you have skills or expertise that will benefit New Zealand, you can come here for a specific purpose or event. Examples of...
<input type="checkbox"/> COMPAR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input type="checkbox"/> COMPARE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input type="checkbox"/> COMPARE Post-study work visa People who have completed an

02. 워크비자 관련 이민법 개정안(2019년 9월 17일 뉴질랜드 이민 성의 발표 내용 기준)

뉴질랜드는 최근 이민법의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뉴질랜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민법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시행된 법, 규정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시행시기에 맞춰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출국 시기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년 9월 17일, 뉴질랜드 이민성은 그 동안 뉴스로만 간단히 변화 예상을 공지한 것과 달리, 워크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혁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2019년 10월 7일 1차 예고안인 텔런트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에 대한 변경 및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중순 경에 2차 예고안, 2021년부터 3차 예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차 및 3차 예고안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18개월에 걸쳐 워크비자에 대한 통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❶ 2019년 10월 7일 시행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변경

변경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뉴질랜드 AE비자에 적용되는 연봉의 하한선이 55,000달러에서 79,650달러로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AE비자의 1년 최저연봉이 현 뉴질랜드 평균 연봉의 150% 수준인 79,650달러로 상향되며, 향후 연봉 조건은 매년 평균 연봉 수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9년 10월 7일 이후 79,650달러 이하의 연봉자는 Essential Skills Work Visa로 신청해야 한다.

둘째, 뉴질랜드 AE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전환 옵션이 삭제되었다. 기존에는 AE비자 소지자에 대해 조건 없이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으나, 이번 변경으로 동 옵션이 삭제되어 2019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뉴질랜드 AE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신청 중인 지원자들은 AE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연봉이 9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셋째, 고용주의 Accredited Employer 자격이 2년으로 제한된다. Accredited Employer는 AE비자를 지원(support) 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고용을 하기 전에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미리 승인

을 받아 놓은 사업자로서 1,38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2019년 10월 7일부터 accreditation을 신청하는 고용주는 24개월만 유지가 가능하고 24개월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2020년 중순 시행 예정 : Essential Skills Work Visa(워크비자) 변경

ESW 워크비자에 대한 변경 내용은 2020년 중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의 ESW 워크비자는 직업분류표(ANZSCO) 상 기술레벨(Skill Level) 별로 비자 기간을 구분 하였지만, 2020년 중반 이후로는 급여 또는 연봉수준만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비자 기간을 분류하게 된다. 즉, 현재는 high(5년), mid(3년), lower(1년) 레벨로 나누어 유효기간 비자를 승인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high와 low 2가지로만 단순화되어 High는 3년의 유효기간을, 그리고 low는 1년의 유효기간으로만 분류된다.

또한, high와 low의 구분 기준도 기술레벨이 아니라, 단순히 시급[임금]만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된다. 임금 기준은 변동 될 수 있으나 예고안에 따르면 Median wage인 \$25을 기준점으로 하여 고임금(high)과 저임금(low)으로 나누게 된다. 저임금은 1년 만 비자가 주어지며 최대 3년까지(1년씩 총 3년연장)을 할 수 있다.

⌚ 2021년 시행 예정 : Temporary Work Visa로의 통합 및 고용주 주도 절차

변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며, 이민성에 따르면 동 개정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쁜 고용주들을 걸러내자는 취지로서 무조건 이민국을 통해서 고용주 인증자격을 취득해야만 워크비자를 support 하게끔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2021년부터 현재의 6가지 워크비자의 카테고리가 통합되어 “Temporary Work Visa”的 카테고리로 새롭게 재편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Temporary Work Visa로 통합되는 현재의 6가지 워크비자

1. Essential Skills Work Visa
2. Essential Skills Work Visa-approved in principle
3. Talent(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4.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5. Silver Fern Job Search Visa
6.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Visa

그리고 둘째, 2021년부터는 이주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3단계에 걸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민성에서 사전에 승인(허가)받은 고용주들만이 고용제의를 줄 수 있게 된다. 즉, 앞으로는 고용주가 ESW 취업비자를 이주근로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성에서 고용주 심사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제의 심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를 심사하여 허가받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Temporary Work Visa 3단계 심사 프로세스

- 1단계 고용주 체크(The Employer Check and Accreditation) : 고용주의 상황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Accreditation 인증서 발급에 대한 여부를 결정
- 2단계 고용제의 체크(The Job Check) : 노동시장 검증과 지역의 특성 등에 대한 심사
- 3단계 신청자 체크(The Worker Check) : 워크비자 신청자의 자격여부, 신원조회 등의 기본적인 심사





02 주요 워크비자 신청 및 취득방법

01. Essential Skills Work Visa (ESW비자)

❶ ESW비자란?

뉴질랜드에 취업하여 받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워크비자는 ESW비자이다. ESW비자는 뉴질랜드 내의 사업체나 단체에 고용되어 계약된 기간 혹은 뉴질랜드 이민국이 허락한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로서, 뉴질랜드 현지 사업체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공이나 고급인력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채용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ESW비자의 기술레벨에 따라 비자 기간 및 향후 비자 기간 연장 가능 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기술레벨은 비자 신청자가 근무하게 되는 기술직종의 레벨(ANZSCO Skill Level)과 급여수준(Remuneration)에 따라 3개의 구간(lower-skilled, mid-skilled, and higher-skilled)으로 나뉜다. ANZSCO(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는 호주-뉴질랜드 직업분류 기준표를 의미하며, 직종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된다. 2017년 8월부터 ESW비자와 기술이민비자(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의 신청 시 취업의 기술레벨을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보상 기준(Remuneration)이 도입되었는데, 이민성에 따르면 2020년 중순부터는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준으로만 결정될 예정이다. 보상 기준의 임계값(Threshold)은 뉴질랜드 근로자의 평균 연봉과 급여를 반영하며, 매년 11월에 New Zealand Income Data를 근거로 매년 갱신된다. 예를 들어, 만일 고소득군인 시급 \$37.50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맺었고 높은 레벨(ANZSCO Skill Level 1, 2, 3)의 기술직종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최대 5년의 비자 기간이 주어지며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 현재 ESW비자의 기술레벨 구분 및 비자 유효기간

	ANZSCO 기술레벨	보수 기준 (Remuneration Threshold)	최대 비자 유효기간	최대 비자 연장 기간
Higher-skilled	Any	시간당 \$37.50 이상 (또는 연봉 \$78,000 이상)	5년	무제한
Mid-skilled	1, 2, or 3	시간당 \$21.25 이상 (또는 연봉 \$52,000 이상)	3년	무제한
lower-skilled	4 or 5	시간당 \$37.49 이하 (또는 연봉 \$77,979 이하)	1년	최대 3년
	Any	시간당 \$21.24 이하 (또는 연봉 \$44,179 이하)		

(주) Higher-skilled 또는 Mid-skilled로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 배우자에게는 오픈워크비자가 발급되며, 자녀는 공립학교 학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 : 뉴질랜드 이민국

➂ ESW비자 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ESW비자 신청 요건

- 풀타임 고용제의가 있어야 함
- ANZSCO(호주뉴질랜드 직업분류기준표)와 매칭되는 해당 직업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필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등록(registration)이 필요한 직군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함

ESW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의 경력과 학력에 맞는 기술직종을 찾아 해당 직종을 구인하는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를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ESW비자는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job offer)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비

자 신청시 서면 고용계약서(written employment agreement)와 고용주가 작성한 Employer Supplementary Form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고용제의를 받은 후 뉴질랜드 이민국에 워크비자 신청서와 함께 경력 및 학력 증명서류, 기타 필수 증명서류(신원조회서, 신체검사서 등)와 고용주가 직접 작성한 신청자의 워크비자 지원서(Employer Supplementary Form)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된다. 이 때 근무하게 되는 직종이 필수기술부족직군(Essential Skills in Demand List)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해당 직업에서 일하기 위한 필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고용계약 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뉴질랜드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labour market check)를 제시해야 한다.

ESW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

- 비자 신청서
- 최근에 촬영한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 사진
- 비자 수수료 및 이민국 수수료
- 여권 바이오페이지(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2장 여권의 모든 비자 사증과 출입국 도장의 복사본 1장
- 고용주로부터의 서한과 고용계약서(비자 신청자가 일할 직책, 업무 내용, 자격 및 경력 요건, 고용기간, 업무시간, 임금 및 복지를 상세히 명시)
- 뉴질랜드 고용주가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고용 승인서(해당하는 경우)
- 구직 제의(job offer)와 관련된 가장 높은 자격 증명(관련된 경력 증명서)
- 경찰신원조회(2년 이상 체류 시,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 신체검사확인서 및 흉부 엑스레이 확인서

02. Post Study Work Visa

❶ Post Study Work Visa란?

Post Study Work Visa는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하여 레벨4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워크비자로서 잡서치비자(Job Search Visa) 또는 오픈워크비자(Open Work Visa)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Post Study Work Visa는 잡오퍼여부에 따라 1년짜리 오픈형(open)과 2년짜리 고용주 지원형(employer assisted)으로 구분되었으나 2018년 8월 이민법 개정(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으로 단일형태

로 통합되었다. 현재 동 비자는 오픈형이어서 비자가 주어진 기간 동안 직종이나 고용주에 대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직 및 취업활동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비자 기간은 1년 ~ 3년이며, 이는 학업 지역이 오클랜드인지 여부와 학업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 학생비자 신청자에 적용되는 Post Study Work Visa 기간

계획 중인 학업	학위 조건	주어지는 자격
레벨7 이상의 학사 이상	최소 30주	3년 오픈 워크비자, 지역구분 없음
레벨7 Graduate Diploma	최소 30주	<p><오클랜드 지역 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오픈 워크비자 - 협회등록이 필요한 경우 추가 1년 오픈 워크비자 연장 가능 <p><오클랜드 이외 지역 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오픈 워크비자(온라인/오클랜드캠퍼스 제외)
레벨7 준학사(Diploma)	최소 30주	<오클랜드 지역 소재>
레벨4~6 준학사(2년 과정 Diploma)	최소 60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오픈 워크비자
레벨4~6 준학사(2개의 Diploma)	각 과정당 최소 30주	<p><오클랜드 이외 지역 소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오픈 워크비자(온라인/오클랜드캠퍼스 제외)

Post Study Work Visa 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Post Study Work Visa 신청 요건 및 제출서류

- 비자 신청서
- 최근에 촬영한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 사진
- 비자 수수료 및 이민국 수수료
- 여권 바이오페이지(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2장 여권의 모든 비자 사증과 출입국 도장의 복사본 1장
- 졸업 증명서 : 졸업 전의 경우 학교에서 임시로 발급해 주는 Eligible to graduate letter와 Official academic transcript로 대체 가능
- 체류 기간과 신청 기간이 1년 초과 시 건강검진서류(Full Medical 및 Chest X-Ray) 필요
- 경찰신원조회(2년 이상 체류 시,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 뉴질랜드 계좌 잔고 \$4,200 이상
- 학생 비자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Post Study Work Visa는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한 후 취업처를 찾는 구직자를 위한 비자이므로 합당한 학위(Qualifications)를 갖추어야 한다. 적어도 레벨4 이상의 학업을 이수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위 레벨에 따라 주어지는 비자의 기간

이 달라진다. 학위와 관련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학생 비자가 종료된 후 3개월(또는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4,200의 계좌잔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Post Study Work Visa는 졸업하기 전이라도 모든 과정을 이수한 상태에서 졸업 권한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 비자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03. Work to Residence Category

(1)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LTSSL비자)

❶ LTSSL비자란?

LTSSL비자는 뉴질랜드 이민국의 ‘취업 후 이민(Work to Residence Visa)’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선정하여 발표하는 장기부족직종에 포함된 소수의 기술직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 가능한 이들이 해당 기술직종 관련 고용제의를 받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장기부족직종에 포함된 기술직종의 90% 이상은 construction / Engineering / Health / ICT 관련 직종이며, 최소 학사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부족직종에 포함되어 있는 Hospitality 관련 기술 직업 중에는 유일하게 쉐프(CHEF)만 포함되어 있다.

❷ LTSSL비자 신청 요건

LTSSL비자 신청 요건

- 장기부족직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에 해당하는 고용제의와 해당 직업에서 규정하는 필수 근무 경력 (work experience), 자격(qualifications), 등록(occupational registration)을 충족해야 함
- 고용계약이 적어도 24개월 이상이어야 함
- 비자 신청 시 나이가 만 55세 이하이여야 함

이민국은 주기적으로 장기부족직군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만일 본인의 직업이 그 리스트에 있고, 그 리스트에 규정하는 조건을 맞춘다면 신청해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그 리스트에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

스트에 보면 정확한 조건이 명시되어있고 그것을 꼭 충족하여야 신청자격이 있다. 예를 들면 경력 몇 년 및 레벨 몇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LTSSL 비자를 받아 2년을 뉴질랜드에서 근무할 경우, 장기부족직종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이때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영어점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LTSSL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

- 비자 신청서
- 최근에 촬영한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 사진
- 비자 수수료 및 이민국 수수료
- 여권 바이오페이지(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2장 여권의 모든 비자 사증과 출입국 도장의 복사본 1장
- 뉴질랜드 장기부족직업군에 충족하는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고용주로부터의 고용 계약서
- 신청자가 고용된 직책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교육 및 경력사항에 대한 서류
-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뉴질랜드 장기부족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을 최소 24개월 기간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되었다는 사항을 확인하는 뉴질랜드 고용주가 작성한 신청서
- 경찰신원조회(2년 이상 체류 시,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 신체검사확인서 및 흉부 엑스레이 확인서
- 흉부 엑스레이 확인서

LTSSL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요건

- 신청인은 장기부족직종 하에서 취득한 취업비자를 24개월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당초 취업비자의 신청 시 장기부족직종 상의 해당 직군에서 요구하는 NZQA 인증 학위와 관련한 직무경력을 충족시켜야 함
- 만일 고용주가 노동감시관으로부터 ‘non-compliant employers’으로 분류되어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이 리스트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당초 취업비자 신청 시 나이가 만 55세 이하이어야 함
- 취업비자를 받을 때 또는 영주권 신청 당시의 최소 연봉이 \$45,000 이상이어야 함. 연봉 산정 시 정식 급여 외의 수당이나 부가적인 혜택들은 제외되고, 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함
- 등록이 필요한 직군의 경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건강(health) 및 신원(character)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고용은 뉴질랜드 내에서,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진실된 것이어야 하며, 고용관련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함

(2)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비자)

❶ AE비자란?

AE비자는 한국인들에게 ‘talent visa’로도 알려져 있는데, 동 비자의 근본 취지는 이민국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고용주들로 하여금 큰 번거로움 없이 해외로부터 숙련된 인력을 필요할 때마다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한 ESW비자와 달리 동 비자는 이민국이 공인한 사업자(accredited employer, 이하 AE)만이 취업비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AE비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AE를 찾는 것이다. AE는 사업자(고용주)가 사전에 이민국에 신청서(Employer Accreditation Application)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은 재정건전성, 건전한 인력운용 및 고용관행, 작업장 내 실제 고용법 준수 상태, 내국인 채용을 위해 사전에 얼마나 노력했는가(labour market test) 등이다.

❷ AE비자 신청 요건

AE비자 신청 요건

- AE로부터 풀타임 고용제의를 받아야 함
- 고용계약이 적어도 24개월 이상이어야 함
- 최소 연봉이 \$79,560 이상이어야 함
- 비자 신청 시 나이가 만 55세 이하이어야 함

AE로부터 고용제의를 받게 되면 학력, 영어점수 제출의무 없이 타 회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봉조건으로 Work to Residence(WTR) 형태로 진행되어 뉴질랜드 취업은 물론 영주권 취득이 용이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동일하게 WTR 형태로 진행되는 비자인 LTSSL비자의 경우 피고용인이 장기부족직군에 적합한 학력이나 경력을 갖추었는지가 주요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반면, 동 비자는 피고용인보다는 고용인에 대한 심사가 주가 되므로 고용인이 AE에 속하고 스폰서를 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보다 쉬운 절차를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다. 참고로 AE 리스트는 이민국 웹사이트(링크: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tools-and-information/tools/accredited-employers-lis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 11월 말 기준 약 1,431여개의 AE가 등록되어 있다.

AE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

- 비자 신청서
- 최근에 촬영한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 사진
- 비자 수수료 및 이민국 수수료
- 여권 바이오페이지(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2장 여권의 모든 비자 사증과 출입국 도장의 복사본 1장
- 뉴질랜드에서 최소 24개월의 기간 동안 인가된 고용주와 최소 뉴질랜드 달러55,000수준의 연봉으로 근무하는 고용 계약 관련 서류
- 뉴질랜드 고용주의 인가 증명서 사본
- 신청자가 고용된 직책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교육 및 경력사항에 대한 서류
-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뉴질랜드 장기부족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을 최소 24개월 기간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되었다는 사항을 확인하는 뉴질랜드 고용주가 작성한 신청서
- 경찰신원조회(2년 이상 체류 시,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가능)
- 신체검사확인서 및 흉부 엑스레이 확인서
- 흉부 엑스레이 확인서

AE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요건

- 신청인은 이 범주 하에서 취득한 취업비자를 24개월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당초 취업비자 신청 시 나이가 만 55세 이하이어야 함
- 비자 소지기간 중에 뉴질랜드 내에서 'accredited employer'와 24개월 이상 고용관계에 있어야 함.
고용은 뉴질랜드 내에서,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진실된 것이어야 하며, 고용관련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함
- 최소 연봉이 \$79,560 이상이어야 함(2019년 10월 7일부터 적용). 연봉 산정 시 정식 급여 외의 수당이나 부가적인 혜택들은 제외되고, 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함. 또한 최소 연봉이 \$90,000 이상이고 다른 요건들을 다 충족시킨 경우엔 영구영주권이 발급될 수도 있음
- 등록이 필요한 직군의 경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건강(health) 및 신원(character)에 문제가 없어야 함

04.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 Visa)

❶ 워킹홀리데이비자란?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협정국으로서 연간 3,000명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민국에서 공지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경에 모집한다. 2020년의 경우 5월 14일 오전 10시에 이민성 홈페이지에 오픈될 예정이다. 동 비자의 소지자는 최대 6개월까지 어학연수 또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며, 취업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구직 또는 상업적 성행위 서비스를 제외한 합법적인 일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체류기간은 1년이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워킹홀리데이비자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❷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요건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시 기본 자격요건

- 만 18세~30세(비자신청 시점 기준)이며, 부양자녀가 없는, 출국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여권소지자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뉴질랜드 health 규정 충족 및 신체검사 결과 송부 필요)
- 체류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행잔고증명서)과 초기정착금(NZ\$ 4,200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한 자
- 체류 주요목적이 관광(holiday)인 자로서, 근로(work) 또는 학습(study)은 부차적 목적임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건전한 품성을 보유한자
- 뉴질랜드 체류자의 경우 유효한 체류비자가 있어야함

❶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방법 및 절차

뉴질랜드 이민국 홈페이지(<https://onlineservices.immigration.govt.nz/?WHS>)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홈페이지 회원가입(Register)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현지에서 본인의 비자관련 정보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User Name과 Password는 반드시 메모해 둘 필요가 있다. 비자를 신청한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비자 정보(Visa Details)를 출력하여 이를 입국 심사 시 제시함으로써 비자 스템프를 수령한다. 2016년부터 e-medical이 도입되었으며, 국내 병원 중 이민국 지정병원(Approved Panel Physicians)인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동대문 삼육의료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뉴질랜드 이민국으로 직접 신체검사 결과가 송부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온라인 신청 후 40일 내에 신체검사 결과가 도착해야 하므로 비자 신청 직후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 
- 01
정착
-
02
생활
-
03
생활 에티켓

01. 집구하기

❶ 주거 형태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형태보다는 일반 단독 주택의 형태인 타운하우스(Townhouse)가 보편적이다. 그리고 거주방식은 크게 플랫(Flat), 흄스테이(Homestay), 그리고 렌트(Rent)의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다. 우선 플랫은 큰 집이나 아파트 등을 Landlord가 빌리거나 소유하면서 방을 세주는 방식이며, 이 때 방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과 같은 공동생활 공간만 쉐어하는 방식이다. 플랫메이트의 수, 화장실 수, 필요한 가구 비치 정도, 기본적인 생활 용품의 지급 정도 등 플랫의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흄스테이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사는 집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그 집의 주인과 가족 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플랫과 다른 점은 보통 현지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현지 문화를 익히고 가족들과의 유대를 형성 할 수 있고 주로 식대가 Rent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형태인 렌트는 집 한 채를 모두 빌리는 형태이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플랫이나 흄스테이보다는 렌트가 선호된다. 하지만 공과금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고 집 전체를 빌리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❷ 계약 절차

우선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정하여 집을 알아봐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거주지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트레이드미(www.trademe.co.nz)와 한인커뮤니티인 코리아포스트(www.nzkoreapost.com)를 들 수 있다. 원하는 집을 찾으면 직접 방문하여 실제 집의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게 되면 집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내된 정보에 따라 해당 주택의 렌트 또는 플랫을 희망한다는 뜻으로 신청서(Application)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렇게 특정 주택을 렌트하고자 관심을 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신청서가 일정기간 모이면 광고를 낸 부동산 중개인 혹은 집주인이 신청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집을 보여주는 시간(Open home)을 갖게 된



다. Open home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전화나 이메일, 문자로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다.

❶ 유의할 점

뉴질랜드의 경우 집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월 단위가 아니라 보통 주 단위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초 계약 시 3~4주 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한다. 에이전트를 통하여 집을 구하는 경우 1주일분 집세를 수수료로 지불하면 된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생활하면서 기물이 파손되었거나 카펫 오염 등으로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한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한 후 돌려받게 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구나 집기의 포함 및 공과금 포함 여부에 따라 집세에 차이가 있으므로 집세가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도 잘 살펴야 한다. 정착 초기에는 가구나 집기 구입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집을 구할 때 집기와 가구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집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임차료가 더 비싸고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inspection)해야 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입주 전 주택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해 이사 나올 때 부당한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02. 교통편

뉴질랜드의 대중교통으로는 버스와 철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넓은 나라에 비해 인구가 적어, 비용 문제로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

❶ 시내버스

버스는 출퇴근 시의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배차 간격이 보통 30~60분으로, 운행 횟수가 적고 운행시간도 제한돼 있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에는 이용이 쉽지 않다. 21:00 이후에는 대부분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최근에 뉴질랜드에도 AT HOP라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버스와 트레인, 페리 등의 대중교통 이용 시 모두 적용된다. 현금 지불보다 30% 가량 저렴한데다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도 있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 이용하자. 주의할 점은 대중교통에 탈 때 교통카드를 찍는 것(Tap On)은 당연하고, 내릴 때에도 교통카드를 찍어야(Tap Off)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❷ 트레인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는 한국의 전철과 유사한 트레인이다.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다닌다는 차이가 있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오클랜드에서는 시내버스와 함께 트레인이 매우 유용하다. 오클랜드 트레인은 시티를 중심으로 남쪽(Southern Line), 동쪽(Eastern Line), 서쪽(western Line)으로 운영되고 있다.

❸ 택시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 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요금 NZD3.00 + km당 NZD2.50 정도이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되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❶ 우버(Uber)

우버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앱을 통해 운전기사와 승객을 중개해주는 차량 예약 서비스이다. 2014년 5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오클랜드 지역 기준 이코노미형 우버인 UberX의 기본요금 NZD1.30 + km당 NZD1.35 + 분당 NZD0.30의 요금 체계를 갖는다(최소 요금 NZD 5.00).



01. 물가정보

☰ 뉴질랜드의 평균 물가 수준(2019년 10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NZD)
레스토랑	식사(한식당)	15 - 20
	피쉬앤칩스	7.06
	카페 점심	15 - 20
	맥도날드 빅맥 세트	10.4
	맥주	2 - 12
	커피(롱블랙)	5 - 8
마켓	우유(1 liter)	2 - 4
	신선한 흰 식빵 한덩이(600g)	1.2
	흰 쌀(1kg, long grain)	2.65
	달걀(12개)	4.42
	치즈(1kg)	9.58
	소고기(1kg, 스테이크용 sirloin)	29.53
	돼지고기(1kg, loin chops)	15.98
	양고기(1kg, chops)	17.98
	사과(1kg)	2.98
	오렌지(1kg)	3.13
	키위(1kg)	3.74
	상추(1kg, Lettuce)	3.93
	양파(1kg)	2.5 - 3.5
	감자(1kg)	1.81
	물(750ml bottle)	1.98
교통수단	버스(기본 1 zone)	3.5
	일반 중소형 일주일 렌트카	210 - 250
	택시 기본요금	3
	택시 1km	2.5
	가솔린(1 liter)	2.16 - 2.36
유트리티 (월간)	4인 기준(전기, 난방, 물, 쓰레기)	150 - 200
	핸드폰 요금	20 - 50
	인터넷(무제한 와이파이)	75 - 90
한 달 집세	시내 아파트(방 2, 주당)	450 - 600
	시내 플랫	150 - 33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각종 블로그 참조

02. 은행통장개설

뉴질랜드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Every Banking, Saving Accounts, Term Deposits 3가지 계좌가 있다. Every Banking은 한국의 입출금 계좌에 해당하고, 사용할 돈을 넣어두고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다만 이자가 없으므로 최소한 결제에 필요한 정도만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aving Accounts는 저축계좌로 사용하지 않을 목돈을 보관하는 계좌이고, Term Deposits는 적금 계좌에 해당한다. 입국 초기에는 대체로 Every Banking 과 Saving Accounts를 같이 만들어서, 월급 계좌를 Saving Accounts에 두고 생활비를 Every Banking 계좌에 옮겨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뉴질랜드는 은행 계좌 개설 시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은행 모바일 어플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EFTPOS라고 불리는 체크카드가 많이 사용되는데, 가게 어딜 가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좀처럼 현금 쓸 일이 없다. 온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들고 싶다면 Visa Debit을 추가요금 지불 후 이용하면 된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에 유선으로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좋으며, 구비 서류로는 주소지 증빙, 비자, 여권, 영문주민등록이 필요하다. 주소지 증빙의 경우 우선 은행에서 해당 주소로 발송한 주소지 증빙 우편물을 제출하면 된다.

03. 휴대폰 및 인터넷 개통

뉴질랜드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는 방법은 선불 유심 카드(Pre Payed)와 월정액(Monthly Paid)제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주 통신사로 스파크(Spark, 구 Telecom), 보다폰(Vodafone), 투디그리(2degree) 등이 있는데, 각 회사별로 약정이나 계약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금제별 상세조건은 각 통신사 영업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선불 유심 카드의 경우 탑업(Top-up)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는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요금제 재구입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구입일로부터 28일이 지나기 전 탑업을 해야 그 날 이후에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

다.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손쉽게 탑업할 수 있으며 유심 카드를 통해 건네받은 뉴질랜드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인터넷은 Spark를 비롯하여 각 통신사별로 다양한 인터넷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사용용량에 따라 비용이 다른 종량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통신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방식은 최근까지 ADSL이 전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18년 현재 초고속 광케이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일부 완료된 지역도 있어서 UFB(Ultra-Fast Broadband)라고 불리는 광랜-인터넷 연결도 가능하다.

04. 전압

뉴질랜드의 전압은 240V, 50Hz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전제품을 가져와 사용하려면 변압기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과는 플러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간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하다.

05. 자동차 구입 및 운전면허 교환

❶ 자동차 구입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수입된 중고차를 구입해 이용한다. 중고차는 직접 주말 오전에 열리는 Turners Auction(www.turners.co.nz)에 참가해 구입하거나 중고차 딜러 가게를 통해서 구입, 혹은 뉴질랜드 온라인장터(www.trademe.co.nz)에서 구입하는 법이 있다. 중고차 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채무 현황, 사고 유무,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carjam.co.nz)가 있으니 유용하다. 기본적인 내용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나 채무나 사고 등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9.90뉴질랜드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❷ 운전면허 교환

2013년 5월 뉴질랜드 교통국은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 체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공증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만일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가까운 자동차협회(AA, Automobile Association)에 필기시험을 등록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제한면허(Learners Drive License)를 취득하고, 그 후 도로주행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Full Drive License)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운전규칙

우측핸들에 좌측통행으로 한국과 정반대 방향이라 자칫하면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 유학생이 운전 중에 역주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다. 제한 속도 위반 시 위반속도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며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운전 중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필수이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해야 한다.

06. 병원 및 약국 이용

뉴질랜드에서는 GP(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을 해 일차적인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된 GP에 가서 진찰을 받은 다음,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문의(Specialist)를 방문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처방전도 GP를 방문해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한 번 방문할 시 금액은 병원에 따라 40~70뉴질랜드달러이다.

07. 여가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조건과 기후 그리고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 국가로서, 2016년 350만 명이 방문해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했다. 우리나라 관광객

은 6만 5,000명 이상으로 전체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한국에도 많은 여행 상품이 있고 현지에서도 많은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관광명소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08. 긴급상황 시 연락처

긴급 상황 시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경찰	111번
화재 및 구급차	111번
교통정보(Transit NZ)	0900-33-222
여권 분실시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64-4) 473-9073
오클랜드 분관(영사관)	+64-9) 379-0818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64-9) 373-5792
대한항공	+64-9) 914-2000
뉴질랜드 한인회	오클랜드 한인회 +64-9) 443 - 7000 웰링턴 한인회 +64-4) 388 - 1146



09. 유용한 어플

≡ 뉴질랜드 생활에서 유용한 앱

종류	앱 기능
	어플명 : Trade 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최대 거래 사이트• 각종 생활 물품 뿐만 아니라 집(렌트, 플랫)이나 자동차, 일자리 등 모든 종류의 거래를 망라하여 취급
	어플명 : U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계적 택시 어플
	어플명 : AT mob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교통 어플로서, 버스뿐만 아니라 트레인, 페리, 주차까지 이용 가능• 오클랜드 버스를 통한 길찾기와 시간표, 버스 노선 등의 정보 제공• 웰링턴의 경우 Metlink 앱이 더 유용
	어플명 : Google 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적인 지도 어플로서 전세계 지도 뿐만 아니라 길찾기 기능도 제공하므로 네비게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어플명 : InterCity NZ Bus Trac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상가포르, 태국 등의 유명 레스토랑의 외식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 정기적으로 레스토랑을 발굴하며 최대 50%까지 할인쿠폰도 제공
	어플명 : My Vodafone New Zea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통신사 Vodafone 어플• 각 통신사마다 어플이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의 어플을 이용하면 쉽게 Top up 또는 요금제 변경 등이 가능함• 예를 들어 Spark 이용시에는 Spark NZ 어플 사용

01. 비즈니스 에티켓(KOTRA 국가정보 참조)

❶ 복장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❷ 인사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원주민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Mr, Mrs 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대해 호감을 갖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❸ 선물

뉴질랜드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한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TIS)가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아 조사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뇌물을 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첫 상담에서는 부담스런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게 좋다. 보통 선물을 해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다. 선물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친숙해진 이후나 안면이 트인 이후에 한국 전통문양의 책갈피, 한복 입은 인형, 태극부채와 같이 한국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제품, 혹은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색다르면서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 약속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 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또한 개인주의적이며 질서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최소한 1~2주 전에 미리 잡아 상대방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염두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❶ 식사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주로 오후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초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❷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

뉴질랜드는 시내 중심가에만 신호들이 있고 보통 시외지역을 나오면 양보운전을 기본으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운드어바웃)들이 많이 있다. 이 때 사람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길을 건너거나 또는 갓길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에도 최대한 저속주행과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신경써서 운전해야 한다.



❶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인은 뉴질랜드식 영어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 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PART
07
해외취업 Q&A





② 뉴질랜드에서 구인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❶ 뉴질랜드는 직원 고용 시 한국의 공채와 같은 형태보다는 상시채용의 방식으로 1~2명 정도의 지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내 문건(사내 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하거나, 취업 알선 전문회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지인을 통한 추천이나 대학 추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인 구직자는 직접 제품을 팔아 기업의 구인 공고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추천인(referee)을 잘 확보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구인구직사이트는 SEEK와 Trade Me가 대표적이다. 또한 링크드인(LinkedIn)을 비롯한 자신의 SNS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국에서는 링크드인 프로필이 없으면 구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뉴질랜드도 점점 그려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뉴질랜드 채용관리자의 60% 가량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인터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지원자의 SNS도 확인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자신을 서류 상의 자기자신과 잘 매칭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수요소이다.

③ 뉴질랜드의 취업비자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❷ 뉴질랜드에 취업하여 받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워크비자는 ESW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이다. ESW비자는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의(job offer)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 시 서면 고용계약서(written employment agreement)와 고용주가 작성한 Employer Supplementary Form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고용제의를 받은 후 뉴질랜드 이민국에 워크비자 신청서와 함께 경력 및 학력 증명서류, 기타 필수 증명서류(신원조회서, 신체검사서 등)와 고용주가 직접 작성한 신청자의 워크비자 지원서(Employer Supplementary Form)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된다. 이 때 근무하게 되는 직종이 필수기술부족직군(Essential Skills in Demand List)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해당 직업에서 일하기 위한 필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고용계약 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뉴질랜드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



거(labour market check)를 제시해야 한다.

❶ 뉴질랜드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스펙은?

❗ 대부분의 경우 뉴질랜드 기업은 종업원 채용 시 영어능력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업무능력에 대해서도 자격증보다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을 통한 스킬을 중시한다. 스킬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를 뜻하며, 이는 ‘나는 OO 박사 학위가 있다’라는 스펙보다는 나는 OO 개발을 A부터 Z까지 할 수 있다’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❷ 뉴질랜드 해외취업 유망직종은?

❗ 워크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경로에 따라 유망 직종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데이터와 현지 고용시장을 통해 몇 가지 유망직종을 선정할 수 있는데, 우선 최근 5년 간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의 워크비자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Chef, Cook, Cafe or Restaurant Manager 등 3개의 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직업군을 포함하는 호스피탈리티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IT 분야는 고용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해외 IT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역시 유망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 관련 사무직은 기업 활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구인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은 분야이다.

❸ 현지 취업을 위한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 뉴질랜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다른 스펙보다는 영어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한국 청년들이 열정과 스킬 측면에서 현지인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취업제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영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업무에 따라 영어 능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 조리를 담당한다면 상사가 시키는 일을 알아듣고 수행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훌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손님의 요구사항부터 불만사항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상급 정도의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도 진급을 통해 스크립트가 된다면 다른 이들에게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영어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능력은 높을수록 좋다.

❶ 면접시 유의사항은?

❗ 인터뷰는 고용주가 구직자를 직접 만나 일을 맡길 만한 인물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고, 구직자의 구직 의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인터뷰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뉴질랜드는 면접 시 구직자의 스킬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 인력, 업무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본인의 관련 경험과 실력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잘 어필해야 한다. 또한 스킬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조직에 잘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면접의 주요 목적이므로 인성의 측면에서도 답변 준비가 필요하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 충분히 반복하여 예행연습하는 것이 좋다.

❷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는 상해나 사고 시 의료비(보상금)를 지원해주는 뉴질랜드 기관으로, 한국의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뉴질랜드에서 Temporary Visa(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를 소지한 외국인들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복지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상해 치료와 관련한 대부분의 비용을 ACC에서 보상하며, 구급차 이용료, 의사진료비, 물리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방사선 촬영비, 처방약값 등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한다. 또한 진찰, 치료, 재활을 받기 위한 통원 교통비(유류 수당이나 차량 개조비, 대중 교통 요금, 택비시 등)나 재활 지원 및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사고 시에도 대부분의 사고 비용은 ACC가 부담하지만, 감기를 비롯한 일반 질환은 ACC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취업비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급여로 부과(pay as you go)되는 반면,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공공 기금을 받는 건강, 출산 및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뉴질랜드 기업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직업과 하는 일에 따라 임금 수준은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대졸자의 초임 급여 수준은 NZD35,000 ~ NZD45,000 수준이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의하면 근로자의 주당(weekly) 평균 임금 수준은 2009년 870달러에서 2019년 9월말 1,192달러로 높아져 지난 10년 간 연평균 3.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 평균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20달러까지 높아질 예정임에 따라 뉴질랜드 임금 수준도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뉴질랜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법적 최소 권리와 권한이 적용되며, 이 권리는 고용계약서 상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비자, 워크 비자, 또는 워킹 휴리데이 비자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800-20-90-20으로 전화하여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 라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현지 생활 시 주의할 사항은?

❗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과 다른 문화나 법으로 인해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뉴질랜드는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 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 시 뉴질랜드는 우측핸들에 좌측통행으로 한국과 정반대 방향이어서 자칫하면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항상 사람이 우선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뉴질랜드

도서명 해외취업 완전정복 뉴질랜드

발행인 김동만

발행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문의처 1577-9997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지은이 박진모, 윤동열

디자인 초아출판사

ISBN 979-11-5799-313-0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취업준비의 시작과 끝은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비매품/우료

03309



9 791157 993130

ISBN 979-11-5799-313-0